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조정사례중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이 강 석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조정사례중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

지도 신 동 천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이 강 석

이강석의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신 등찬 

심사위원 임 영욱 

심사위원 양 지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5년 12월 일

## 감사의 말씀

본 대학원에 입학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록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어느덧 2년이라는 기간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열매를 거두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 학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자”가 생활신조이지만 그래도 좀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이 이내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힘이 많은 저를 본 대학원에 입문하게 이끌어 주시고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동천 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 논문심사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신 양지연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해 연구의 방향과 틀을 잡아주시고 지도해 주신 임영욱 교수님, 그 밖에 귀중한 강의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여러 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꼬박꼬박 챙겨 주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양근철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작성과정에서 문맥을 다듬어 주신 국립환경과학원 김명진 박사님과 오수태 연구관님, 어려운 컴퓨터 작업을 도맡아 준 국립환경과학원 최희락 연구사님과 김혜영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대학원 과정을 같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준 동기생 최상철 선생님과 문원숙 선생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

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과 힘들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주고 버팀목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민재와도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본 논문을 마무리 하면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를 아는 모든 분들과 이 작은 결실의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12. .

이 강 석 올림

# 차 례

## 국문 요약

I. 서론 .....	1
II. 이론적 배경 .....	3
1. 환경분쟁의 특징 .....	3
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	4
가. 관련법령의 제정배경 .....	4
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의의 및 성격 .....	6
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	7
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특성 .....	8
마.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도입효과 .....	10
3. 환경분쟁처리제도의 종류 .....	12
가. 사법적 구제제도 .....	13
나. 행정적 구제제도 .....	14
4. 환경분쟁조정의 기본원칙 .....	16
가. 개연성에 의한 인과관계 인정 .....	16
나. 무과실책임원칙 .....	18
다. 연대책임 .....	19
라. 대법원의 판례 .....	20

5. 우리나라와 일본의 환경분쟁조정제도 비교 .....	25
가. 환경분쟁조정 의 근거법률과 조직 .....	26
나. 환경분쟁조정 의 범위와 절차 .....	28
다. 환경분쟁조정 의 관할 및 처리기간 .....	30
<b>I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	<b>33</b>
1. 연구의 틀 .....	33
2. 연구대상 .....	34
3. 연구내용 .....	34
4. 연구방법 .....	35
가. 조정사건 분석 .....	35
(1) 분석변수 .....	35
(2) 분석방법 .....	37
나. 일본의 환경분쟁조정제도 분석 .....	37
<b>IV. 연구결과 .....</b>	<b>41</b>
1.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처리현황 .....	41
가. 환경오염피해 진정 및 보상현황 .....	41
(1) 환경오염피해 진정처리현황 .....	41
(2) 환경오염피해 보상현황 .....	44
나. 환경분쟁조정현황 및 사례분석 .....	46
(1) 환경분쟁조정현황 .....	46
(2) 조정사건 분석 .....	53

(3) 불복사건의 민사소송결과 분석 .....	73
(4) 주요 조정사건의 질적 분석 .....	76
2. 일본의 공해분쟁처리현황 분석 .....	86
가. 일본의 공해분쟁처리현황 .....	86
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해분쟁처리현황 비교 .....	97
<b>V. 고찰</b> .....	99
<b>VI. 결론</b> .....	103
<b>참고문헌</b> .....	107
<b>ABSTRACT</b> .....	110



## 표 차 례

표 2-1. 환경분쟁조정 의 근거법률과 조직 .....	27
표 2-2. 환경분쟁조정 의 범위와 절차 .....	29
표 2-3. 환경분쟁조정 의 관할 및 처리기간 .....	32
표 3-1. 분석변수 의 정의 .....	36
표 3-2. 독립변수별 조정 빈도 .....	38
표 4-1. 시·도별 환경오염피해 진정처리현황 .....	42
표 4-2. 오염원인별 환경오염피해 진정처리현황 .....	43
표 4-3. 연도별 환경오염피해 보상현황 .....	44
표 4-4. 피해내용별 환경오염피해 보상현황 .....	45
표 4-5. 환경분쟁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	47
표 4-6. 피해원인별 환경분쟁조정현황 .....	48
표 4-7. 피해내용별 환경분쟁조정현황 .....	49
표 4-8. 처리기간별 환경분쟁조정현황 .....	50
표 4-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 현황 .....	51
표 4-10. 조정신청액 대비 배상액 현황 .....	51
표 4-11. 조정성립현황 .....	52
표 4-12. 재정사건 처리현황 .....	56
표 4-13. 재정사건의 조정신청액 대비 배상액 현황 .....	59
표 4-14. 조정결과에 대한 승복 및 불복현황 .....	64
표 4-15. 당사자별 불복현황 .....	69

표 4-16. 최종모형의 가능도비 검정결과 .....	70
표 4-17. 가해자 불복인 경우의 최종모형에 대한 모수추정결과 .....	71
표 4-18. 피해자 불복인 경우의 최종모형에 대한 모수추정결과 .....	72
표 4-19. 불복사건의 민사소송현황 .....	73
표 4-20. 소송제기자별 민사소송결과 .....	74
표 4-21. 피해내용별 배상액 및 법원의 손해배상액 현황 .....	75
표 4-22. 배상액 대비 법원의 손해배상액 결정율 분포 .....	76
표 4-23. 일본의 공해등조정위원회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	88
표 4-24. 일본의 도도부현공해심사회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	89
표 4-25. 일본의 도도부현공해심사회 사건의 합의사항별 성립건수 .....	91
표 4-26. 일본 도도부현공해심사회 사건처리기간별 종결건수 .....	93
표 4-27. 공해고정건수의 추이 .....	95
표 4-28. 공해고정 해결율 및 평균처리일수 .....	96
표 4-29. 공해고정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	97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틀 .....	33
그림 2. 연도별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현황 .....	47
그림 3. 바닥충격음 측정 장면 .....	77
그림 4. 전철 소음피해 발생 현장 .....	81
그림 5. 고속도로 소음피해 발생 현장 .....	83

## 부 록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사례 .....	115
2. 환경분쟁조정사건 배상액 산정 기준표 .....	149

## 국 문 요 약

오늘날 우리는 196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가져왔으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 소비량의 급증은 물론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이 일상생활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인간의 생활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으며, 환경오염의 침해는 자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의 범위도 넓고 대규모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염원으로 인하여 피해와의 인과관계 규명에도 점차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199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상설화된 이후 분쟁조정사례가 많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기에 이 연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환경분쟁조정사례 분석결과와 일본의 환경관련법규와 분쟁처리현황 등을 국내의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동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당사자의 조정성립율이 평균 83.0%까지 높아진 상황이므로 이제는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를 신속히 함은 물론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책임재정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판단하는 것이고, 원인재정은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에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다수인 관련 분쟁이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인체건강피해분쟁의 경우에는 원인재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현재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재정을 원인재정과 책임재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조정·재정결정이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명의로서의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환경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사업장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언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사업장에 환경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의 인정이 필요하다.

보험원리에 의한 피해구제 방식으로 환경오염피해보상보험의 도입과 국가차원에서 공적보상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피해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심사관의 육성 및 인사제도의 운영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법제화 하여야 한다.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사건은 해당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제도 원칙에 부합되도록 현재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승격하여 이들의 책임 하에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피해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적인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해당부처에 환류 시

켜 정책수립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환경분쟁조정제도와 더불어 행정적 구제수단의 하나인 민원·진정처리 제도가 체계적으로 연관성을 유지하도록 민원업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정결정을 할 때 금전지급 뿐만 아니라 방음벽 설치, 방지사설 보완 등의 이행의무를 병과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진정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민원상담원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승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수단을 통해 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 하고, 조정결정이 법원의 1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동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존재가치가 부여받게 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동 제도를 운영하는 이들이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둘 때만이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

핵심어 : 환경분쟁조정제도, 책임재정, 환경민원상담원제도

## I.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한 환경분쟁도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나,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법원의 민사소송제도에 의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분쟁해결 수단이 없었다.

그런데 환경오염문제는 오염요인의 다양성과 불확실성, 오염영향의 광역성과 다중성, 오염발생과 피해발견 사이의 시차성, 오염물질간의 상승작용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도 광역적이고 누적적이며 계속적, 간접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환경분쟁은 피해당사자도 다수이며 피해종류와 분쟁목적도 다양하고 피해자 측의 지위가 가해자 측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열등한데다가 가해행위인 환경오염원인과 피해와의 인과관계 입증과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가 있다(이상규 1993, 오석락 1996).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환경분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1977년에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고, 비상설기구로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그의 역할은 환경분쟁 해결에 미흡한 편이었다. 1990년도에 이르러 비로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상설기구화되었다.

법 제정 후 환경분쟁사례가 점차 증가되기에 이르렀고 분쟁조정에 대한

당사자의 승복율이 87%로써 다른 행정기관의 승복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에는 법률의 명칭을 “환경분쟁조정법”이라 하여 환경분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2003년에 들어서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재정신청 사건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하고 조정사례가 축적되면서 환경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한 연구가 다수 있었다.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법적 성격이나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외국의 제도와 우리의 분쟁조정제도를 비교 고찰한 제도적인 문제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축적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극히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동안의 분쟁조정 처리실적을 볼 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기간 동안의 조정사례들을 수집하여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환경분쟁의 특징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대립당사자 사이의 분쟁인 점에서 다른 분쟁과 다를 것이 없으나, 환경오염을 매개로 간접적·계속적·누적적·광역적·기술적 피해의 결과로 나타나며, 그로 인한 분쟁인 점에서 그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다른 분쟁과는 특이한 여러 특수성을 띠고 있다(이상규, 1988).

첫째, 원인유형의 다양성이다. 환경분쟁은 분쟁의 원인조성자와 요인이 매우 다양하다. 원인조성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산업체, 국민 개개인 등으로 각양각색이며 분쟁원인도 대규모 개발사업, 개별기업체의 오염물질배출, 소음, 진동 등 다양한 양상이므로 적절한 구제절차의 선택에 관한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 피해분쟁의 광역성과 다양성이다. 환경오염물질이 확산계통에 따라 광범한 지역에 확산됨으로써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 생물에게까지 미치게 되고,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는 피해구제를 필요로 하는 자를 다중화하고, 청구인의 대표참가, 집단참가의 문제를 초래한다.

셋째, 원인의 불명확성으로 환경피해가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아주 완만히 나타나고, 원인발생처로부터 원격지에까지 그 영향이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초기단계에는 피해자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원인상황의 변경·감소는 물론 원인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이러한 분쟁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어렵게 할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위법·유책성의 구성난이다. 불법행위의 요소로서의 가해자의 위법·유책성의 문제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환경피해의 경우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파악이 어렵고 입증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다섯째, 시간과 비용의 과다하다. 다른 분쟁의 경우와는 다르게 피해관련사실의 인정 내지 증거확보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하며 이는 곧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환경피해는 오랜 시일에 걸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분쟁처리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여섯째, 배상능력의 한계로서 다중성을 띠고 심각한 건강·재산피해를 야기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치유나 구제에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 측이 충분한 배상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예가 많다.

## **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 **가. 관련법령의 제정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 환경보전법상의 분쟁조정제도는 1977년 법제정 당시만 해도 분쟁해결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조정신청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도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종래의 분쟁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첫째, 분쟁조

정위원이 임기 2년의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나 가해자가 위원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독립성을 살릴 수 없었다.

둘째, 환경오염사건에 있어서의 분쟁조정은 인과관계의 입증이나 피해조사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적 차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었다.

셋째, 분쟁처리방식도 일방 또는 쌍방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그 성립만을 알선할 뿐, 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나 지침의 제공 또는 직권조사에 의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넷째, 분쟁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복잡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분쟁조정신청 과정이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전병성, 1991).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개별법을 제정하는 등 환경입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를 근간으로 그 동안 환경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1991년 2월 이 법의 발효와 동시에 대구폐놀오염사건을 수습해야 하는 등 일련의 상황 속에서 같은 해 5월 환경처와 그 소속기관직제개정령(대통령령 제13,370호)을 개정 공포하여 같은 해 7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상설기구로 발족되면서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하였다.

## 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의의 및 성격

산업화의 진전으로 늘어나는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비추어 기존의 소송제도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곤란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제도라는 행정상 분쟁처리절차를 도입하여 행정기관이 지닌 자료와 과학적 지식·정보를 환경분쟁의 해결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당사자의 이해를 구하고, 서로 양보토록 하여 합의 성립을 주선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의 의사를 밝혀 양당사자를 설득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는 행정상 구제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환경분쟁의 해결에 행정권을 개입시킨 행정절차이다(권용우, 1980).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신청대상이 사인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을 청구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 오히려 물품 및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인간의 분쟁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노동쟁의조정제도, 사법부에서 하는 민사조정제도가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견해는 당사자의 호양에 의하여 합의 성립을 주선하고,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 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작용이라기 보다 사법작용이라는 견해도 있다(함순용, 1984).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절차 가운데 알선, 조정은 환경분쟁에 대한 개별적

인 해결을 도모하는 사법유사절차로 보지만, 행정위원회에서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한 배상책임을 내리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용우, 1979). 재정절차를 달리 보는 이유는 재정위원회에서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법을 적용하여 일도양단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재판절차와 흡사하지만 실제 운영은 법원이 아닌 행정위원회라는 전문기관이 환경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사실을 직접 해명한다는 견해도 있다(原田尙彦, 1986).

결론적으로 행정기관이 행하는 일체의 행위, 즉 행정주체가 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법률적·사실적 작용 전체를 행정작용이라고 한다면 분쟁조정이 행정작용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이와 같은 행정작용 중에서도 어떤 작용에 해당되는지가 검토될 수 있는데 이는 사실행위로서 판단작용, 사회목적작용, 대외적 작용에 속한다.

#### **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인들은 행정관서에 의한 민원해결 차원의 구제나 양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상호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과 사법적 재판절차에 의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방식이 대체로 이용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는 그 원인과 내용이 복합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차이 때문에 민원처리방식이나 개인적인 접촉으로는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며, 법원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할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 있고,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피해구제제도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환

경오염피해를 유발시킨 책임이 산업화를 추진해 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에도 상당부분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환경분쟁을 개인의 분쟁으로 판단되기에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제도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침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손쉽게 구제해 주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기관의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제도와는 다르며,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 노사분쟁에 대한 노동쟁의조정제도, 사법부에 의한 민사조정제도가 있다.

따라서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공평타당성을 취하고,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절차의 신속성, 과학적인 지식·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행정기관이 환경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행정상의 구제절차로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9).

## 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특성

한국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도입취지에 맞도록 절차의 형식적 엄격성이 소송절차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어 있으므로 인해 절차가 기동성이 있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갖추고 있다(深山草也, 1990).

첫째, 절차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수당사자에 대한 대응 및 자료수집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

여 일반적인 대리제도 이외에 대표자나 대표당사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환경분쟁의 경우 대부분 관련 당사자의 수가 많은 까닭이다.

둘째, 위원회 또는 사무국 직원이 비정기적인 자료수집절차로써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환경분쟁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과관계 및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며, 특히 피해자의 입증능력이 뒤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셋째, 분쟁조정 신청수수료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저렴하며, 조정절차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비용부담을 경감시켰다. 조정신청의 비용이 저렴하고 대부분의 절차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환경문제의 사회적, 공공성을 감안하여 당사자, 특히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넷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법기관과 달리 여러 분야에서 선임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는 이외에 사무국의 직원도 행정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근무하도록 하였다. 환경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폭넓은 분야에서의 전문적·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까닭이다.

다섯째, 법원에서 환경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행정과 연계시키기 곤란하지만 행정위원회에서는 조직의 특성상 대부분의 분쟁사건을 행정상 조치와 연계시켜 해결할 수 있다. 환경분쟁의 경우 오염원과 피해자 사이에서 손해배상금 지불 등 권리의무관계의 확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의 규제 및 오염방지분야에서 행정조치와 연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마.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도입효과

환경오염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 아니다. 따라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단순히 피해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오염원으로부터 국민전체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공장이나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켰을 때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도록 하여 우리 모두의 자원인 환경을 지키자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다.

또한 환경분쟁제도는 기업으로서는 당장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부담이 되겠지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기업이미지 손상과 나아가서는 상품판매가 어렵게 될 것이므로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함께 오염방지 기술개발을 서두르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도움을 줌으로써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쟁력도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에도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환경분쟁의 해결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2).

먼저 동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효과로는,

첫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환경 및 법률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고,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사실조사, 인과관계규명 및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정결과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분쟁조정 신청이 간단한 서류만으로 가능하고, 신청수수료가 민



사소송보다 저렴하며, 피해사실의 조사에 따른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제적·시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셋째, 행정기관이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등 구체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실질적 평등이 확보될 수 있고, 합의에 의한 절차운영이나 직권조사 및 각종 자료의 수집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넷째, 분쟁조정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되거나 합의 성립으로 간주될 경우 동일한 내용의 의무이행청구권이 발생하고, 의무이행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의무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섯째, 알선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에 금전상의 손해배상 외에 금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용원재료의 변경, 설비의 개체,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내지 보완, 조업시간 또는 조업방법의 변경 내지 제한 등과 같은 사안들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쾌적한 환경의 유지에 도움을 준다.

또한 동 제도의 간접적인 효과로는,

첫째, 동 제도의 활성화로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오염피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므로 기업의 오염물질배출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 기업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이로 인한 피해배상뿐만 아니라 잦은 분쟁으로 공해기업으로 인식되어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므로 기업은 완벽한 방지시설의 설치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동시에 이러한 시설의 정상가동 등 오염물질을 감소하려는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하게 된다.

셋째, 환경오염 기여도는 상품에 대한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기업의 저공해 기술개발을 육성·개발하는 효과가 있게 되어 새로운 환경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 스스로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구조에서 자원절약형 생산구조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넷째, 산업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환경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오염상태 및 피해사실의 조사 등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사실조사 과정은 환경문제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환경행정분야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다섯째, 동 제도는 배타적이고 단절되어 가는 산업사회에서 환경오염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양보와 화해로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하는 공동체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3. 환경분쟁처리제도의 종류**

분쟁의 조정이라 함은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법관 또는 특별한 지식, 경험이 있는 자로써 구성되는 일정한 기관인 조정위원회 혹은 일정조직이 분쟁의 당사자 사이를 주선해서 그들의 주장을 서로 양보케 하고, 필요가 있으면 자기의 중재의사를 제안하여 당사자를 설득함으로써 그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원만한 해결로 이끄는 절차이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환경오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내의 피해구제방식에는 크게 사적구제, 사법적 구제, 행정적 구제로 나눌 수 있지만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환경분

쟁조정제도이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행정적 구제절차로서 민원제도와 조정제도에 대해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사법적 구제제도

동 제도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다. 이는 민사상 구제라는 전통적인 절차와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가 해당된다. 그동안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 이유는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부족, 비용 및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피해구제절차로서 실효성이 적었던 것이다.

### (1) 손해배상청구

이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환경오염행위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환경오염피해구제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환경분쟁의 여러 특성이 대부분 불법행위에 관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행위의 법리 적용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불법행위 법리의 틀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이상규, 1993).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손해를

끼친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에 규정한 환경오염규제작용, 즉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를 근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 (2) 유지청구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인 오염물질의 배출 등이 계속됨으로써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측이 되는 경우 이를 배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이 나서서 시설조업의 제한·정지나 일정한 예방 또는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조치와 달리 공장 조업으로 인하여 장래에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행위를 계속할 것이 확실히 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해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것이 유지청구이다.

이와 같이 유지청구의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침해상태의 발생 내지 발생가능성과 그 침해에 대한 특정상대방의 지배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침해의 원인행위가 배제 내지 예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이다(이상규, 1993).

## 나. 행정적 구제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거나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보다 근원적

인 것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등 각종 계획행정 및 개발사업의 수행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능의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환경을 파괴함은 물론, 법에서 규정한 오염규제작용의 적절한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환경 상의 침해를 가져올 행정계획 내지 개발사업의 취소를 구하거나 위법·부당하게 방치되고 있는 환경규제작용의 실시를 요구하는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이상규, 1993).

###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라 함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에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을 구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행정절차이다(박윤현, 1992). 이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아니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허가와 같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 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처분을 소홀히 하는 소극적인 행위로 환경오염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행정청의 하자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나 의무이행 등을 요구하는 구제절차이다(이상규, 1993).

### **(2)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하거나 일정한 행정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절차가 행정소송이다(박윤현, 199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개발 사업이나 계획행정이 직접 환경오염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환경규제작용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아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후에 당해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이상규, 1993).

#### **4. 환경분쟁 조정의 기본원칙**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불법행위 성립에는 인과관계, 위법성, 유책성(고의·과실), 손해배상의 범위 등과 관련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적용을 할 수 있지만, 환경분쟁피해의 경우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예외적인 원칙, 즉 개연성 이론, 무과실책임원칙, 연대배상, 정신적 피해배상, 과실상계를 인정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김종민, 1995).

##### **가. 개연성에 의한 인과관계 인정**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라 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는 그 권리 근거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환경분쟁인 경우에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주어진다. 이런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쉽고 분쟁내용이 단순해서 인과관계의 추인이 용이하면 문제가 없으나, 교통기관이나 건설공사에 의한 소음, 진동, 산업체의 대기 및 수질오염에 의한 피해와 같이 가해자가 불특정하거나 자연현상이 얽힌 사건의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이 사실상 곤란하다.

이처럼 환경오염피해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을 지우기가 곤란한 사건임에도 일반불법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확실성 있는 증명을 요구한다면, 가해자는 입증책임이라는 소송기술상 문제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반면, 피해자는 법적인 구제를 받는 길이 막힌다는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환경오염피해인 경우에는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경감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대두됨에 따라 등장한 것이 개연성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을 인과관계분야에 적용하게 되면 「인과관계의 증명은 원고는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족하고, 피고는 반증으로써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말한다(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1991).

이 이론의 실질적 근거로 제시되는 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환경오염피해자는 농·어민과 같은 경제력이 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피해원인조사에 있어 기술적으로 비교적 용이한 것이라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둘째,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업장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가 사업기술의 비밀유지 등을 내세워 이를 거절하거나 출입을 허락할지라도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제공을 거절하게 되면 피해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곤란하게 된다.

셋째,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그 원인을 소급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공적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미흡하다.

넷째, 사업체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술개발에 비해 오염물질을 탐지

하는 기술발달이 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원인의 규명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다.

다섯째, 문제된 공장에서 오염물질이나 에너지를 배출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무해성을 입증할 사회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여섯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통상적으로 사회적 지위에 있어 피해자보다 우월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고,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영역이 사업자의 지배에 속하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입증이 피해자보다는 용이하다(진순석, 1993).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1974년 12월 10일 선고한 72다 1774 사건의 판결에서 「원고는 피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할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종래의 입증책임원칙을 유지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입증의 범위를 완화 내지 경감하는 반면, 가해자의 반증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으로 위 개연성이론을 수긍 못할 바 아니다」라고 판시(판례총람)함에 따라 이후 환경관계 판결에 있어 인과관계 입증의 기준이 되고 있다.

## 나. 무과실책임원칙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의 폐수처리 등 당시의 기술적·경제적 조건하에서는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집단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대도시의 자동차배출가스과 공장매연, 각종 폐기물 및 생활하수



등이 기준이내라도 다량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오염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오염행위에 대하여 과실 책임을 적용할 경우 오염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유형의 피해인 경우 전통적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는 피해구제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 실현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법 이론만으로는 책임한정요소를 포함하기에 한계가 있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민법 제750조 규정의 불법행위책임을 확대시킨 점이 특징이다.

#### **다. 연대책임**

환경오염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특정된다고 해도 다수인 경우가 보통이며, 다수의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특히 공단의 환경오염피해인 경우 하나의 공장이라기보다는 여러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경우가 보통이다. 이 경우 각각의 공장마다 환경오염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고, 이를 산정하기도 극히 어렵다. 개별적으로는 어느 공장이든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합쳐져서 주변에 오염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손해와 관련한 책임주체가 복잡하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이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기가 어렵고, 가해자 측의 내부구상관계도 매우 복잡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다수당사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해둠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시켜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케 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사업장 등이 2곳 이상 있을 경우에는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하여 재정(여천공단 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과수피해 및 서산군 석유화학공단 조성공사로 인한 어장피해분쟁 사건)한 예도 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3).

## **라. 대법원의 판례**

환경분쟁조정과정에 있어 피해배상액의 산정과 조정성립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및 행정기준에 따른 위법성 판단의 문제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 **(가) 개연성설**

환경소송에 있어서 환경오염피해의 당사자는 환경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힘만으로는 손해발생의 원인물질의 특성이나 원인물질의 손해지역에 도달하는 경로의 규명이 현대과학의 수준으로서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입증함은 매우 곤란하게 된다. 개연성설은 이러한 때 환경오염 피해자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곤란을 완화 내지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환경오염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만 인정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주는 이론이다(오석락 1996, 천병태 등 1997).

1974. 12. 10. 선고한 울산 화력발전소의 아황산가스배출로 인한 과수원 수확량 감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인 72다 1774 사건에서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론을 수증 못할 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에 비추어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 내지 과학적 입증 곤란성의 문제를 들어 환경오염과 피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처음으로 개연성이론을 받아들인 판결이며, 이후 환경소송관계 판결에 있어 인과관계 입증의 기준이 되고 있다(이상규, 1993).

#### (나) 신개연성설(가해자의 무해입증의 필요성)

신개연성설은 개연성설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민사소송이론과 모순되는 입증책임 정도의 결함을 보완하여 소송법적으로 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서 제창된 이론이며 간접반증의 이론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는 종래의 개연성설이 막연하게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고 한데 대하여 가해자의 간접반증책임을 과하는 모습으로 이론구성을 하는 한편 경험칙이 작용하는 영역을 보다 명백히 하고 이를 확충하여 피해자의 입증이 완화 내지 경감되는 대신 가해자의 반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오염물질을 특정하고 그 오염물질의 경로가 밝혀져 오염원의 추구가 기업의 문전에까지 도달한 때에는 인과관계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인데, 이때 가해자로서는 그 오염물질이 아무런 해가 없다는 무해함을 입증하거나 그 오염물질은 가해회사가 생성한 것이 아니라던가(부존재) 또는 다른 원인의 존재가 있음으로 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간접반증이론이라 볼 수 있다(오석락 1996, 천병태 등 1997).

1991. 7. 23. 선고한 의정부시 수락산 부근 나전모방공업(주)에서의 아황산가스 및 낙진 등 대기오염에 의한 관상수고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인 89가카 1275호 사건의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극난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1984. 6. 12. 선고한 진해화학(주)의 불소, 납, 카드뮴 등이 포함된 폐수배출로 인한 김 양식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인 81다 558 사건의 「수질오탁」으로 인한 공해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

다.

이들 판결은 신개연성설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신개연성설은 종래의 개연성설에 의하여 주장되어 왔던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간접반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법원의 경험칙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데 특징이 있다. 이들 판결은 인과관계 개연성론에서 진일보하여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과 그 부분의 손해가 발생한 점이 있으면 가해자가 무해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시설책임, 위험책임, 또는 결과책임을 인정하는 환경책임법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갖는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이경환, 1999)

## (2) 위법성 인정여부 - 수인한도론-

수인한도론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침해가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이론으로써 침해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설의 발전으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위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과실까지 추정된다 하는 과실과 위법성을 모두 포섭하는 개념으로써의 신수인한도론이 정립되기에 이르렀다(오석락 1996, 천병태 등 1997).

법규상 요청되는 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위법성이 인정되어 피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취지의 판례요지를 살펴본다.

(가) 1991. 7. 23. 선고 89다카 1275 판결

대법원은 앞에서 소개한 의정부시 수락산부근 나전모방공업(주)에서의 대기오염피해에 대한 소송에서, “①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이 사건에서처럼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에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지점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1984. 6. 12. 선고, 81다 558 판결 참조). ② 피고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된 바와 같이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 한 원인이 된 이상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1999. 1. 26. 선고 98다 23850 판결

또한, 대법원은 (주)대백종합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①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②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③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 5. 우리나라와 일본의 환경분쟁조정제도 비교

우리나라는 1991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일본은 1972년 공해등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나라의 제도는 법률적 체계가 유사하지만 운영해 오면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여 왔다. 이 두 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내용과 운영에 관하여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 가. 환경분쟁조정 의 근거법률과 조직

우리나라에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0년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199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서부터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기관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중 상임위원은 3인 이내(현재 1인)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에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심사관을 두어 사실조사와 인과관계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전문가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신속성 있게 위촉하고 있다. 16개 시·도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16개 시·도중에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한 곳은 없으며, 서울시 등 일부 시·도만이 위원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20년 앞선 1970년에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해분쟁처리법을 제정하였고, 1972년 공해등조정위원회설치법에 근거하여 중앙공해심사위원회와 토지조정위원회를 통합하여 총리부의 외국으로 공해등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다. 현재는 총무부 소속기관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등 6인으로 조직된 합의체이고 이중 3인은 비상근이며, 임기는 5년이다. 위원회에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고 사무국 직원 가운데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30인 이내



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지방조직으로 각 도도부현에는 도도부현공해심사회를, 공해심사회를 두지 않는 도도부현에는 9인-15인이내의 공해심사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38개 도도부현에 상설 조직으로 공해심사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9개현이 공해심사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둘 이상의 도도부현에 걸친 분쟁은 도도부현 연합심사회를 두어 처리하고 있다.

표 2-1. 환경분쟁조정외 근거법률과 조직

구 분	우리나라	일 본
근거법률	환경분쟁조정법(1990)	공해분쟁처리법(1970)
조직		
-국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해등조정위원회
소속	환경부	총무부(2000까지 총리부)
설치연도	1991년	1972년
위원	9인(상임위원 3인이내, 현재 1인) 임기 2년, 연임 가능	6인(상임위원 3인) 임기 5년
전문위원	사건별로 필요시 위촉	30인 이내 위촉
사무국	20인 내외	40인 내외 ※ 변호사 자격자 반드시 포함
-지방체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6개 시도에 설치 · 2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	도도부현 공해심사회 · 38개 도도부현에 설치 공해심사위원 후보자명부(비상설) · 9개현
성격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위원회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위원회

자료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일 환경분쟁조정제도 비교 세미나, 2001

## 나. 환경분쟁조정의 범위와 절차

우리나라는 환경피해와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다툼을 환경분쟁의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피해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진동에 의한 지반침하 및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 등 10개 분야의 피해를 말한다.

일본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악취 등 7가지 공해에 대한 민사분쟁과 광업권 설정·광구금지지역의 지정 등 토지이용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 7대 공해 이외에 일조장애, 통풍장애, 교통 체증 등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포괄한 분쟁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리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조정의 영역이 넓다. 우리나라가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상에 한정하여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분쟁이 점차 다양화해 가는 것에 발맞추어 신청 요건과 분쟁조정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상의 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조정을 도모하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의 절차로 우리나라는 斡旋, 調停, 裁定이 있고, 일본은 여기에 仲裁를 더하여 4가지 절차가 있다. 일본의 재정은 책임재정과 원인재정으로 나뉘는데, 책임재정은 인과관계 유무 및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원인재정은 가해행위와 피해발생의 사이에 인과관계만을 판단하는 절차이다. 원인재정의 특이한 점은 어쩔 수 없는 경우 상대방 지

정을 보류하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공해관련 피해의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접수한 재판소가 공해등조정위원회에게 원인재정을 위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일본의 책임재정에 해당한다.

일본의 중재절차는 당사자간에 중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는 사전합의를 전제로 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서 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표 2-2. 환경분쟁조정의 범위와 절차

구분	우리나라	일본
대상	환경피해분쟁 환경시설 설치·관리 분쟁	환경피해분쟁 환경시설 설치·관리 분쟁 토지이용 행정처분의 불복분쟁
환경 피해 범위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 오염, 소음, 진동, 악취, 진동에 의한 지반침하, 자연생태계 파괴, 해양오염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 (10개 분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지반침하 (7개 분야) ※7개 공해 이외에 일조장애, 통풍 장애, 전자파 등 생활환경을 악화 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도 당사자 신 청시 함께 처리
절차	알선, 조정, 재정	알선, 조정, 중재, 재정(원인재정, 책임재정)
재정 효력	6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의 효력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의 효력

자료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일 환경분쟁조정제도 비교 세미나, 2001

## 다. 환경분쟁조정 관할 및 처리기간

우리나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調整)의 절차중에서 조정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재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調整), 2이상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조정(調整), 직권조정(職權調整), 지방조정위원회가 조정이 곤란하여 이송한 분쟁의 조정(調整), 다수인 관련 분쟁조정(調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시·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알선, 조정(調停) 및 조정금액 1억 원 이하의 재정을 소관사무로 하고 있다.

일본의 공해등조정위원회는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다수의 사람에게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중대 사건(사람이 사망 또는 신체 장애발생, 동·식물 등의 피해액 5억엔 이상), 2이상의 도도부현에 걸친 광역처리사건(항공기, 신간선 철도소음 분쟁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해관련 진정처리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도도부현심사회는 공해등조정위원회 관할 분쟁 이외의 분쟁에 대한 알선, 조정 및 중재를 하고, 재정은 중앙위원회에서만 하고 있다.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해상담원제도는 환경 피해에 관한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조사를 하며 관계기관에 대한 개선 조치의 지도, 조언을 하는 등 진정을 접수에서 해결에 이르기까지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점차 복잡화·다양화해 가는 환경 민원처리에 적합한 제도로써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조정외 사후관리를 보면, 가해자가 조정 결과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나라는 사후관리제도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은 조정 결과에 대한 의무이행권고 절차를 두고 있어서 비록 법률상의 강제집행력은 없더라도 공해분쟁처리제도를 더욱 실효화하고 있다.

분쟁조정외 처리기간을 보면 우리나라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정외 재정 처리기간은 환경분쟁조정법에 9개월로 되어 있으나 3개월 이내에 처리한 것이 31.0%, 4-6개월 사이에 처리한 것이 36.6%로 전체의 67.6%를 6개월 이내에 처리하였고, 7-9개월 사이에 처리한 것은 27.0%, 9개월 이상이 소요된 것은 5.4%이다. 일본은 처리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데, 공해등조정위원회의 경우 종결 처리까지 보통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도도부현 공해심사회의 평균 처리기간 역시 16.3개월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調停)사건이 전체의 9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나 분쟁조정제도 당초의 취지가 간편·신속·공정한 해결임을 감안할 때 처리기간을 좀더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3. 환경분쟁조정 의 관할 및 처리기간

구분	우리나라	일본
관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정가액 1억원을 초과한 재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 2이상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조정, 직권조정, 지방조정위원회가 조정이 곤란하여 이송한 분쟁조정, 다수인 관련 분쟁조정	공해등조정위원회 · 재정 · 알선, 조정, 중재중 중대사건(사망, 신체장애 또는 동식물 등 피해액 5억엔이상) · 광역처리사건(2이상 도도부현에 걸친 분쟁) : :항공기, 신간선 철도소음 분쟁 등
	시도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 이외의 사건	도도부현 공해심사회 · 공해등조정위원회 관할 이외의 사건
사후 관리	-	의무이행 권고
처리 기간	법률상 9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실제 6개월 이내(전체의 67.6%)	공해등조정위원회 : 2년이상 공해심사회 : 16.3개월

자료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일 환경분쟁조정제도 비교 세미나, 2001

###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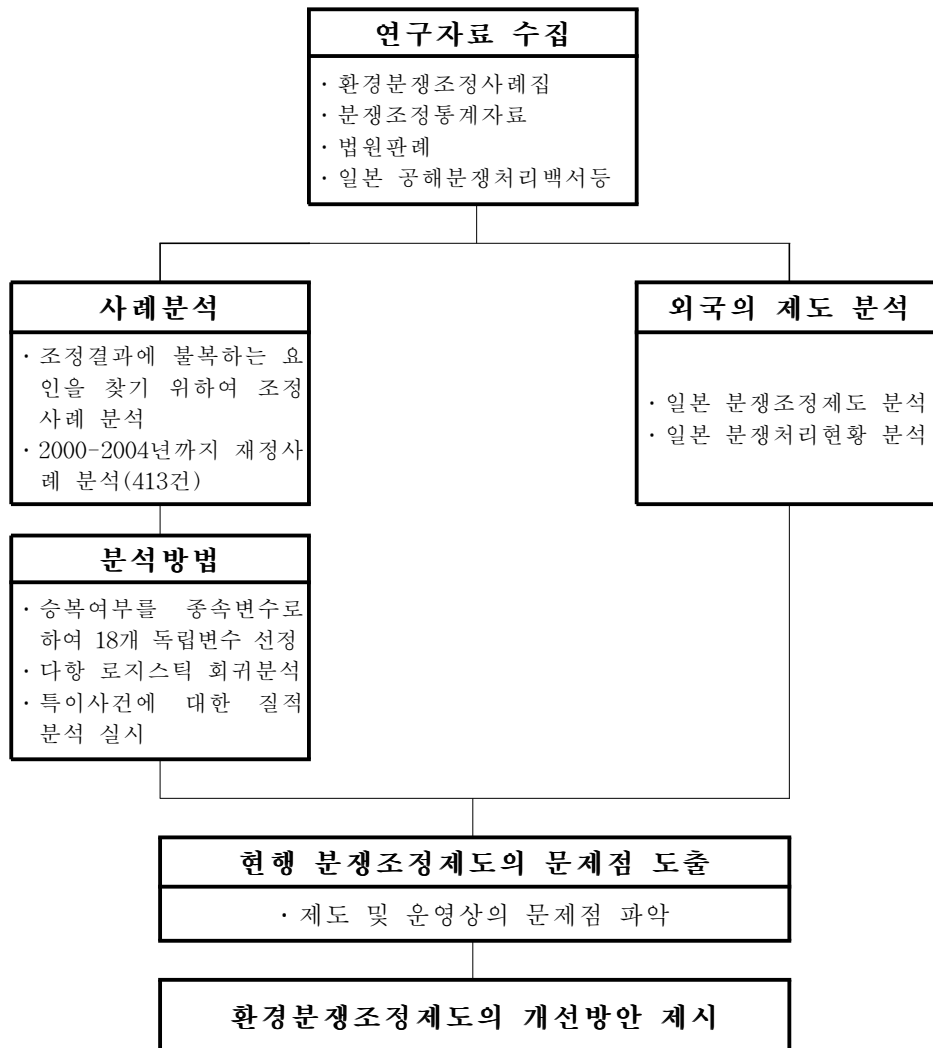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틀

## 2. 연구의 대상

이 연구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제도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해결 방법인 사적구제와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방법인 사법적 구제는 제외하고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준사법적인 구제제도인 환경분쟁조정제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간의 조정(調整)처리실적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시설이나 관련제도의 개선 또는 변경 등을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정(調停)처리 사건은 통계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이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재정절차를 거쳐 처리한 사건만을 통계처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제도운영 면에서도 가장 앞서간다는 일본의 공해분쟁처리제도와 분쟁처리현황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정사건을 정리한 후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또 우리나라 제도와 외국의 분쟁조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현행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평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은 1997. 8월 전문을 개정하였고 2002. 12월 재차 개정하여 과거 환경보전법이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서 노출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미비점을 대부분 보완하였다. 하지만 조정(調整)한 사건중 재정절차로 처리한 사건의 3분의1이 아직도 조정결과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이렇게 당사자가 불복결정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조정사례를 통계처리 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통계분석결과를 평가하여 당사자의 불복결정에 기여도가 높은 요인을 찾아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우리 분쟁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공해분쟁처리제도 및 분쟁처리현황을 비교 분석한 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넷째, 위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토대로 현행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였다.

## 4. 연구방법

### 가. 조정사건 분석

#### (1) 분석변수

이 연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절차로 처리한 사건을 정리한 후 종속변수인 승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18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피해자의 수, 가해자의 수, 피해자의 업종, 가해자의 업종, 조정신청액, 처리기간, 분쟁발생지역, 사

건처리년도, 오염원과 피해지점과의 이격거리, 관공서 민원제기회수, 피해기간, 피해원인, 피해내용, 배상액, 배상인의 수, 1인당 배상액, 배상율, 조정위원장 등으로 나누었다. 분석변수의 정의는 표 3-1과 같다.

표 3-1. 분석변수의 정의

변수	범주
종속변수	
조정승복여부	1. 승복 2. 가해자 불복 3. 피해자 불복
독립변수	
피해자의 수	1. 1인 2. 2-10인 3. 11-100인 4. 101인 이상
가해자의 수	1. 1개 2. 2개 3. 3개 이상
피해자의 업종	1. 주민 2. 축산업 3. 기타
가해자의 업종	1. 건설업 2. 관공서+공기업 3. 건설업+관공서+공기업 4. 기타
조정신청액	1. 5천만원 미만, 2. 5천만원-2억원 미만, 3. 2억원-5억원 미만 4. 5억원 이상
처리기간	1. 3개월 이하 2. 4-6개월 3. 7개월 이상
분쟁발생지역	1. 서울 2. 광역시 3. 경기 4. 기타 도
사건처리년도	1. 2000년 2. 2001년 3. 2002년 4. 2003년 5. 2004년
이격거리	1. 10m 이하 2. 11-30m 3. 31m이상
민원제기회수	1. 없음 2. 1회 3. 2회 4. 3회 이상
피해기간	1. 3개월 이하 2. 4-6개월 3. 7-12개월 4. 13개월 이상
피해원인	1. 소음.진동.먼지 2. 대기.악취 3. 수질 4. 기타
피해내용	1. 정신적 2. 건축물 3. 농작물.축산물 4. 기타
배상액	1. 5백만원 미만 2. 5백만원-2천만원 미만 3. 2천만원-5천만원 미만 4. 5천만원 이상
배상인의 수	1. 1인 2. 2-5인 3. 6-30인 4. 31인 이상
1인당 배상액	1. 30만원 미만 2. 30만원-1백만원 미만 3. 1백만원-1천만원 미만 4. 1천만원 이상
배상율	1. 0.04 미만 2. 0.04-0.1 미만 3. 0.1-0.2 미만 4. 0.2 이상
조정위원장	1. 5대 2. 6대 3. 7대 4. 8대

## (2) 분석방법

먼저 연구대상 자료를 분석하여 당사자의 승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양적(量的)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조정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수, 가해자의 수, 피해자의 업종, 가해자의 업종, 조정신청액, 처리기간, 분쟁발생지역, 사건처리년도, 이격거리, 민원제기회수, 피해기간, 피해원인, 피해내용, 배상액, 배상인의 수, 1인당 배상액, 배상율, 조정위원장 등 18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승복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표 3-2와 같이 범주화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승복여부는 승복, 가해자불복, 피해자불복으로 구분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12.0을 사용하였고, 샘플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재정사례(342건) 가운데 기각처리 된 55건을 제외한 287건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조정사례들 중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의미가 큰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건의 내용을 적시하여 의미를 부각시켜 설명하는 질적(質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나. 일본의 환경분쟁조정제도 분석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공해분쟁처리법, 공해분쟁처리백서의 분쟁처리현황, 공해등조정위원회의 자료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와 장단점을 비교 하였다.

표 3-2. 독립변수별 조정 빈도

변수	범주	빈도(건수)	비율(%)
피해자의 수	1인	67	23.3
	2-10인	80	27.9
	11-100인	68	23.7
	101인 이상	72	25.1
	계	287	100.0
가해자의 수	1개	156	54.4
	2개	81	28.2
	3개 이상	50	17.4
	계	287	100.0
피해자의 업종	주민	208	72.5
	축산업	51	17.8
	기타	28	9.8
	계	287	100.0
가해자의 업종	건설업	152	53.0
	관공서+공기업	39	13.6
	건설업+관공서+공기업	65	22.6
	기타	31	10.8
계	287	100.0	
조정신청액	5천만원 미만	72	25.1
	5천만-2억 미만	90	31.4
	2억-5억 미만	60	20.9
	5억 이상	65	22.6
	계	287	100.0
처리기간	3개월 이하	82	28.6
	4-6개월	110	38.3
	7개월 이상	95	33.1
	계	287	100.0
분쟁발생지역	서울	76	26.5
	광역시	49	17.1
	경기	65	22.6
	기타 도	97	33.8
계	287	100.0	
사건처리년도	2000년	33	11.5
	2001년	56	19.5
	2002년	81	28.2
	2003년	58	20.2
	2004년	59	20.6
	계	287	100.0
이격거리	10m 이하	96	33.4
	11-30m	82	28.6
	31m 이상	108	37.6
	결측	1	0.3
	계	287	100.0

변수	범주	빈도(건수)	비율(%)
민원제기 회수	없음	123	42.9
	1회	79	27.5
	2회	37	12.9
	3회 이상	48	16.7
	계	287	100.0
피해기간	3개월 이하	51	17.8
	4-6개월	61	21.3
	7-12개월	77	26.8
	13개월 이상	98	34.1
	계	287	100.0
피해원인	먼지/소음/진동	253	88.2
	대기/악취	18	6.3
	수질	8	2.8
	기타	8	2.8
	계	287	100.0
피해내용	정신적	156	54.4
	건축물	43	15.0
	농작물/축산물	69	24.0
	기타	19	6.6
	계	287	100.0
배상액	5백만원 미만	71	24.7
	5백만-2천만 미만	89	31.0
	2천만-5천만 미만	62	21.6
	5천만 이상	64	22.3
	결측	1	0.3
	계	287	100.0
배상인의 수	1인	75	26.1
	2-5인	65	22.6
	6-30인	50	17.4
	31인 이상	97	33.8
	계	287	100.0
1인당 배상액	30만원 미만	62	21.6
	30만-1백만 미만	106	36.9
	1백만-1천만 미만	64	22.3
	1천만 이상	54	18.8
	결측	1	0.3
	계	287	100.0
배상율	0.04 미만	63	22.0
	0.04-0.1 미만	71	24.7
	0.1-0.2 미만	74	25.8
	0.2 이상	79	27.5
	계	287	100.0

변수	범주	빈도(건수)	비율(%)
조정위원장	5대	26	9.1
	6대	77	26.8
	7대	160	55.7
	8대	23	8.0
	결측	1	0.3
	계	287	100.0
승복여부	승복	184	64.1
	가해자 불복	81	28.2
	피해자 불복	22	7.7
	계	287	100.0

## IV. 연구결과

### 1.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처리현황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진정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환경행정기관에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수단으로 행정권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민사상 분쟁의 성격이 짙으며 그 처리효과 역시 알선이나 조정과 유사하다. 따라서 환경오염피해 진정처리는 환경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81년부터 2004년말 현재까지 환경오염피해 진정에 대한 보상은 다수 있었으며,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환경오염피해 진정 및 보상현황

##### (1) 환경오염피해 진정처리현황

###### (가) 시·도별 환경오염피해 진정처리현황

1980년 환경청이 발족한 이래 환경오염으로 인한 진정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이 1993년도에 들어 진정건수가 급격한 증가하였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전남, 경남은 전년도에 비하여 약 2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전체 처리건수 72,931건 중 서울이 40,839건으로 56.0%를 차지하고, 경기도가 13,951건으로 19.1%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이 전체 처리건수의 7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도시의 건설, 지

하철공사, 아파트의 재개발 등으로 인한 민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어가면서 지역개발사업의 증가로 진정건수도 점차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차원에서 환경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시·도별 환경오염피해 진정처리현황

단위: 건수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1	1,005	364	127	72	28	-	-	-	119	34	48	46	73	43	31	18	2
1982	896	347	88	75	40	-	-	-	90	18	7	16	35	16	34	130	-
1983	1,221	666	55	95	54	-	-	-	80	7	21	70	55	23	15	78	2
1984	1,200	628	57	84	67	-	-	-	100	35	10	37	18	27	21	116	-
1985	1,106	618	61	110	31	-	-	-	85	17	22	55	24	23	25	35	-
1986	1,161	638	87	117	36	-	-	-	107	30	34	40	12	24	9	26	1
1987	1,442	631	222	132	71	-	-	-	144	28	14	16	60	42	33	48	1
1988	1,219	493	148	87	67	22	10	-	101	16	10	44	59	25	24	112	1
1989	1,201	649	179	55	-	23	-	-	95	4	18	33	27	50	31	36	1
1990	1,033	549	99	39	14	13	11	-	130	20	34	16	34	34	19	20	1
1991	1,274	666	47	69	59	17	19	-	117	21	36	58	59	45	39	19	3
1992	1,153	575	100	50	24	10	16	-	116	21	43	49	36	26	57	27	3
1993	2,144	1,034	96	48	59	21	14	-	526	27	38	39	27	100	50	62	3
1994	2,301	1,061	170	73	60	37	50	-	287	10	22	259	55	39	-	176	2
1995	2,061	744	341	93	68	21	29	-	439	15	26	92	63	29	29	66	6
1996	2,234	1,234	104	99	37	19	50	-	414	11	20	94	-	37	28	73	14
1997	2,348	1,194	107	46	122	14	41	22	512	31	12	44	77	27	48	47	4
1998	4,578	3,033	43	33	53	18	22	29	507	22	8	33	675	30	52	20	-
1999	2,963	2,035	130	29	46	8	21	6	405	55	20	60	62	18	33	35	-
2000	5,504	3,691	74	58	81	23	32	42	916	48	22	56	62	58	302	39	-
2001	7,663	6,049	94	49	95	23	17	27	870	52	15	71	65	96	79	55	6
2002	4,500	944	658	62	459	34	37	39	1,773	46	24	102	67	36	152	59	8
2003	7,368	4,677	366	137	132	43	109	60	776	37	69	612	42	62	151	89	6
2004	15,356	8,319	191	134	136	72	54	47	5,242	46	4	110	399	99	250	248	5
계	72,931	40,839	3,644	1,846	1,839	418	532	272	13,951	651	577	2,052	2,086	1,009	1,512	1,634	69

자료원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5



(나) 오염원인별 환경오염피해 진정처리현황

오염원인별로 진정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전체 처리건수 중 대기오염 피해가 26.6%, 수질오염 피해가 7.9%, 토양오염 피해가 0.4%,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가 50.1%, 악취 피해가 7%, 그리고 기타 원인에 의한 피해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가 많은 것은 소음·진동의 특성이 사람이 즉각 피해를 느낄 수 있는 감각공해이고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도심에서 아파트 건설공사, 지하철공사 등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오염원인별 환경오염피해 진정처리현황

단위: 건수

연도	완결							미결
	계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악취	기타	
1981	1,005	236	156	24	376	147	66	22
1982	896	220	132	7	371	115	51	20
1983	1,221	229	110	6	649	166	61	9
1984	1,200	253	155	14	589	143	46	8
1985	1,106	185	136	5	577	139	64	7
1986	1,161	209	138	12	630	141	31	5
1987	1,442	292	248	17	602	203	80	12
1988	1,219	263	169	15	546	159	67	12
1989	1,201	179	163	7	590	148	114	11
1990	1,033	126	151	11	507	137	101	1
1991	1,274	267	192	18	510	175	112	10
1992	1,153	233	146	6	505	161	102	5
1993	2,144	421	283	13	969	274	184	3
1994	2,301	631	336	22	924	234	154	9
1995	2,061	399	207	10	961	227	257	10
1996	2,234	341	255	4	1,260	194	180	14
1997	2,348	450	225	7	1,285	93	288	12
1998	4,578	1,998	452	12	1,480	310	326	10
1999	2,963	516	251	8	1,743	322	123	19
2000	5,504	1,135	410	20	3,346	387	206	27
2001	7,663	1,033	312	7	5,732	318	261	97
2002	4,500	829	374	10	2,568	438	281	20
2003	7,368	2,730	448	7	2,502	201	1,480	17
2004	15,356	6,248	296	-	7,300	271	1,239	17
계	72,931	19,423	5,747	262	36,522	5,103	5,874	-

자료원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5

## (2) 환경오염피해 보상현황

### (가) 연도별 피해보상현황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보상은 대부분이 금전적인 보상이며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시·도에서 접수한 것은 총 1,039건으로 이중에 727건을 처리하여 70.0%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표 4-3. 연도별 환경오염피해 보상현황

단위: 천원

연도	총건수	보상처리		미결	
		건수	보상액	건수	보상요구액
1980	51	38	558,048	13	2,809,393
1981	61	54	1,097,484	7	1,905,477
1982	32	20	634,248	12	2,195,275
1983	39	30	3,044,702	9	1,011,609
1984	30	28	1,195,388	2	974,524
1985	29	22	219,918	7	831,848
1986	17	14	826,616	3	1,282
1987	31	24	5,222,625	7	3,100,871
1988	23	20	1,379,849	3	7,212,800
1989	22	19	2,748,553	3	130,000
1990	15	14	3,492,703	1	13,404,000
1991	26	22	5,218,015	4	37,228,041
1992	16	14	2,759,622	2	1,048,096
1993	24	19	2,338,168	5	30,743,246
1994	21	15	2,770,782	6	14,959,064
1995	21	19	1,093,307	2	5,077,000
1996	12	11	732,921	1	44,800
1997	12	10	1,989,775	2	6,137,115
1998	11	7	1,960,265	4	315,000
1999	44	23	1,167,682	21	3,471,920
2000	64	44	1,678,871	20	4,310,503
2001	47	38	1,118,149	9	1,342,210
2002	51	31	1,436,849	20	3,461,280
2003	136	65	4,123,650	71	2,494,910
2004	204	126	834,953	78	5,887,419
계	1,039	727	50,643,143	312	150,097,683

자료원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5

(나) 피해내용별 환경오염피해 보상현황

표 4-4의 피해내용별 환경오염피해 보상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작물 피해 보상건수가 34.6%, 생활환경 피해 보상건수가 35.8%로서 이 두 분야의 보상건수가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다.

보상금액으로는 농작물 피해액이 39.6%, 수산물 피해액이 23.4%로서 전체의 63%를 점유한다.

진정건수로 볼 때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으나, 실제로 보상액수를 보면 진정건수에 비해서 수산물 피해의 보상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4-4. 피해내용별 환경오염피해 보상현황

단위: 천원,(%)

연도	구분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생활환경	기타	계
'91-'99	건수	230	-	43	88	28	389
	금액	19,753,782	-	12,034,507	7,503,378	1,509,988	40,801,655
2000	건수	8	-	-	8	28	44
	금액	310,418	-	-	250,000	1,118,453	1,678,871
2001	건수	9	-	-	9	112	130
	금액	117,234	-	-	49,210	5,924,967	6,091,411
2002	건수	6	4	1	19	1	31
	금액	61,718	173,059	5,415	1,009,959	186,698	1,436,849
2003	건수	6	5	-	54	-	65
	금액	36,480	65,190	-	411,330	-	513,000
2004	건수	13	8	-	103	2	126
	금액	55,032	64,535	-	700,636	14,750	834,953
계	건수	272	17	44	281	171	785
	금액	20,334,664	302,784	12,039,922	9,924,513	8,754,856	51,356,739

자료원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5

## 나. 환경분쟁조정 현황 및 사례 분석

### (1) 환경분쟁조정 현황

#### (가)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간하는 환경분쟁조정사례집과 환경분쟁조정통계자료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각 시·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한 조정(調整)신청 건수는 2,124건이다. 이 중 1,660건은 재정, 조정, 알선, 합의의 절차로 처리하였고, 276건은 당사자가 자진하여 철회하였으며, 나머지 188건은 처리가 진행 중이다.

처리기관별로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신청건수의 75.5%를 접수하여 전체 처리건수의 74.6%를 처리하였고, 나머지는 16개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였다.

조정(調停)의 종류별로는 전체 처리건수 가운데 재정이 38.1%, 조정(調停)이 10.8%, 알선이 5.2%, 합의로 45.9%를 처리하였다. 이 가운데 알선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처리하였다.

그리고 2003. 6. 23.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가 되는 재정신청 사건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간에 업무조정이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재정사건을 33건이나 처리하였다.

중앙위원회와 각 지방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은 그림 2 및 표 4-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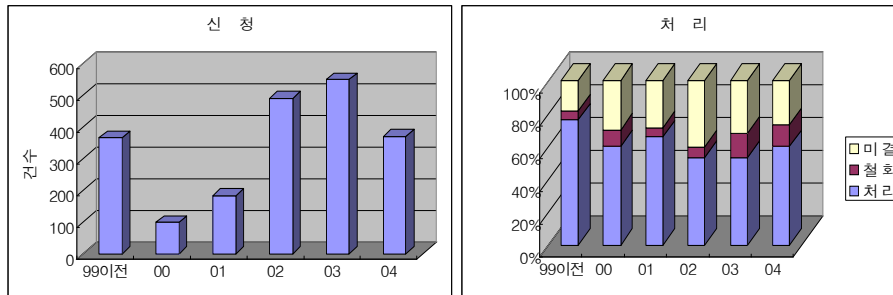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현황

표 4-5. 환경분쟁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단위: 건수

연도	구분	신청			처리					자진 철회	미결
		이월	접수	계	재정 조정	알선	합의	계			
'91-'99	중앙	37	331	368	186	20	-	74	280	21	67
	지방	1	100	101	-	33	37	-	70	18	13
	계	38	431	469	186	53	37	74	350	39	80
2000	중앙	30	70	100	39	3	-	18	60	10	30
	지방	12	56	68	-	21	14	-	35	7	26
	계	42	126	168	39	24	14	18	95	17	56
2001	중앙	30	154	184	68	7	-	46	121	10	53
	지방	26	50	76	-	30	16	-	46	15	15
	계	56	204	260	68	37	16	46	167	25	68
2002	중앙	53	440	493	118	2	-	143	263	30	200
	지방	33	15	48	-	33	1	-	34	6	8
	계	86	455	541	118	35	1	143	297	36	208
2003	중앙	200	350	550	87	-	-	205	292	81	177
	지방	141	8	149	3	19	5	30	57	4	88
	계	341	358	699	90	19	5	235	349	85	265
2004	중앙	177	195	372	101	1	-	121	223	49	100
	지방	88	204	292	30	10	13	126	179	25	88
	계	265	399	664	131	11	13	247	402	74	188
계	중앙	-	1,540	-	599	33	-	607	1,239	201	-
	지방	-	584	-	33	146	86	156	421	75	-
	계	-	2,124	-	632	179	86	763	1,660	276	-

주) 중앙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함.

자료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통계, 2005

(나) 피해원인별 환경분쟁조정현황

피해원인별로 환경분쟁조정현황을 분류해 보면, 소음·진동이 전체 처리건수의 85.5%, 대기오염이 8.8%, 수질오염이 4.2%, 해양오염이 0.5%, 토양오염, 층간소음, 일조권 등의 기타 원인에 의한 피해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처리기관별로는 소음·진동의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75.0%를 처리하였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5.0%를 처리하였다. 피해원인별 환경분쟁조정현황은 표 4-6과 같다.

표 4-6. 피해원인별 환경분쟁조정현황

단위: 건수

연도	구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기타	계
'91-'99	중앙	214	34	24	8	-	280
	지방	50	15	5	-	-	70
	계	264	49	29	8	-	350
2000	중앙	49	7	4	-	-	60
	지방	30	5	-	-	-	35
	계	79	12	4	-	-	95
2001	중앙	103	11	7	-	-	121
	지방	37	6	3	-	-	46
	계	140	17	10	-	-	167
2002	중앙	229	26	4	-	4	263
	지방	27	6	1	-	-	34
	계	256	32	5	-	4	297
2003	중앙	264	19	8	-	1	292
	지방	52	-	2	-	3	57
	계	316	19	10	-	4	349
2004	중앙	206	8	3	1	5	223
	지방	159	9	8	-	3	179
	계	365	17	11	1	8	402
계	중앙	1,065	105	50	9	10	1,239
	지방	355	41	19	-	6	421
	계	1,420	146	69	9	16	1,660

주) 1. 기타는 토양오염, 층간소음, 일조권 등임.

2. 중앙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함.

자료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통계, 2005

(다) 피해내용별 환경분쟁조정현황

피해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정신적 피해가 40.4%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건축물+정신적 피해가 22.0%, 축산물 피해가 14.5%, 농작물 피해가 6.4%, 건축물 피해가 5.8%, 내륙수산물 피해가 2.2%, 해양수산물 피해가 0.7%, 그리고 영업손실, 지하수오염, 방음대책 및 이주비 요구 등의 기타피해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내용별 환경분쟁조정현황은 표 4-7과 같다.

표 4-7. 피해내용별 환경분쟁조정현황

단위: 건수

연도	구분	정신적 피해	건축물 + 정신적	축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건축물 피해	내 수 산 물 피 해	해 양 수 산 물 피 해	기 타 피 해	계
'91-'99	중앙	70	62	54	27	28	14	9	16	280
	지방	10	6	22	11	11	1	1	18	70
	계	80	68	76	38	39	15	10	34	350
2000	중앙	16	13	15	4	2	5	-	5	60
	지방	12	10	3	2	7	-	-	1	35
	계	28	23	18	6	9	5	-	6	95
2001	중앙	36	33	26	8	2	5	-	11	121
	지방	16	9	5	8	5	2	-	1	46
	계	52	42	31	16	7	7	-	12	167
2002	중앙	121	65	42	13	7	1	-	14	263
	지방	8	11	5	5	1	1	-	3	34
	계	129	76	47	18	8	2	-	17	297
2003	중앙	149	58	18	9	12	5	-	41	292
	지방	29	11	3	4	5	-	-	5	57
	계	178	69	21	13	17	5	-	46	349
2004	중앙	107	49	33	9	1	1	1	22	223
	지방	96	39	14	6	15	1	-	8	179
	계	203	88	47	15	16	2	1	30	402
계	중앙	499	280	188	70	52	31	10	109	1,239
	지방	171	86	52	36	44	5	1	26	421
	계	670	366	240	106	96	36	11	135	1,660

주) 1. 기타피해는 영업손실, 지하수오염, 방음대책, 이주비요구 등임.

2. 중앙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함.

자료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통계, 2005

(라) 처리기간별 환경분쟁조정현황

사건 처리기간별로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평균 5.5개월이 소요되는데 비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평균 4.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다. 처리기간별 분포를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개월 내지 9개월 사이에서 89.3%를 처리하였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개월이 내에서 47.3%를 처리하였다. 처리기간별 분쟁조정현황은 표 4-8과 같다.

표 4-8. 처리기간별 환경분쟁조정현황

단위: 건수

연도	구분	처리 건수	평균 처리 기간	처리기간									
				1개월 미만	2개월 미만	3개월 미만	4개월 미만	5개월 미만	6개월 미만	7개월 미만	8개월 미만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91-'99	중앙	280	5.6	6	12	40	38	49	50	23	17	16	29
	지방	70	3.0	18	12	21	5	6	6	-	-	-	2
	계	350	-	24	24	61	43	55	56	23	17	16	31
2000	중앙	60	4.7	3	4	11	8	9	7	5	6	4	3
	지방	35	3.5	6	10	2	6	5	4	-	-	2	-
	계	95	-	9	14	13	14	14	11	5	6	6	3
2001	중앙	121	3.5	10	13	27	33	15	9	6	5	1	2
	지방	46	4.0	6	9	6	10	3	2	4	1	4	1
	계	167	-	16	22	33	43	18	11	10	6	5	3
2002	중앙	263	3.1	17	39	86	69	45	7	-	-	-	-
	지방	34	5.6	-	4	4	7	1	4	4	6	1	3
	계	297	-	17	43	90	76	46	11	4	6	1	3
2003	중앙	292	6.5	10	8	10	9	31	59	60	63	33	9
	지방	57	3.3	17	12	7	7	1	6	1	2	1	3
	계	349	-	27	20	17	16	32	65	61	65	34	12
2004	중앙	223	7.3	14	1	5	9	14	13	32	39	66	30
	지방	179	4.9	20	16	29	18	24	18	15	17	15	7
	계	402	-	34	17	34	27	38	31	47	56	81	37
계	중앙	1,239	5.5	60	27	179	166	163	145	126	130	120	73
	지방	421	4.2	67	63	69	53	40	40	24	26	23	16
	계	1,660	-	127	140	248	219	203	185	150	156	143	89

주) 중앙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자료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통계, 2005



(마) 배상결정 현황

표 4-9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의 배상결정 현황을 보면 전체 조정(調整)사건 1,239건 중 39.7%에 해당하는 492건을 배상결정 하였다. 나머지 747건은 합의, 기각, 조정중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4-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 현황

구분	배상결정	합의	기각	조정중단 등 기타	계
조정건수	492	620	103	24	1,239
비율(%)	(39.7)	(50.0)	(8.3)	(2.0)	(100.0)

자료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통계, 2005

(바) 조정신청액 대비 배상액 현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을 결정한 건수는 총 492건이며, 배상율은 조정신청액 대비 평균 10.3%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0. 조정신청액 대비 배상액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배상건수	조정신청액	배상액	배상율
'91-'99	150	92,640,256	7,573,378	8.2
2000	32	11,500,719	899,000	7.8
2001	59	15,445,239	2,735,743	17.7
2002	105	40,737,955	4,250,725	10.4
2003	66	25,246,840	4,020,242	15.9
2004	80	28,267,030	2,645,041	9.4
계	492	213,838,279	22,124,129	10.3

자료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통계, 2005

(사) 조정(調整)성립현황

표 4-11의 조정성립현황을 보면 전체처리건수의 83.0%가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와 있다. 처리기관별로 분류해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83.6%이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81.2%로 나와 있는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성립율이 2.4%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표 4-11. 조정성립현황

단위: 건수,(%)

연도	구분	조정건수	효력확정		합의기간 미도래	
			계	성립(비율)		불성립
'91-'99	중앙	280	280	218(77.9)	62	-
	지방	70	70	41(58.6)	29	-
	계	350	350	259(74.0)	91	-
2000	중앙	60	60	50(83.3)	10	-
	지방	35	35	25(71.4)	10	-
	계	95	95	75(78.9)	20	-
2001	중앙	121	121	90(74.4)	31	-
	지방	46	46	34(73.9)	12	-
	계	167	167	124(74.3)	43	-
2002	중앙	263	263	221(84.0)	42	-
	지방	34	34	29(85.3)	5	-
	계	297	297	250(84.2)	47	-
2003	중앙	292	292	262(89.7)	30	-
	지방	57	57	50(87.7)	7	-
	계	349	349	312(89.4)	37	-
2004	중앙	223	208	182(87.5)	26	15
	지방	179	173	158(91.3)	15	6
	계	402	381	340(89.2)	41	21
계	중앙	1,239	1,224	1,023(83.6)	201	15
	지방	421	415	337(81.2)	78	6
	계	1,660	1,639	1,360(83.0)	279	21

주) 중앙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함.

자료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통계, 2005

## (2) 조정사건 분석

### (가) 분석대상 사례 선정

조정사례분석은 전체 조정(調整)사건 중에서 시설이나 관련제도 개선 등을 주로 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정(調停)사건은 제외하고, 금전적인 배상결정을 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한 재정(裁定)처리 사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재정사건으로 하였으며, 매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간하는 환경분쟁조정사례집에 수록된 사례만을 통계처리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5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재정처리 건수는 413건이다. 그러나 이미 접수되어 진행중에 있는 사건과 동일한 성격의 사건은 같은 날 동일 건으로 병합처리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분쟁조정사례집에 수록된 사례수는 342건이며, 이 사례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 (나) 재정사건 처리현황 분석

분석대상인 342건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리고 기름유출, 실내대기, 폐기물오염, 그리고 기름유출, 실내대기, 폐기물오염, 일조권, 층간소음 등의 기타오염 원인으로 구분하여 처리건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소음·진동이 83.9%, 대기오염이 8.5%, 수질오염이 3.5%, 그리고 기름유출, 실내대기, 폐기물오염, 일조권, 층간소음 등의 기타오염 피해가 4.1%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처리건수를 연도별로 나누어 보면 2000년이 40

건, 2001년이 62건, 2002년이 92건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3년이 75건, 2004년이 73건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3. 6. 23.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가 되는 재정신청 사건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법이 개정된 이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재정사건은 33건이다.

분쟁이 발생한 지역을 16개 시·도로 분류하여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86건(25.1%), 경기도가 75건(21.9%)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가 26건(7.6%), 경상북도가 23건(6.7%)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가 각 10건 내지 17건의 범위 내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 외에 대구는 4건, 광주가 3건이며, 유일하게 제주도는 단 1건도 처리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피해자의 업종을 양식업, 축산업, 농업, 주민, 양봉업, 그리고 요식업, 숙박업, 제조업, 차량정비업 등의 기타업종으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면 일반주민이 신청한 사건이 22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축산업자가 신청한 것이 55건(16.1%)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농민이 신청한 것이 18건, 양식업자가 신청한 것이 14건, 양봉업자가 신청한 것이 3건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요식업, 숙박업, 제조업, 차량정비업 등을 하는 주민이 신청한 것이 25건으로 7.3%를 점유하고 있다.

가해자의 업종을 건설업, 공기업, 관공서, 관공서+공기업+건설업, 관공서+제조업, 그리고 제조업, 종교시설, 유흥업, 발전소, 주유소 등의 기타업종 등의 7개 분야로 나누어 보면 건설업이 167건(48.8%)으로 처리건수가 가장

많고, 관공서+공기업+건설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종이 83건(24.3%)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공장 같은 제조업이 27건(7.9%), 관공서가 24건(7.0%) 순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사건을 처리한 기간을 1-3개월, 4-6개월, 7-9개월, 10개월이상 등 4개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4-6개월 사이에 처리된 사건이 121건(35.4%)이고, 7-9개월 사이에 처리된 사건이 113건(33.0%)로써 이 기간에 처리된 사건이 전체의 68.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9개월의 법정처리기간을 넘긴 사건도 1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피해내용을 정신적 피해, 건축물+정신적 피해, 축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건축물 피해, 내륙수산물 피해, 해양수산물 피해, 그리고 영업손실, 양봉피해 등에 의한 기타피해로 구분해 보면 정신적 피해가 159건(46.5%)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정신적 피해가 33건(9.6%), 축산물 피해가 55건(16.1%)를 차지하고 이다. 그리고 기각된 사건도 55건(16.1%)에 이르고 있다.

사건을 처리한 조정위원장을 분류하면 5대(1998.5.23-2000.7.31), 6대(2000.8.17-2001.3.1), 7대(2001.3.6-2003.5.23), 8대(2003.6.4-2004.12.30), 9대(2004.12.30-현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조정위원장별로 사건처리건수를 보면 5대 위원장이 32건(9.4%), 6대 위원장이 26건(7.6%), 7대 위원장이 179건(52.3%), 8대 위원장이 104건(30.4%)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다. 9대 위원장은 2004년 12월 말경에 부임하여 처리실적이 1건에 불과하다.

사건처리년도, 분쟁발생지역, 피해자의 업종, 가해자의 업종, 처리기간, 피해내용 및 조정위원장별 재정사건처리현황은 표 4-12와 같다.

표 4-12. 재정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수

구분	내용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타 <sup>(1)</sup>	계
사건처리년도	2000	32	5	3	-	40
	2001	55	5	2	-	62
	2002	76	11	1	4	92
	2003	64	3	3	5	75
	2004	60	5	3	5	73
분쟁발생지역	서울	82	2	-	2	86
	부산	13	-	-	1	14
	대구	2	1	-	1	4
	인천	13	2	-	-	15
	광주	2	1	-	-	3
	대전	9	-	-	1	10
	울산	8	2	-	-	10
	경기	66	4	1	4	75
	강원	15	-	2	-	17
	충북	11	3	-	-	14
	충남	11	3	-	1	15
	전북	11	3	2	-	16
	전남	20	3	2	1	26
	경북	16	3	3	1	23
	경남	8	2	2	2	14
제주	-	-	-	-	-	
피해자 업종	양식업	6	-	7	1	14
	축산업	52	3	-	-	55
	농업	-	7	5	6	18
	주민	207	13	-	7	227
	양봉업	1	2	-	-	3
	기타 <sup>(2)</sup>	21	4	-	-	25

구분	내용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타 <sup>(1)</sup>	계
가해자 업종	건설업	162	2	-	3	167
	공기업	7	1	2	4	14
	관공서	23	-	1	-	24
	관공서+공기업 +건설업	66	6	6	5	83
	관공서+제조업	2	4	1	-	7
	제조업	14	13		-	27
	기타 <sup>(3)</sup>	13	3	2	2	20
처리기간	1-3개월	85	6	2	2	95
	4-6개월	93	15	6	7	121
	7-9개월	98	7	3	5	113
	10개월 이상	11	1	1	-	13
피해내용	기각	40	5	5	3	55
	정신적	146	12	-	1	159
	건축물+정신적	33	-	-	-	33
	축산물	53	2	-	-	55
	농작물	-	7	3	6	16
	건축물	7	-	-	3	10
	내륙수산물	5	-	1	1	7
	해양수산물	-	1	2	-	3
기타 <sup>(4)</sup>	3	2	1	-	4	
조정위원장	5대	26	4	2	-	32
	6대	24	1	1	-	26
	7대	146	19	6	8	179
	8대	90	5	3	6	104
	9대	1	-	-	-	1
계		287	29	12	14	342

주) 1. 기타<sup>(1)</sup>는 기름유출, 실내대기, 폐기물오염, 일조권, 층간소음 등임.

2. 기타<sup>(2)</sup>는 요식업, 숙박업, 제조업, 차량정비업 등임.

3. 기타<sup>(3)</sup>는 종교시설, 유흥업, 발전소, 주유소 등임.

4. 기타<sup>(4)</sup>는 영업손실, 양봉피해 등임.

자료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사례집, 2000-2004

(다) 재정사건의 조정신청액 및 배상액 분석

피해배상을 금전적으로 결정한 사건은 287건이다. 총 133,712,435천원이 배상신청 되어 총 12,832,128천원을 배상결정 하였으며, 평균 배상율은 9.6%이다.

사건 처리년도별로 보면 2001년 15.2%, 2003년은 10.8%로써 평균배상율 9.6%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2000년, 2002년, 2004년은 5.2%에서 최고 9.0%로써 평균배상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피해내용을 정신적 피해, 건축물+정신적 피해, 축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건축물 피해, 내륙수산물 피해, 해양수산물 피해, 그리고 영업손실, 양봉피해 등에 의한 기타피해로 나누어 보면 해양수산물 피해가 41.6%로 가장 높은 배상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정신적 피해가 10.3%, 농작물 피해가 10.0%로써 평균배상율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건축물+정신적 피해, 축산물 피해, 건축물 피해, 내륙수산물 피해는 6.2%에서 9.2% 이내로 상대적으로 낮은 배상율을 보이고 있다.

당시 사건을 처리한 조정위원장별로 사례를 분석해 보면 6대 위원장이 16.0%로 배상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7대 위원장이 10.6%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 5대 위원장이 4.5%로 가장 낮은 배상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9대 위원장은 배상율이 12.2%로 되어 있으나 당시 처리한 사건이 단 한건에 불과함으로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다 하겠다. 사건처리년도, 피해내용, 사건을 처리한 조정위원장별로 배상신청액 및 배상결정액 현황은 표 4-13과 같다.



표 4-13. 재정사건의 조정신청액 대비 배상액 현황

단위: 건수,천원

구분	내용	처리 건수	조정신청액		배상액		배상율 (%)
			총신청액	1인당 신청액	총배상액	1인당 배상액	
처리년도	2000	33	18,188,969	211,500	936,902	11,426	5.2
	2001	55	17,780,663	110,439	2,709,585	17,595	15.2
	2002	78	45,212,143	208,351	4,085,237	19,735	9.0
	2003	57	25,194,353	139,195	2,720,153	16,288	10.8
	2004	58	27,336,307	154,442	2,380,251	13,759	8.7
피해내용	정신적	155	91,067,819	155,406	9,387,927	14,499	10.3
	건축물+정신적	33	9,295,031	108,082	696,966	8,200	7.5
	축산물	53	22,868,460	362,991	1,410,032	24,311	6.2
	농작물	16	4,290,566	104,648	430,494	14,845	10.0
	건축물	10	2,942,087	101,451	270,071	10,387	9.2
	내륙수산물	5	507,394	101,479	41,838	8,368	8.2
	해양수산물	2	1,204,500	602,250	500,738	250,369	41.6
	기타	7	1,536,578	153,658	94,062	10,451	6.1
조정위원장	5대	26	16,251,110	262,115	736,331	12,695	4.5
	6대	23	7,435,646	101,858	1,190,462	16,308	16.0
	7대	155	71,178,864	156,094	7,511,187	17,550	10.6
	8대	76	38,619,235	170,882	3,366,366	15,372	8.7
	9대	1	227,580	45,516	27,782	5,556	12.2
계		287	133,712,435	164,670	12,832,128	16,388	9.6

주) 기타는 영업손실, 양봉피해 등임.

자료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사례집, 2000-2004

(라) 조정결과에 대한 승복율 분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처리한 재정처리사건의 승복율을 분석해 보면 평균 67.3%에 이른다.

사건처리년도별로는 2000년에 80.0%로 매우 높은 승복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63.0% 내지 65.3%로 평균치 이하의 낮은 승복율을 보이고 있다. 이후 2004년에 들어와서는 69.9%로서 다소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분쟁이 발생한 지역을 16개 시도로 나누어 보면 대전, 울산, 강원, 경상북도가 80%이상의 높은 승복율을 나타내고 있고, 부산이 42.9%로서 가장 낮은 승복율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수를 1-5인, 6-10인, 11-15인, 16-20인, 21인 이상으로 나누어 보면, 피해자의 수가 11-15인 일 때 승복율이 94.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6-10인 일 때 79.2%, 1-5인 일 때 73.2%로써 피해자의 수가 적어질수록 승복율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수가 11-1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승복율이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해자의 수를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해자의 수가 3개인 경우가 승복율이 61.3%로 가장 낮다. 이 가해자의 수가 3개인 경우를 기준으로 가해자의 수가 점점 적어지거나 많아질수록 승복율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피해자의 업종을 양식업, 축산업, 농업, 주민, 양봉업, 그리고 요식업, 숙박업, 제조업, 차량정비업 등의 기타업종으로 구분해서 보면, 양봉업을 하는 피해자가 100%로 가장 높은 승복율을 보이고 있으나 처리사건수가 4건

에 불과함으로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농업이 83.3%이고, 요식업, 숙박업, 제조업, 차량정비업 등의 기타업종이 79.2%로 비교적 높은 승복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 양식업, 축산업 및 주민은 63.6% 내지 65.2%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승복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해자의 업종을 건설업, 공기업, 관공서, 관공서+공기업+건설업, 관공서+제조업, 그리고 제조업, 종교시설, 유흥업, 발전소, 주유소 등의 기타업종 등 7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승복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88.9%, 종교시설, 유흥업, 발전소, 주유소 등의 기타업종이 85.0%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업종들은 최저 57.1%에서 최고 68.3%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승복율을 보이고 있다.

사건처리기간을 1-3개월, 4-6개월, 7-9개월, 10개월 이상 등 4개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7-9개월 사이에 처리한 사건의 승복율이 70.8%로 가장 높았다. 그 외의 구간에서 처리한 사건은 61.5% 내지 66.1%로써 비교적 낮은 승복율을 보이고 있다.

오염원에서 피해지점까지의 이격거리를 1-20m, 21-40m, 41-60m, 61-80m, 81-100m, 101m이상 등 6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격거리가 41-60m는 72.2%, 81-100m는 75.0%, 101m이상은 74.6%로써 비교적 높은 승복율을 보이고 있으나, 반면에 61-80m는 53.3%로써 가장 낮은 승복율을 나타내고 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관공서에 제기한 민원회수를 0회 내지 5회 이상까지 6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민원을 제기한 실적이 없는 사건이 71.5%로써 승복율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민원제기회수가 1회인 경우가 68.0%의 승복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는 민원제기 회수와 관계없이

52.4%에서 64.4%의 낮은 승복율을 나타내고 있다.

피해기간을 1-6개월, 7-12개월, 13-18개월, 19-24개월, 25개월 이상 등 6개월 간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피해기간이 1-6개월인 경우가 71.7%로써 가장 높고, 그 외에는 피해기간과 관계없이 53.9%에서 64.3%까지의 낮은 승복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각 처리된 사건이 의외로 83.6%의 높은 승복률을 보이고 있다.

피해원인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리고 기름유출, 실내대기, 폐기물오염, 일조권, 층간소음 등의 기타원인으로 분류하여 승복율을 살펴보면 대기오염피해가 82.8%, 수질오염 피해가 83.3%로써 높은 승복율을 나타낸 반면에 소음·진동피해와 기름유출, 실내대기, 폐기물오염, 일조권, 층간소음 등이 원인이 되는 기타 피해는 64.3%에서 65.2%로 상대적으로 낮은 승복율을 보이고 있다.

피해내용을 정신적 피해,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 축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건축물 피해, 내륙수산물 피해, 해양수산물 피해, 그리고 영업손실, 양봉피해 등에 의한 기타피해로 구분하여 승복율을 살펴보면 농작물 피해가 81.3%, 건축물 피해가 80.0%, 영업손실, 양봉피해 등에 의한 기타피해가 80.0%로 높게 나와 있으며, 다음으로 건축물과 정신적 피해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피해가 72.7%, 내륙수산물 피해가 71.4%로 나타나 있다. 그 외에 정신적 피해, 축산물 피해, 해양수산물 피해는 50.0% 내지 63.6%로 상대적으로 낮은 승복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도 예상외로 83.6%의 높은 승복율을 나타내고 있다.

배상인수를 1-5인, 6-10인, 11-15인, 16-20인, 21인 이상 등 5개 범주로

나누어 승복율을 보면 배상인수가 11-15인인 경우가 94.1%로 가장 높게 나와 있다. 그 다음으로 1-5인이 71.4%, 6-10인이 73.3%를 나타내고 있으며, 배상인수가 16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배상인수가 많아질수록 승복율은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각된 사건도 예상외로 83.6%의 높은 승복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정위원장의 재임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5대 위원장(1998.5.23-2000.7.31)이 78.1%로 승복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8대 위원장(2003.6.4-2004.12.30)이 70.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는 6대 위원장(2000.8.17-2001.3.1)과 7대 위원장(2001.3.6-2003.5.23)은 57.7%에서 64.8%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승복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9대 위원장(2004.12.30-현재)은 승복율이 100%로 나와 있으나 조사기간중에 처리한 사건이 단 1건에 불과함으로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용한 것은 전체 처리건수 342건의 67.3%에 해당하는 230건이다. 이 승복율을 볼 때 당사자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의 32.7%의 사건 당사자가 조정결과에 불복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아직도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처리년도, 분쟁발생지역, 피해자의 수, 가해자의 수, 피해자의 업종, 가해자의 업종, 처리기간, 오염원과 피해지점간의 이격거리, 관공서 민원 제기회수, 피해기간, 피해원인, 피해내용, 배상인의 수, 조정위원장별로 처리한 사건의 승복 및 불복현황은 표 4-14와 같다.

표 4-14. 조정결과에 대한 승복 및 불복현황

단위: 건수, (%)

구분	내용	처리건수	효력확정	
			승복건수	불복건수
사건처리년도	2000	40	32(80.0)	82(20.0)
	2001	62	40(64.5)	22(35.5)
	2002	92	58(63.0)	34(37.0)
	2003	75	49(65.3)	26(34.7)
	2004	73	51(69.9)	22(30.1)
분쟁발생지역	서울	86	54(62.8)	32(37.2)
	부산	14	6(42.9)	8(57.1)
	대구	4	2(50.0)	2(50.0)
	인천	15	9(60.0)	6(40.0)
	광주	3	2(66.7)	1(33.3)
	대전	10	8(80.0)	2(20.0)
	울산	10	8(80.0)	2(20.0)
	경기	75	48(64.0)	27(36.0)
	강원	17	14(82.4)	3(17.6)
	충북	14	11(78.6)	3(21.4)
	충남	15	10(66.7)	5(33.3)
	전북	16	11(68.8)	5(31.2)
	전남	26	17(65.4)	9(34.6)
	경북	23	19(82.6)	4(17.4)
	경남	14	11(78.6)	3(21.4)
	제주	-	-	-
피해자의 수	1-5인	168	123(73.2)	45(26.8)
	6-10인	24	19(79.2)	5(20.8)
	11-15인	18	17(94.4)	1(5.6)
	16-20인	6	4(66.7)	2(33.3)
	21인 이상	126	67(53.2)	59(46.8)

구분	내용	처리건수	효력확정	
			승복건수	불복건수
가해자의 수	1개	187	129(69.0)	58(31.0)
	2개	98	63(64.3)	35(35.7)
	3개	31	19(61.3)	12(38.7)
	4개	11	8(72.7)	3(27.3)
	5개 이상	15	11(73.3)	4(26.7)
피해자의 업종	양식업	14	9(64.3)	5(35.7)
	축산업	55	35(63.6)	20(36.4)
	농업	18	15(83.3)	3(16.7)
	주민	227	148(65.2)	79(34.8)
	양봉업	4	4(100.0)	-
	기타 <sup>(1)</sup>	24	19(79.2)	5(20.8)
가해자의 업종	건설업	167	114(68.3)	53(31.7)
	공기업	14	8(57.1)	6(42.9)
	관공서	24	15(62.5)	9(37.5)
	관공서+공기업+ 건설업	83	48(57.8)	35(42.2)
	관공서+제조업	7	4(57.1)	3(42.9)
	제조업	27	24(88.9)	3(11.1)
	기타 <sup>(2)</sup>	20	17(85.0)	3(15.0)
처리기간	1-3개월	95	62(65.3)	33(34.7)
	4-6개월	121	80(66.1)	41(33.9)
	7-9개월	113	80(70.8)	33(29.2)
	10개월 이상	13	8(61.5)	5(38.5)
이격거리	1-20m	174	113(64.9)	61(35.1)
	21-40m	52	34(65.4)	18(34.6)
	41-60m	18	13(72.2)	5(27.8)
	61-80m	15	8(53.3)	7(46.7)
	81-100m	16	12(75.0)	4(25.0)
	101m 이상	67	50(74.6)	17(25.4)

구분	내용	처리건수	효력확정	
			승복건수	불복건수
민원제기회수	0회	144	103(71.5)	41(28.5)
	1회	97	66(68.0)	31(32.0)
	2회	45	29(64.4)	16(35.6)
	3회	24	14(58.3)	10(41.7)
	4회	11	7(63.6)	4(36.4)
	5회 이상	21	11(52.4)	10(47.6)
피해기간	0개월(기각)	55	46(83.6)	9(16.4)
	1-6개월	113	81(71.7)	32(28.3)
	7-12개월	76	41(53.9)	35(46.1)
	13-18개월	27	17(63.0)	10(37.0)
	19-24개월	15	9(60.0)	6(40.0)
	25개월 이상	56	36(64.3)	20(35.7)
피해원인	소음·진동	287	187(65.2)	100(34.8)
	대기오염	29	24(82.8)	5(17.2)
	수질오염	12	10(83.3)	2(16.7)
	기타 <sup>(3)</sup>	14	9(64.3)	5(35.7)
피해내용	기각	55	46(83.6)	9(16.4)
	정신적	159	95(59.7)	64(40.3)
	건축물+정신적	33	24(72.7)	9(27.3)
	축산물	55	35(63.6)	20(36.4)
	농작물	16	13(81.3)	3(18.7)
	건축물	10	8(80.0)	2(20.0)
	내륙수산물	7	5(71.4)	2(28.6)
	해양수산물	2	1(50.0)	1(50.0)
기타 <sup>(4)</sup>	5	4(80.0)	1(20.0)	
배상인의 수	0인(기각)	55	46(83.6)	9(16.4)
	1-5인	140	100(71.4)	40(28.6)
	6-10인	15	11(73.3)	4(26.7)
	11-15인	17	16(94.1)	1(5.9)
	16-20인	3	2(66.7)	1(33.3)
	21인 이상	112	55(49.1)	57(50.9)



구분	내용	처리건수	효력확정	
			승복건수	불복건수
조정위원장	5대	32	25(78.1)	7(21.9)
	6대	26	15(57.7)	11(42.3)
	7대	179	116(64.8)	63(35.2)
	8대	104	73(70.2)	31(29.8)
	9대	1	1(100.0)	-
계		342	230(67.3)	112(32.7)

- 주) 1. 기타<sup>(1)</sup>는 요식업, 숙박업, 제조업, 차량정비업 등임.  
 2. 기타<sup>(2)</sup>는 종교시설, 유흥업, 발전소, 주유소 등임.  
 3. 기타<sup>(3)</sup>는 기름유출, 실내대기, 폐기물오염, 일조권, 층간소음 등임.  
 4. 기타<sup>(4)</sup>는 영업손실, 양봉피해 등임.

자료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사례집, 2000-2004

#### (마) 당사자별 불복현황 분석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간 조정결과에 불복한 재정처리건수는 총 112건이다. 이중 가해자가 불복한 사건은 81건으로 전체의 72.3%를 차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불복한 사건은 31건으로 27.7%를 차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가해자의 경우는 2002년에 79.4%, 2003년에는 80.8%의 높은 불복율을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는 2000년에 50.0%, 2001년에 31.8%, 2004년에는 36.4%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복율을 나타내었다.

승복율이 100%가 되지 아니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게 엄밀한 과학적인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 인과관계의 개연성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사실만을 주장하고 있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식차이가 너무나 크다. 또 가해자는 대외적으로 명분을 찾거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복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엇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배상액 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배상액의 산정과 타협방안을 모색하는 할 수 있는 전문분야별 전담심사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분쟁의 경우 장기간의 경과에 따른 오염원인의 변경·소멸 등으로 인과관계의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를 준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전문적인 조사·분석 없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환경분쟁사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사실조사,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피해조사를 위해서는 담당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가 어떤 오염물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피해를 주었는지 등 현지조사 결과가 피해액 산정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절차가 조정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등 전문분야의 지식을 갖춘 심사인력의 확보는 조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임에도 이러한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환경피해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전문분야의 지식과 상식을 갖춘 심사관 및 전문가 등 인력 육성이 가능한 인사제도의 운영과 자격요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사건 당사자별 불복현황은 표 4-15과 같다.

표 4-15. 당사자별 불복현황

단위: 건수,(%)

연도	불복건수	불복율	
		피해자	가해자
2000	8	4(50.0)	4(50.0)
2001	22	7(31.8)	15(68.2)
2002	34	7(20.6)	27(79.4)
2003	26	5(19.2)	21(80.8)
2004	22	8(36.4)	14(63.6)
계	112	31(27.7)	81(72.3)

자료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통계, 2005

(바) 통계프로그램에 의한 조정사건 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모형은 18개 독립변수와 2인자 교호작용효과를 포함하였으며, 단계별 전진선택법(진입시 유의수준=5%, 제거시 유의수준=10%)을 이용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에 선택된 독립변수는 가해자의 업종, 조정신청액, 배상액, 배상인의 수이며, 가능도비 검정 결과는 표 4-16과 같다. 이 분석결과에 대한 적합도는 전체 분류정확도가 70.4%이고, Nagelkerke의 결정계수  $R^2$ 이 0.350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이 당사자의 불복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합도가 다소 낮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6. 최종모형의 가능도비 검정결과

독립변수	축소모형의 -2 Log 우도	X <sup>2</sup>	자유도	p-value
절편	383.6	0	0	
가해자의 업종	397.2	13.5	6	0.035
조정신청액	399.4	15.8	6	0.015
배상액	399.7	16.1	6	0.013
배상인의 수	404.6	21.0	6	0.002

Nagelkerke R<sup>2</sup>=0.350

표 4-17 및 표 4-18는 최종모형에 대한 모수추정 결과로 가해자 불복인 경우와 피해자 불복인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이 결과는 승복을 기준으로 가해자 불복과 피해자 불복에 대하여 회귀계수를 각각 추정한 것이며, 독립변수에서 기준범주는 마지막 범주를 기준으로 하였다.

첫째, 가해자 불복의 경우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가해자의 업종이 관공서나 공기업인 경우가 기타업종(관공서, 공기업, 건설업 제외)에 비하여 7.468배의 높은 불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건설업이 포함된 관공서나 공기업인 경우도 6.539배의 불복을 보였다. 가해자의 업종이 건설업만인 경우는 기타업종과 비교하여 3.646배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② 조정신청액에서는 5억원 이상인 경우와 5천만-2억원 미만, 2억-5억원 미만인 경우가 비슷한 불복을 보이고 있으며,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918배로 다소 높은 불복을 보였다. ③ 배상액에서는 5천만원 미만의 3개 범주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불복을 보였다. 즉 5천만원 이상인 사건에서 많은 불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④ 배상인의 수에서는 30인 이하의 범주에서 비슷한 불복을 보이고 있으며, 31인 이상인 사건에 비해 낮은 불복을 보이고 있다. 즉 31

인 이상인 사건에서 불복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4-17. 가해자 불복인 경우의 최종모형에 대한 모수추정 결과

변수	범주	회귀계수	표준오차	p-value	Exp(B)
가해자의 업종	건설업	1.294	0.799	0.105	3.646
	관공서+공기업	2.011	0.864	0.020	7.468
	건설업+관공서+공기업	1.878	0.818	0.022	6.539
	기타	0	.	.	.
조정신청액	5천만원 미만	1.071	0.584	0.067	2.918
	5천만-2억원 미만	-0.102	0.470	0.827	0.903
	2억-5억원 미만	0.224	0.481	0.642	1.251
	5억원 이상	0	.	.	.
배상액	5백만원 미만	-1.944	0.609	0.001	0.143
	5백만-2천만원 미만	-1.696	0.510	0.001	0.183
	2천만-5천만원 미만	-1.080	0.436	0.013	0.340
	5천만원 이상	0	.	.	.
배상인의 수	1인	-0.794	0.465	0.088	0.452
	2-5인	-1.281	0.507	0.012	0.278
	6-30인	-1.527	0.596	0.010	0.217
	31인 이상	0	.	.	.

둘째, 피해자 불복의 경우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가해자의 업종이 관공서나 공기업인 경우가 기타업종(관공서, 공기업, 건설업 제외)에 비하여 8.042배의 불복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이 포함된 관공서나 공기업인 경우도 이와 비슷한 8.218배의 불복을 보였다. 가해자 업종이 건설업만인 경우는 기타업종과 비교해 3.386배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② 조정신청액에서는 5억원 이상인 경우와 2억-5억원 미만인 경우가 비슷한 불복을 보였으며, 5억원 이상인 경우와 비교하여 5천만

-2억원 미만인 경우가 0.198배로 낮은 불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5천만원 미만인 사건인 경우는 0.461배로 낮은 불복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③ 배상액에서는 5천만원 이상인 사건에 비해 2천만-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0.477배로 낮은 불복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으며, 2천만원 미만인 사건에서는 낮은 불복을 보여주고 있다. 즉 2천만원 이상인 사건에서 많은 불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배상인의 수에서는 31인 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30인 이하인 경우에서 대체로 높은 불복을 보였으나 2-5인인 경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6-30인의 경우 5.922배, 1인의 경우에는 7.316배로 높은 불복을 보였다.

표 4-18. 피해자 불복인 경우의 최종모형에 대한 모수추정 결과

변수	범주	회귀계수	표준오차	p-value	Exp(B)
가해자의 업종	건설업	1.220	1.150	0.289	3.386
	관공서+공기업	2.085	1.230	0.090	8.042
	건설업+관공서+공기업	2.106	1.148	0.067	8.218
	기타	0	.	.	.
조정신청액	5천만원 미만	-0.775	0.881	0.379	0.461
	5천만-2억원 미만	-1.620	0.813	0.046	0.198
	2억-5억원 미만	0.426	0.642	0.507	1.532
	5억원 이상	0	.	.	.
배상액	5백만원 미만	-1.535	0.882	0.082	0.216
	5백만-2천만원 미만	-1.600	0.811	0.049	0.202
	2천만-5천만원 미만	-0.740	0.723	0.306	0.477
	5천만원 이상	0	.	.	.
배상인의 수	1인	1.990	0.856	0.020	7.316
	2-5인	1.208	0.888	0.174	3.346
	6-30인	1.779	0.924	0.054	5.922
	31인 이상	0	.	.	.

### (3) 불복사건의 민사소송결과 분석

#### (가) 불복사건의 민사소송 현황

조정결과에 불복한 사례(112건) 중 72(64.3%)건은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종결되었다. 16건(14.3%)은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소송을 취하 하였으며, 25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민사소송으로 종결된 72건 중 판결은 25건, 조정은 31건, 화해는 16건이다. 민사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됨으로 1심판결을 기준으로 판결건수를 집계하였다. 때문에 일부 사건은 현재 상급심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있다. 불복사건의 민사소송 현황은 표 4-19과 같다.

표 4-19. 불복사건의 민사소송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불복 건수	민사소송결과				소송취하	진행중
		1심판결	조정	화해	계		
2000	8	-	5	1	6	2	-
2001	22	5	8	3	16	5	1
2002	34	11	8	9	28	3	3
2003	26	5	6	2	13	4	9
2004	22	4	4	1	9	1	12
계	112	25	31	16	72	15	25

자료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통계, 2005

#### (나) 소송제기자별 민사소송결과

조정결정에 불복한 사건이 가해자 또는 피해가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였는지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단, 배상항목에는 1심판결 건수, 조정건수, 화해건수를 포함하였다. 가해자가 민사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면 원고승소 판결을 하고, 이유가 없다면 기각 판결을 한다. 그동안 가해자가 승소한 것은 11.1%이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 배상금 수준이나 그 금액을 가감하여 판결한 것이 88.9%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각한 사건을 법원에서는 80.0%를 기각처리 하였고, 20.0%만을 배상 결정 하였다. 둘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16.7%를 기각하였고, 83.3%를 배상결정 하였다. 소송제기자별 민사소송결과는 표 4-20와 같다.

표 4-20. 소송제기자별 민사소송결과

단위: 건수,(%)

소송제기자	조정결정	민사소송결과			
		기각	원고승소	배상	계
가해자	배상	-	6(11.1)	48(88.9)	54(100.0)
	기각	4(80.0)	-	1(20.0)	5(100.0)
피해자	배상	2(16.7)	-	10(83.3)	12(100.0)
	계	6(35.3)	-	11(64.7)	17(100.0)
계	기각	4(80.0)	-	1(20.0)	5(100.0)
	배상	2 (3.0)	6 (8.9)	59(88.1)	67(100.0)
	계	6 (8.3)	6 (8.3)	60(83.4)	72(100.0)

주) 민사소송결과는 1심판결, 조정, 화해의 건수를 합한 것임

자료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통계, 2005



(다) 피해내용별 배상액 대비 민사소송결과

피해내용을 정신적 피해, 건축물+정신적 피해, 축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내륙수산물 피해, 영업손실 피해로 나누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액과 법원에서 결정한 손해배상액을 비교하여 보았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손해배상액은 평균적으로 배상액의 88%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축산물 피해의 경우를 보면 모두 12건이 소송이 제기 되었는데 법원은 배상액보다 무려 225.3%나 많게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영업손실 피해의 경우는 배상액과 같게 결정을 하였다. 그 외에 건축물+정신적 피해는 89.1%, 정신적 피해는 72.8% 수준에서 결정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는 30.9%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작물 피해는 모두 구조물의 일조방해에 의한 작물 피해로 인과관계 규명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2003. 6월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일조방해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내용별 배상액 및 법원의 손해배상액 현황은 표 4-21와 같다.

표 4-21. 피해내용별 배상액 및 법원의 손해배상액 현황

단위: 천원,(%)

피해내용	건수	배상액	손해배상액	비율(%)
정신적	35	3,169,115	2,308,563	72.8
건축물+정신적	14	1,131,319	1,007,849	89.1
축산물	12	346,620	780,847	225.3
농작물	2	8,735	2,700	30.9
내륙수산물	1	6,075	0	0
영업손실	2	15,650	15,650	100.0
계	66	4,677,514	4,115,609	88.0

주) 손해배상액에는 1심판결, 조정, 화해의 금액을 합한 것임

(라) 배상액 대비 법원의 손해배상액 결정을 분포

배상액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액 결정을 25%간격으로 8단계로 구분하고, 200% 초과 항목을 추가하여 손해배상액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손해배상액은 소송건수의 36.4%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액의 76%와 100%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송건수의 19.7%는 배상액의 51%와 75%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배상액의 200%이상에서 결정되는 것도 13.6%에 이르고 있다. 배상액 대비 법원의 손해배상액 결정을 분포는 표 4-22과 같다.

표 4-22. 배상액 대비 법원의 손해배상액 결정을 분포

단위: 건수,(%)

구분	계	배상액 대비 법원의 손해배상액 결정율								
		25% 이하	50%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25% 이하	150% 이하	175% 이하	200% 이하	200% 초과
건수	66	8	8	13	24	3	1	-	-	9
비율	100.0	12.1	12.1	19.7	36.4	4.6	1.5	-	-	13.6

(4) 주요 조정사건의 질적(質的) 분석

현행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사례 중에서 그 의미가 큰 사건에 대하여 질적 분석을 하였다. 다음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 사례와, 철도소음 피해사례, 그리고 고속도로 소음피해 사례에 대하여 질적 분석을 해 보았다.

(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건물 보수 및 정신적 피해

경기도 어느 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타 아파트에 비해서 세대간, 상·하층 간의 소음이 매우 심해서 몸이 쇠약한 노년층, 임산부, 유·소아 등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에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소음을 발생시킨 위층에 거주하는 입주민과 아파트 건축업체를 상대로 건물보수와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아래층 거주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위층소음이 실제로는 2-3층 윗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벽과 바닥을 타고 전달되어 바로 위층에서 나는 것처럼 들리는 고체전달음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윗집과 옆집의 소음 전달정도가 훨씬 심각하였다. 그리고 한국산업규격(KS F 2810-2812)에 의한 바닥충격음 측정결과도 수인의 한도[경량충격음 58dB(A), 중량충격음 50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바닥충격음 측정 장면

따라서 위원회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조제3항은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2001.12) 보고서에서 중량충격음은 50dB(A), 경량충격음은 58dB(A)로 제시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기준을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규제기준으로 2003. 4. 22. 제14조제3항을 개정하여 공포했으므로 위원회도 이 기준을 바닥충격음 수인의 한도와 하자보수비용의 산출근거로 준용하였다.

건축업체가 건축하여 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건축주는 분양계약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과 기술적 제약 아래서 입주자가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소음이 적절한 수준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면 건축주가 담보책임을 져야하는 하자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인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건축업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및 제671조에 따라 소음차단을 위한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건축업체는 아파트를 소유한 66세대에게 차음보수비 명목으로 1억6천8백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례는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제3항에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

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는 추상적인 규정만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건축한 건축주에게 입주민들이 입은 소음피해에 대해서 차음보수비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건축업계로부터 법을 소급적용했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지만 환경분쟁조정이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치만을 적용해서 피해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문헌이나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각종 기준치도 하나의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조정결정에는 큰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은 이 조정결정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관련규정을 앞당겨 정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차음재를 반드시 보강하여 경량충격음 58dB(A), 중량충격음 50dB(A)이하로 아파트가 건축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아파트의 품질이 한 단계 향상됨은 물론 소음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나) 지하철 곡선구간 철도소음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서울시 소재 어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하철 곡선구간에서 발생하는 철로 마찰음 때문에 112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집값이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많이 떨어지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냈다.

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당-상계역간의 지하철 4호선은 1984. 9. 12.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고속철도로 결정 고시한 후 1985. 3. 28. 서울시지하철공사가 건설하여 같은 해 4월부터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93. 4. 30. 상계역에서 518m 나와 있는 유치선을 연장시켜 현재 당고개

역까지 운행하고 있다. 4호선은 오전5시부터 익일 오전1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상계-당고개역 구간의 1일 운행횟수는 431회이고, 2002년 상계역과 당고개역의 이용객은 1일 평균 50,834명이었다.

그동안 서울시지하철공사는 철도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1985. 3월 도상하부에 방진매트를 부설하였고 2m 높이의 스펀콘크리트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1993. 4월 곡선구간에 레일유도기를 설치하였고, 1994. 9월에는 상계역 전방에 있던 분기기를 철거하였다. 1996. 12월에는 레일 연마차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며, 1999. 6월부터 12월까지 곡선레일 장대화 기술용역을 추진하여, 2001. 8월부터 2002. 6월 사이에 레일 장대화 및 중량화 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1. 10월부터 곡선구간의 열차운행 속도를 30km/hr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2002. 9월에는 마찰소음 저감장치를 설치하였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는 대지 22,475m<sup>2</sup>에 25평형 405세대, 32평형 270세대 총 675세대로써 15층 건물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6. 12. 12. 상계지구재개발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아 1989. 8. 14. ○○산업(주)가 시공하였다.

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측정한 지하철의 소음도가 101동 및 102동 9-15호라인의 4층이상은 야간 철도소음한도를 모두 초과하였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 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이 70dB(A)를 넘을 때에는 사람의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며, 60dB(A)를 초과하면 수면장애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소음진동규제법의 야간 철도소음한도 65dB(A)를 초과한 101동 및 102동 9-15호라인의 4층이상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

정하였다.



그림 4. 전철 소음피해 발생 현장

또한 위원회는 서울시지하철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독립법인으로서 동조례 제14조에 따라 지하철 4호선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지하철소음이 철도소음한도를 초과할 경우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동안 레일 장대화, 운행속도 제한, 마찰소음 저감장치 설치 등 소음저감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해 온 점은 인정이 되나, 결과적으로 방음대책이 미흡하여 101동 및 102동 9-15호라인의 4층이상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758조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배상액은 지하철의 소음도, 피해기간(재정신청서 접수일(2002. 9. 16)로부터 3년 이전의 피해기간은 시효가 소멸되어 배상대상에서 제외하고, 1999. 9. 16. 이후의 거주기간), 유사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주민들이 건축주(재건축조합의 조합원)로서 1986. 12월 분쟁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1989. 8월 완공할 때까지 이미 운행 중인 지하철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지하철 소음 피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입주한 책임이 일부 있다며 산출한 배상금중 30%를 과실상계 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하였다.

이 사례는 어떤 시설이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를 보았을 때 피해자가 정당히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동안 피해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피해배상액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이미 운행 중인 지하철 소음에 대하여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이중창을 한다거나 하는 대책은 전혀 세우지도 않고,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시지하철공사에게만 책임을 다 묻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도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소음 피해

경기도의 어느 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46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그동안 차량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더욱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이 환경기준치인 주간 65dB, 야간 55dB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에도 고속도로를 건설한 한국도로공사와 상동택지개발사업을 주도한 한국토지공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두 기관을 상대로 5억800만원의 피해배상과 터널식방음벽 설치 등 완벽한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냈다.



그림 5. 고속도로 소음피해 발생 현장

분쟁지역은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는 왕복 8차선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송내I.C에서 서운I.C 사이에 위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는 약 46m 떨어져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1990. 7월-1991.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1990. 12월-1992. 8월 부천고가교 구간 실시설계를

하여 1998. 7. 27. 준공, 개통하였다. 고속도로는 폭 36.8m, 왕복 8차선의 13m 높이의 고가교 형태로써 도로변에는 3-4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교통량은 도로교통량통계연보(건설교통부, 2001)에 의하면 중동IC와 서운IC 구간의 경우 일일 164,702대가 통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상동택지개발지구는 1994. 12. 10.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한국토지공사가 1998. 3. 19.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1998. 12. 9.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상동택지개발사업은 3,118천㎡(943천평)의 부지에 주택 17,132호를 건설하여 51,396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1997. 8. 27. 공사를 시작하여 2003. 3. 31. 준공하였다. 상동지구내의 전체 세대수는 15,320세대이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세대는 7,844세대이고, 2002. 4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2,040세대가 입주하였다.

위원회에서 도로소음을 측정한 것을 보면 고속도로보다 높은 8층 이상은 주간 66-73dB(A), 야간 66-74dB(A)이고, 한국토지공사의 용역결과 10층 이상이 주간 69.1-73.9dB(A), 야간 70.1-75.1dB(A)로서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환경기준 [주간 65dB(A), 야간 55dB(A)] 를 모두 초과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 따르면 60dB(A)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될 경우 수면장애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와 위원회의 조정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야간에도 주간 소음환경기준 65dB(A)를 초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1991. 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도로소음 방지대책 시행 후의 소음도를 야간

53.0-53.4dB(A)로 제시하였고, 한국토지공사도 1998. 3월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음방지대책 시행 후의 소음도를 주간 62.8dB(A), 야간 53.7dB(A)로 제시하는 등 고속도로와 택지의 소음도를 모두 환경기준이하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택지를 개발하였으나, 실제의 소음도는 아파트 8층 이상에서 주·야간 모두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였다.

그리하여 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758조, 제760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등을 위반하여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준 사실과 2001. 11월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소음방지대책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가중시킨 점이 인정되고, 한국토지공사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760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등을 위반하여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준 사실과 한국도로공사의 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가중시킨 점이 인정되므로 두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민 508명(508세대) 중 야간소음도가 65dB(A)을 초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292명(292세대)에게 배상하도록 하되 배상액은 야간소음도 65-69dB(A), 70-74dB(A)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배상사례를 고려하여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모두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소음도를 환경기준이하로 유지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01. 11월 두 기관간의 도로소음 저감대책에 따른 협약체결 시 용역비 분담비율을 50%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각 50%씩 분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음방지대책 시행 후 고속도로와 택지의 소음도를 모두 환경기준이하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두 기관은 연대하여 방음대책을 강구하되, 이에 따른 공사비용은 2001. 11월에 체결한 협약서의 용역비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례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오염저감대책들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다.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 좀더 실효성 있는 오염저감대책이 마련되고 강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 **2. 일본의 공해분쟁처리현황 분석**

### **가. 일본의 공해분쟁처리현황**

1970년 「공해분쟁처리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분쟁처리건수가 많이 누적되어 있으므로, 「공해분쟁처리법」시행 이후의 분쟁처리현황을 살펴보았다.

「공해분쟁처리법」에 의한 공해분쟁처리기구로서, 중앙에는 공해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도도부현에는 도도부현심사회를 설치하고 있다.

공해등조정위원회는 우리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도도부현심사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구이다.

### (1) 공해등조정위원회

표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건접수 및 처리실적을 보면 총 770건이 접수되어 759건이 처리되었고 11건이 처리가 진행중에 있다. 조정(調整)종류별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조정(調停)이 699건으로 92.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재정이 54건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알선 3건, 중재 1건, 기타 2건이다.

재정처리 사건(54건)중 원인재정은 11건으로 20.4%를 차지하고, 책임재정은 43건으로 79.6%를 차지하고 있다. 의무이행권고 사건은 2건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2) 도도부현공해심사회

#### (가) 공해분쟁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

표 4-24에서 보면 1970년부터 2004년까지 1,059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조정(調停)이 1,008건으로 95.2%를 차지하고, 알선이 36건으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중재 4건, 기타가 1건이다.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접수건수(1,059건)중 1,017건을 처리하여 96.0%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처리내역으로는 조정성립이 451건으로 44.3%를 차지하고 조정이 결렬된 건수가 428건으로 42.1%를 점유하고 있다. 그 외에 자진취하가 11건으로 10.9%이며, 기타가 27건으로 되어 있다.

표 4-23. 공해등조정위원회의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건수

연도	알선			조정			중재			재정			기타			계			
	접수	종결	미결	접수	종결	미결	접수	종결	미결	접수	종결	미결	접수	종결	미결	계속	신규접수	종결	미결
1970,71	0	0	0	8	1	7	0	0	0	0	0	0	0	0	0	8	8	1	7
1972	0	0	0	14	2	19	0	0	0	0	0	0	0	0	0	21	4	2	19
1973	0	0	0	36	8	47	0	0	0	0	0	0	0	0	0	55	36	8	47
1974	0	0	0	20	26	41	0	0	0	6	2	4	0	0	0	73	26	28	45
1975	0	0	0	45	22	64	1	0	1	2(1)	1	5(1)	0	0	0	93	48	23	70
1976	0	0	0	55	43	76	0	1	0	2	3(1)	4	0	0	0	127	57	47	80
1977	0	0	0	62	33	105	0	0	0	0	2	2	0	0	0	142	62	35	107
1978	0	0	0	42	89	58	0	0	0	1(1)	2	1(1)	0	0	0	150	43	91	59
1979	0	0	0	48	36	70	0	0	0	0	0	1(1)	0	0	0	107	48	36	71
1980	0	0	0	34	49	55	0	0	0	1	1(1)	1	0	0	0	106	35	50	56
1981	0	0	0	45	33	67	0	0	0	0	0	1	0	0	0	101	45	33	68
1982	0	0	0	48	40	75	0	0	0	1(1)	0	2(1)	0	0	0	117	49	40	77
1983	0	0	0	42	46	71	0	0	0	0	1	1(1)	0	0	0	119	42	47	72
1984	0	0	0	31	40	62	0	0	0	0	0	1(1)	0	0	0	103	31	40	63
1985	0	0	0	31	38	55	0	0	0	1	1	1(1)	0	0	0	95	32	39	56
1986	0	0	0	31	61	25	0	0	0	1	0	2(1)	1	0	1	89	33	61	28
1987	0	0	0	25	29	21	0	0	0	3	0	5(1)	0	0	1	56	28	29	27
1988	0	0	0	14	22	13	0	0	0	1(1)	6(2)	0	0	0	1	42	15	28	14
1989	0	0	0	11	18	6	0	0	0	0	0	0	0	0	1	25	11	18	7
1990	0	0	0	21	14	13	0	0	0	2(1)	1(1)	1	0	1	0	30	23	16	14
1991	0	0	0	5	16	2	0	0	0	1(1)	2(1)	0	0	0	0	20	6	18	2
1992	0	0	0	3	1	4	0	0	0	3	0	3	0	0	0	8	6	1	7
1993	0	0	0	10	5	9	0	0	0	2	0	5	0	0	0	19	12	5	14
1994	1	1	0	2	4	7	0	0	0	2	0	7	0	0	0	19	5	5	14
1995	0	0	0	2	2	7	0	0	0	0	0	7	0	0	0	16	2	2	14
1996	0	0	0	4	4	7	0	0	0	6(1)	0	13(1)	0	0	0	24	10	4	20
1997	0	0	0	1	2	6	0	0	0	4(1)	0	17(2)	1	0	1	26	6	2	24
1998	0	0	0	1	1	6	0	0	0	1(1)	15(1)	3(2)	0	1	0	26	2	17	9
1999	0	0	0	1	1	6	0	0	0	3	3(1)	3(1)	0	0	0	13	4	4	9
2000	0	0	0	2	5	3	0	0	0	2	1	4(1)	0	0	0	13	4	6	7
2001	0	0	0	3	3	3	0	0	0	3	1	6(1)	0	0	0	13	6	4	9
2002	1	0	1	2	1	4	0	0	0	4(2)	5(1)	5(2)	0	0	0	16	7	6	10
2003	1	2	0	2	2	4	0	0	0	8(4)	4(1)	9(5)	0	0	0	21	11	8	13
2004	0	0	0	0	2	2	0	0	0	3(2)	3(1)	9(6)	0	0	0	16	3	5	11
계	3	3	-	701	699	-	1	1	-	63(17)	54(11)	-	2	2	-	770	759	-	-

주) 1. 『재정』 ( )내의숫자는 원인재정사건수임,

2. 『기타』는 의무이행권고신청사건임

자료원 : 일본 공해등조정위원회, 공해분쟁처리백서, 2004

표 4-24. 도도부현공해심사회의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결
	계	알선	조정	중재	기타	계	성립	결렬	취하	기타	
1970,71	25	8	17	0	0	15	10	2	2	1	10
1972	25	3	20	2	0	14	8	4	1	1	21
1973	30	6	23	1	0	28	19	6	3	0	23
1974	24	4	19	1	0	27	22	5	0	0	20
1975	21	3	18	0	0	22	9	9	4	0	19
1976	22	3	19	0	0	21	12	5	4	0	20
1977	25	1	24	0	0	15	12	1	2	0	30
1978	22	2	20	0	0	21	11	6	4	0	31
1979	22	1	21	0	0	24	12	7	5	0	29
1980	27	0	27	0	0	22	13	8	1	0	34
1981	19	1	18	0	0	21	4	13	4	0	32
1982	15	0	15	0	0	23	13	8	2	0	24
1983	26	0	26	0	0	19	12	5	0	2	31
1984	20	1	19	0	0	24	14	5	5	0	27
1985	29	0	29	0	0	21	11	9	1	0	35
1986	23	0	23	0	0	26	18	6	2	0	32
1987	29	0	28	0	1	28	15	10	1	2	33
1988	28	1	25	0	2	22	11	7	4	0	39
1989	36	0	36	0	0	25	13	6	4	2	50
1990	57	0	57	0	0	40	9	23	5	3	67
1991	43	0	43	0	0	43	15	20	8	0	67
1992	51	0	51	0	0	36	7	22	6	1	82
1993	44	0	44	0	0	53	24	22	5	2	73
1994	32	0	30	0	2	52	16	28	4	4	53
1995	39	0	39	0	0	41	16	19	6	0	51
1996	43	0	42	0	1	36	9	24	1	2	58
1997	51	1	49	0	1	40	14	18	6	2	69
1998	39	1	38	0	0	45	22	17	5	1	63
1999	26	0	25	0	1	36	10	24	2	0	53
2000	31	0	30	0	1	35	13	16	5	1	49
2001	31	0	30	0	1	28	9	18	0	1	52
2002	30	0	30	0	0	35	15	15	4	1	47
2003	33	0	33	0	0	34	15	18	0	1	46
2004	41	0	40	0	1	45	18	22	5	0	42
계	1,059	36	1,008	4	11	1,017	451	428	111	27	-

자료원 : 일본 공해등조정위원회, 공해분쟁처리백서, 2004

(나) 합의사항별 성립건수

표 4-25에서 보면 합의성립건수 중 단지 금전지급 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71건으로 약 15.7%에 불과하다. 금전지급 및 발생원대책이 60건으로 13.3%, 발생원대책으로 처리한 것이 296건으로 65.6%, 기타가 24건으로 5.3%이다.

금전지급 및 발생원대책, 발생원대책으로 처리한 것을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총 처리건수 356건중 조업정지·이전이 38건으로 10.6%, 조업정지·이전, 시설 및 작업방법 개선이 36건으로 10.1%를 점유하고, 시설 및 작업방법 개선, 계획변경이 282건으로 79.3%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5. 도도부현공해심사회 사건의 합의사항별 성립건수

합의사항 연도	발생원대책의 합의내용별 건수								
	계	금전지급	금전지급 및발생원 대책 ①	발생원 대책 ②	기타	합계 ①+②	조업정지 ·이전	조업정지· 이전,시설 작업방법 개선	시설·작 업방법의 개선,계획 변경
1970-72	18	7	4	7	0	11	2	2	7
1973	19	11	3	5	0	8	1	2	5
1974	22	9	1	9	3	10	2	2	6
1975	9	5	3	1	0	4	1	0	3
1976	12	3	3	6	0	9	1	2	6
1977	12	4	2	6	0	8	1	1	6
1978	11	1	1	8	1	9	3	0	6
1979	12	1	3	8	0	11	1	0	10
1980	13	2	2	8	1	10	1	0	9
1981	4	1	0	3	0	3	1	0	2
1982	13	5	0	8	0	8	2	0	6
1983	12	0	0	12	0	12	0	1	11
1984	14	2	4	8	0	12	4	0	8
1985	11	1	0	10	0	10	0	1	9
1986	18	0	4	14	0	18	3	7	8
1987	15	0	3	12	0	15	2	0	13
1988	11	1	0	10	0	10	0	2	8
1989	13	3	2	8	0	10	1	1	8
1990	9	2	0	7	0	7	0	0	7
1991	15	0	1	14	0	15	0	2	13
1992	7	0	2	5	0	7	1	1	5
1993	24	5	7	12	0	19	1	3	15
1994	16	0	1	15	0	16	0	2	14
1995	16	0	0	14	2	14	2	0	12
1996	9	0	1	6	2	7	0	3	4
1997	14	1	1	12	0	13	1	2	10
1998	22	4	0	7	11	7	0	0	7
1999	10	0	0	10	0	10	2	0	8
2000	13	1	2	7	3	9	0	2	7
2001	9	0	3	5	1	8	1	0	7
2002	15	2	3	10	0	13	4	0	9
2003	15	0	2	13	0	15	0	0	15
2004	18	0	2	16	0	18	0	0	18
계	451	71	60	296	24	356	38	36	282

주) 「기타」는 가옥의 매수, 원상회복, 공해방지협정체결 등임.

자료원 : 일본 공해등조정위원회, 공해분쟁처리백서, 2004

(다) 처리기간별 종결건수

표 4-26의 처리기간별 종결건수를 보면 3개월이내 9.6%, 6개월이내 15.2%, 1년이내 29.2%, 1년6개월이내 20.1%, 2년이내 8.7%, 2년초과가 17.2%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처리건수의 74.1%가 1년6개월 이내에 종결되었고, 평균 처리기간은 16.3개월로써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표 4-26. 도도부현공해심사회의 사건 처리기간별 종결건수

단위: 건수

기간 연도	계	3월 이내	6월 이내	1년 이내	1년6월 이내	2년 이내	2년 초과	평균처리 기간(월)
1970-72	29	10	8	6	4	1	0	6.7
1973	28	4	5	14	5	0	0	7.5
1974	27	2	3	11	9	2	0	8.4
1975	22	6	4	8	3	1	0	8.3
1976	21	5	5	8	1	2	0	8.3
1977	15	2	4	6	2	1	0	8.2
1978	21	3	5	6	6	0	1	10.4
1979	24	4	4	3	4	4	5	16.3
1980	22	2	2	10	2	1	5	14.8
1981	21	2	3	6	4	1	5	14.9
1982	23	0	8	6	3	2	4	15.1
1983	19	3	4	4	2	1	5	18.7
1984	24	2	5	7	4	2	4	15.0
1985	21	2	5	5	2	2	5	14.1
1986	26	2	4	9	5	1	5	16.4
1987	28	2	5	12	4	1	4	12.6
1988	22	0	3	11	2	2	4	16.2
1989	25	0	3	11	7	2	2	13.4
1990	40	5	3	10	12	4	6	23.1
1991	43	1	7	13	14	6	2	12.2
1992	36	3	2	11	6	4	10	20.9
1993	53	1	7	15	9	7	14	24.9
1994	52	3	8	7	11	6	17	21.3
1995	41	4	5	5	13	4	10	20.2
1996	36	2	2	18	7	1	6	13.7
1997	40	4	5	11	11	3	6	15.8
1998	45	2	8	12	5	8	10	21.3
1999	36	3	1	10	5	7	10	17.5
2000	35	2	3	8	10	6	6	19.7
2001	28	2	7	11	5	0	3	11.9
2002	35	4	3	5	9	3	11	28.7
2003	34	2	8	8	11	2	3	13.5
2004	45	9	6	10	7	1	12	22.6
계	1,017	98	155	297	204	88	175	16.3

자료원 : 일본 공해등조정위원회, 공해분쟁처리백서, 2004

### (3) 공해고정(苦情)의 처리

공해고정이라 함은, 특정시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의하여 불편을 겪은 당사자가 관계행정기관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의 이전, 개선, 조업정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진정 또는 민원처리제도로서, 지방공공단체에 공해고정에 대한 상담창구를 두고 있다.

공해고정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다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원 또는 진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된 환경오염피해 고충까지도 포함한다.

#### (가) 공해고정건수의 추이

표 4-27에서 보면 1988년 이후 매년 평균 70,000여건 정도 되는 바, 이는 공해등조정위원회 및 도도부현공해심사회 등의 알선, 조정, 중재, 재정건수에 비하여 매우 많음을 알 수 있고, 공해민원은 대부분 공해고정제도를 통하여 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7. 공해고정건수의 추이

연도	고정건수	전년대비		1970년도 = 100
		증감건수	증감율(%)	
1966	20,502	-	-	32.3
1967	27,588	7,086	34.6	43.5
1968	28,970	1,382	5.0	45.7
1969	40,854	11,884	41.0	64.4
1970	63,433	22,579	55.3	100.0
1971	76,106	12,673	20.0	120.0
1972	87,764	11,658	15.3	138.4
1973	86,777	△987	△1.1	136.8
1974	79,015	△7,762	△8.9	124.6
1975	76,531	△2,484	△3.1	120.6
1976	70,033	△6,498	△8.5	110.4
1977	69,729	△304	△0.4	109.9
1978	69,730	1	0.0	109.9
1979	69,421	△309	△0.4	109.4
1980	64,690	△4,731	△6.8	102.0
1981	64,883	193	0.3	102.3
1982	63,559	△1,324	△2.0	100.2
1983	63,976	417	0.7	100.9
1984	67,754	3,778	5.9	106.8
1985	64,550	△3,204	△4.7	101.8
1986	65,467	917	1.4	103.2
1987	69,313	3,846	5.9	109.3
1988	72,565	3,252	4.7	114.4
1989	72,159	△406	△0.6	113.8
1990	74,294	2,135	3.0	117.1
1991	76,713	2,419	3.3	120.9
1992	76,186	△527	△0.7	120.1
1993	79,317	3,131	4.1	125.0
1994	66,556	△12,761	△16.1	104.9
1995	61,364	△5,192	△7.8	96.7
1996	62,315	951	1.5	98.2
1997	70,975	8,660	13.9	111.9
1998	82,138	11,163	15.7	129.5
1999	76,080	△6,058	△7.4	119.9
2000	83,881	7,801	10.3	132.2
2001	94,767	10,886	13.0	149.4
2002	96,613	1,846	1.9	152.3
2003	100,323	3,710	3.8	158.2

주) 1993년부터 조사방법을 변경하여 건수가 불연속적임

자료원 : 일본 공해등조정위원회, 공해분쟁처리백서, 2004

(나) 공해고정의 해결율 및 평균처리일수

표 4-28에서 보면 공해고정에 대한 해결율은 평균 88.4%로서 도도부현 공해심사회의 조정성립율 44.3%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고, 평균처리일수도 38일로 도도부현공해심사회의 평균 16.3개월보다 짧은 기간에 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해고정은 공해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단기간에 높은 해결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해분쟁 해결에 있어 매우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표 4-28. 공해고정의 해결율 및 평균처리일수

연도	해결율(%)	평균처리일수
1989	86.7	42
1990	86.7	40
1991	88.3	37
1992	87.0	41
1993	87.8	41
1994	88.6	38
1995	89.9	37
1996	89.1	36
1997	80.1	36
1998	89.1	36
평균	88.4	38

자료원 : 일본 공해등조정위원회, 공해분쟁처리백서, 1990

(다) 공해고정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2003년도에 조사한 표 4-29. 공해고정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만족」이 18,689건(29.2%), 「만족」이 9,904건(15.5%)으로 전체의 44.7%가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무응답」 2,660건

(4.2%), 「불만」 2,183건(3.4%), 「불명」이 30,628건(47.8%)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자의 85.5%가 매우만족 또는 만족하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공해고정제도는 일본에서 매우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29. 공해고정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구 분	계	만 족 도				
		매우만족	만족	무응답	불만	불명
처리건수	64,064	18,689	9,904	2,660	2,183	30,628
구성비(%)	100.0	29.2	15.5	4.2	3.4	47.8

자료원 : 일본 공해등조정위원회, 공해분쟁처리백서, 2004

## 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해분쟁처리현황 비교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환경분쟁을 조정하는 법률을 20년 먼저 제정하였고 전담기구인 공해등조정위원회도 19년이나 먼저 설치하였다. 우리나라는 환경피해 또는 환경시설 관련 분쟁만을 다루지만 일본은 광업권 등 토지이용 규제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기능이 하나 더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과 소음, 진동, 악취, 진동에 의한 지반침하, 자연생태계 파괴,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 등 10가지 환경피해만을 다루고 있지만, 일본은 통풍장애, 전자파, 교통체증에 의한 피해까지 폭 넓게 다루고 있다.

조직운영 면에서 우리나라는 상임위원이 1명에 불과한데 비하여 일본은 3명을 두고 있으며 임기도 5년을 보장하여 조직을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하

고 있다.

전문가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건이 접수되면 그 사건에 필요한 전문가를 그때그때 위촉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30명 이내에서 일괄 위촉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원과 전문가의 운영방법으로 볼 때 우리나라보다 전문성을 더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제도하에서 그동안 처리된 분쟁조정실적을 보면 우리나라는 재정 사건이 전체의 97.3%를 차지하는데 비하여 일본은 조정사건이 92.0%를 차지하고 있다.

사건처리기간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사건의 67.6%를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평균 처리기간이 16.3개월로서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위원회의 평균 조정성립율이 83.0%가 되나 일본 도도부현심사회의 경우는 44.3%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조정성립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후관리제도가 없는데 비해 일본은 사후관리제도로써 가해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무이행권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해민원처리를 전담하는 공해진정상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V. 고 찰

196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가져왔으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 소비량의 급증은 물론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이 일상생활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인간의 생활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으며, 환경오염의 침해는 자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고, 비상설기구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그 역할은 환경분쟁을 해결하는데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1990년도에 이르러 비로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상설기구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후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조정성립율도 평균 83%에 이르는 등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행정적 구제제도로서 국민들 사이에 정착해 갔다. 그러나 그동안 조정이 종결된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전체 조정(調整)사건중 97.3%를 차지하는 재정 사건의 경우, 재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 사건중에서 67.3%에 해당하는 사건만이 당사자가 승복하였고 32.7%는 불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불복한 사건 가운데 72.3%에 이르는 많은 사건들이 가해자가 불복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환경피해 구제제도로서 장점이 많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당사자의 승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고,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와 일본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결과와 제한점을 토대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18개의 독립변수중에서 당사자의 승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해자의 업종, 조정신청액, 배상액 및 배상인수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업종이 관공서나 공기업인 경우가 기타업종에 비하여 7.468배로 불복을 많이 하였고, 건설업이 포함된 관공서나 공기업인 경우도 6.539배로 불복을 많이 하였다. 조정신청액의 경우를 보면 신청액이 5,000만원 미만인 사건이 2.918배로 불복을 많이 하였다. 배상액으로 볼 때는 5,000만원 이상인 사건에서 불복이 많았고, 배상인수로는 31인 이상인 경우에 불복이 많은 것으로 나왔다.

분석한 사례(342건)중 230건(67.3%)은 당사자가 승복하였고, 112건(32.7%)은 불복하였는데, 불복사례 가운데 31건(27.7%)은 피해자가 불복하였고, 81건(72.3%)은 가해자가 불복하였다. 불복사례 중에서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11.1%만 원고승소 결정을 하였다. 또한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비율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액의 평균 83.4%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신청자에게 더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당사자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공해분쟁처리제도와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는 환경피해의 범위를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과 소음, 진동, 악취, 진동에 의한 지반침하, 자연생태계 파괴,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

등 10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통풍장애, 전자파, 교통체증에 의한 피해까지 다루고 있다. 분쟁조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을 우리나라는 1명만 두고 있는데 일본은 3명이나 두고 있으며, 관계전문가도 우리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있으나 일본은 검증된 전문가를 30명 범위내에서 일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후관리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일본은 가해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무이행 권고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해민원처리를 전담하는 공해진정상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실적을 볼 때 우리나라는 재정사건이 전체 처리사건의 97.3%를 차지하는데 비하여 일본은 조정(調停)사건이 92.0%를 차지하고 있다.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우리나라는 중앙위원회가 평균 5.5개월, 지방위원회가 평균 4.2개월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일본 도도부현공해심사회의 경우는 평균 16.3개월로써 장기간이 걸리고 있다. 조정성립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평균 83.0%인데 비하여 일본은 44.3%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정업무가 시작된 지 14년이란 기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축적된 사건수가 많지 않아 이 자료들의 분석만으로 일반적인 원칙을 확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특히 이번 연구와 같이 특정기간에 처리된 사건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시도하는 경우에 사건수가 더 줄어들게 되어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분석변수에 승복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었고 조정에 관여한 내용들을 변수화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실제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왜

꼭되거나 경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또한 조정결과에 불복하여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결정내용과 조정결과를 비교분석 하였으나 민사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 1심판결 내용이 분석에 사용되어 연구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환경분쟁조정사례집에 나타난 것 외에 더 있을 수도 있었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다.

위에서 조정사례 분석결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찰해 보았으나 이 연구의 여러가지 제한점으로 인하여 현행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도출 및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연구자가 4년여 동안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취득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VI. 결 론

오늘날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는 자연생태계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일상생활과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의 특성이 피해 당사자가 다수이고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 피해배상을 받는 일이 드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였으나, 아직도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분쟁해결이 잘 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다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조정사례를 분석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행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1. 조정전치주의 채택

최근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당사자의 조정성립율이 평균 83.0%까지 높아진 상황이므로 이제는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를 신속히 함은 물론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 2. 책임재정과 원인재정을 분리 운영

책임재정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판단하는 것이고, 원인재정은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에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다수인 관련 분쟁이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인체건강피해분쟁의 경우에는 원인재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현재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재정을 원인재정과 책임재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3. 조정결정에 대한 법적효력 강화**

조정·재정결정이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명의로서의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 **4. 사업장 주변 주민들에게 정보청구권 인정**

환경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사업장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언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사업장에 환경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의 인정이 필요하다.

### **5. 보험가입 및 공적보상제도 도입**

보험원리에 의한 피해구제 방식으로 환경오염피해보상보험의 도입과 국가차원에서 공적보상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6.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전문성 강화**

환경피해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심사관의 육성 및 인사제도의 운영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법제화 하여야 한다.

## **7.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상설화**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사건은 해당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제도 원칙에 부합되도록 현재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승격하여 이들의 책임 하에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8. 조정결과의 관계부서 피드백(Feedback)체제 구축**

환경오염피해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적인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해당부처에 환류시켜 정책수립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 **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환경분쟁조정제도와 더불어 행정적 구제수단의 하나인 민원·진정처리 제도가 체계적으로 연관성을 유지하도록 민원업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 10. 금전지급 이외의 이행의무 부과제도 활용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정결정을 할 때 금전지급 뿐만 아니라 방음벽 설치, 방지사설 보완 등의 이행의무를 병과 하여야 한다.

## 11. 환경민원상담원제도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진정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민원상담원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같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오염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행정상의 구제절차로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승복율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수단을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정결정이 법원의 1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에 부합될 뿐 아니라 동 제도의 존재가치가 부여받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이상규. 일본의 공해분쟁처리제도, 환경법연구 제10권, 1988.
- \_\_\_\_\_. 환경관례연구, 삼영사, 1993.
- \_\_\_\_\_. 환경분쟁처리장치의 문제와 개선책, 환경법연구 제10권, 1988.
- 권용우.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효율화, 환경법연구 제2권, 1980.
- 이용우. 공해피해에 대한 제소전의 행정상 구제, 환경법연구 제1권, 1979.
- 함순용. 환경입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 구연창.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확립, 환경법연구 제2권, 1980.
- 박윤현. 최신행정법강의, 국민서관, 1992.
- 김종민. 환경분쟁처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진순석. 환경공해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3.
- 오석락. 입증책임론, 일신사, 1989.
- 전창조. 일본의 공해분쟁처리제도, 환경법연구 제13권, 1991.
- 이시윤. 최신민사소송법, 박영사, 1991.
- 전병성. 우리나라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 한국환경법학회 세미나 자료, 1991.
- 이경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신상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의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1991.
-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환경오염피해조사기법 및 피해산정기준개발, 1991.
- \_\_\_\_\_. 환경행정의 제도적 기반분석 평가 및 개선대책 강구, 1989.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제도 해설, 1999.
- \_\_\_\_\_.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사례집, 1992, 1993.
- \_\_\_\_\_. 98년 환경분쟁조정현황 업무보고자료, 1999.
- \_\_\_\_\_.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와 실무, 1998.
- \_\_\_\_\_. 국정감사자료, 1999.
- \_\_\_\_\_.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방안, 1999.
- 환경부. 환경백서 및 한국환경연감, 2005.
- 原田尙彦. 환경법, 1986.
- 沈山草也. 공해등조정위원회, 1990.
- 이경환. 환경분쟁조정사례분석을 통한 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장명규.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김시평. 환경분쟁조정관례분석, 한국경제서적, 2000.
- 김홍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체계의 정비방안, 200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일본의 환경분쟁조정제도, 200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일 환경분쟁조정제도 비교 세미나, 2001.
- 이정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오세훈.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2002.

공해등조정위원회. 공해분쟁처리백서, 2004.

\_\_\_\_\_. 년차보고, 2004.

## **ABSTRACT**

# **Improvement Measures of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System on Civil Suits: A Korean Case Study**

Kang Seok Lee

Dept. of environment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 Chun Shin, M.D., Ph.D)

Accelerated economic growth within a short span of time since the 1960s has led to the destruction of scenic sites of natural beauty and ecosystems, the rapid increa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emergence of issues of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nd nuisance. Today environmental pollution is not referred to the natural environment, but it also has hazardous effects on human health. Disputes on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e scale of damage is expanding. In

the past, it was rare to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difficulty of identifying the accountability and cause of the disputes. Specified knowledge is required to identify the causes of pollution damag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systematic and operational problems of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System on civil suits by comparing foreign environment-related regulations and standards with domestic ones.

Nine measures to achieve this objective are proposed: (1) The advantages of mediation preceding system such as utilizing the expertise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quickening the procedures to reduce the burden on the court should be adopted. (2) Responsible Finance determines whether or not there is responsibility to compensate for damages and the amount of damages, and Cause Finance only looks at the cause of disputes. As the necessity of Cause Finance is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two finances, which are currently taken care of altogether. (3) In ordinances for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to have the same effect as the first ruling at court, related laws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legal force for compulsory execution is recognized. (4)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right to know" so that regional residents can ask for information on the substances or processing procedures that could cause environmental damages from the industrial sites. (5) Systematic devices should be considered by introducing insurances to

compensate for environmental damages and deposit system for the citizens. (6) The human relations system, which allows supervisor and expert with high expertise and knowledge to be brought up, should be implemented and the qualification should be legalized so that the cause of environmental damages can be identified. (7) In ordinances for the local authorities to handle environmental disputes that arise in their jurisdiction, the Local Environmental Coordination Commission, which currently is a non-permanent commission, should be upgraded to a permanent one. (8) In order to prevent environmental disputes from arising in the first place, any systematic or operational problems that are found in the procedure of settling disputes should be sent to the related governmental agencies, so that they are reflected when establishing policies to prevent environmental disputes from arising in the first place. (9) The role of the Central Environmental Disputes Coordination Commission, which is an administrative commission and handles civil works,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it can be systematically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n essential system to settle disputes, and scientific and experienced investigation should be implemented to improve the success rate of environmental mediation. Related laws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result of dispute settlements has the same effect as court rulings. This will not only satisfy the objective of this system, but also add value to the existence of the system. The system will have continuous

improvement if all of these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implementing the same kind of system.

---

Key word :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System

## 부 록

###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처리 내역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99-3-65 (1)	이OO 외 4명 (1999.10.8)	OO공업(주)	포천군 공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치어 및 정신적 피해 (32,300,000원)	5,082,000원 (2000.6.16)	승복
00-3-46 (2)	강OO 외 5명 (2000.10.6)	(주)OOOO	택지조성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414,500,000원)	22,606,000원 (2000.12.15)	불복 (피해자)
00-3-4 (3)	김OO외 3명 (2000.3.7)	OO토건(주)	구례군 하수관거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35,000,000원)	924,000원 (2000.5.19)	승복
99-3-46 (4)	김OO (1999.7.23)	금OO	서울시 금천구 공영주차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21,447,350원)	825,000원 (2000.2.23)	승복
00-3-11 (5)	윤OO (2000.4.10)	OO시	노원구 동부고속화도로 차량매연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56,000,000원)	8,000,000원 투명방음벽 보강 (2000.7.21)	승복
00-3-8 (6)	송OO외 1명 (2000.3.29)	OO산업개발(주) OO건설산업(주)	대전시 유성구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관상어 피해 (213,100,000원)	기각 (2000.6.16)	승복
00-3-22 (7)	정OO외 198명 (2000.7.11)	OO종합건설(주)	성당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99,000,000원)	22,850,000원 (2000.9.22)	불복 (가해자)
00-3-3 (8)	OO사 주지 이OO (2000.3.6)	OO공업(주)	동해시 채석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865,000,000원)	기각 (2000.10.20)	승복
00-3-18 (9)	이OO외 153명 (2000.5.24)	(주)OO 법정관리 길OO	남양주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124,000,000원)	29,885,000원 (2000.12.15)	승복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99-3-60 (10)	김OO (1999.9.16)	OO산업(주)	충남 보령시 청라면 부지조성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105,507,000원)	6,133,000원 (2000.4.21)	승복
99-3-77 (11)	이OO (1999.12.18)	OO공영(주) OOOO공사	고속도로 건설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비육우 및 재산피해 (147,200,000원)	31,931,560원 (2000.7.21)	불복 (피해자)
99-3-69 (12)	신OO외 183명 (1999.10.23)	OO건설(주)	아파트 재개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416,195,000원)	68,655,000원 (2000.2.29)	불복 (가해자)
00-3-1 (13)	김OO (2000.1.11)	OO산업(주)	충남 보령시 서해안고속도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돈 피해 (169,660,000원)	8,619,400원 (2000.3.16)	승복
99-3-73 (14)	유OO외 2명 (1999.11.18)	(주)OO개발	성남시 분당구 하천제방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양계 피해 (45,166,800원)	5,260,170원 (2000.5.31)	승복
00-3-30 (15)	한O 외 296명 (2000.7.27)	OO종합건설(주) OO교회	성남시 교회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584,800,000원)	63,128,000원 (2000.10.20)	승복
00-3-15 (16)	노OO (2000.5.20)	OO건설(주) 외 1개사	순천시 지방산업단지 정.배수장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98,732,207원)	2,703,350원 (2000.10.30)	승복
99-3-58 (17)	김OO (1999.9.9)	김OO외 1명	시흥시 건축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사슴 및 영업손실 피해 (255,900,000원)	11,642,000원 (2000.1.24)	승복
99-3-54 (18)	김OO외 274명 (1999.8.31)	OO건설 산업(주)	서울 신당4동 재개발아파트 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713,184,000원)	59,565,000원 (2000.2.25)	불복 (가해자)
99-3-55 (19)	이OO외 38명 (1999.9.1)	OO개발(주)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63,034,000원)	13,032,000원 (2000.5.31)	승복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99-3-78 (20)	이OO (1999.12.24)	OOO개발 (주)	골재채취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동자개피해 (247,210,000원)	14,196,000원 (2000.7.21)	불복 (피해자)
00-3-45 (21)	홍OO외 2명 (2000.9.30)	OO시	의정부시 지방도로 통행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8,800,000원)	기각 (2000.12.15)	승복
00-3-21 (22)	김OO외 96명 (2000.7.4)	OO기업 외 1개사	인천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00,800,000원)	53,615,000원 (2000.11.17)	승복
99-3-76 (23)	정OO외 3명 (1999.12.10)	OO건설(주) 외 1개사	인천시 지하철1호선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45,950,000원)	3,176,020원 (2000.3.7)	승복
99-3-37 99-3-47 99-3-64 (24)	김OO외 272명 (1999.6.9)	OO건설(주) (주)OO건설 (유)OO건설	인천시 남구 학교신축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47,500,000원)	31,575,000원 (1999.12.20)	승복
00-3-13 (25)	최OO (2000.4.25)	OO산업(주)	정선군 공장 소음.분진 및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피해 (53,870,000원)	기각 (2000.6.16)	승복
99-3-66 (26)	박OO (1999.9.9)	OO산업(주)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409,610,998원)	26,668,760원 (2000.2.25)	불복 (가해자)
99-3-62 (27)	OO건설(주) (1999.9.21)	이OO	충주시 가금면 고속도로 건설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예상 피해 (1,871,217,480원)	1,409,097원 (2000.1.24)	승복
00-3-35 (28)	오OO외 8명 (2000.8.23)	(주)OO (주)OO	대전시 물류센터 차량운행에 따른 매연. 소음등으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80,325,000원)	5,100,000원 (2000.12.2)	승복
99-3-59 (29)	진OO (1999.9.9)	OO건설(주)	강원도 태백시 철담부지 조성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계피해 (213,000,000원)	기각 (2000.1.24)	불복 (피해자)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0-3-12 (30)	OO산업(주) (2000.4.17)	김OO	경기 평택-이동간 도로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토끼피해 (25,326,000원)	25,326,000원 (2000.7.22)	승복
00-3-9 (31)	박OO외 1명 (2000.4.3)	(주)OO건설	포천군 국도4차선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595,458,000원)	4,820,560원 (2000.9.26)	승복
99-3-53 (32)	최OO 외 31명 (1999.8.31)	OO산업개발(주)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재건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77,330,000원)	9,811,580원 (1999.12.28)	승복
00-3-6 (33)	송OO외 1명 (2000.3.24)	OO군	화성군 종합사격장 총기소음으로 인한 양계 피해 (148,776,638원)	40,301,080원 (2000.10.28)	승복
99-3-57 (34)	김OO외 29명 (1999.9.6)	(주)OO 외 5개사	달성군 현풍공단 대기오염으로 인한 벼피해 (113,315,680원)	25,391,330원 원료변경, 방지사설개선 (2000.2.29)	승복
00-3-27 (35)	김OO외 43명 (2000.7.21)	OO시	마산시 하수 및 분뇨 종말처리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13,200,000원)	11,000,000원 (2000.9.22)	승복
99-3-36 (36)	김OO외 1,136명 (1999.6.9)	OO시장	마산시 하수 및 분뇨 종말처리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10,533,623,000원)	319,630,500원 (2003.17)	승복
99-3-45 (37)	홍OO (1999.7.23)	OO화학 외 4개사	전남 여수시 대기오염으로 인한 벌 폐사피해 (12,000,000원)	990,000원 (2000.2.25)	승복
00-3-39 (38)	박OO (2000.8.29)	OO시	순천시 하수슬러지 처리로 인한 낚시터 물고기 폐사 피해 (495,000,000원)	기각 (2000.11.17)	승복
99-3-7 (39)	송OO외 3명 (1999.2.2)	OO군	경북 칠곡군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토양 및 하천오염 피해 (200,000,000원)	기각 (2000.3.17)	승복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99-3-72 (40)	이OO (1999.11.1)	(주)OO 외 3개사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장 황토사의 낙시터 유입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185,700,000원)	3,049,200원 (2000.5.6)	승복
00-3-32 00-3-33 (41)	김OO외 164명 (2000.8.11)	삼성OO(주)	마포구 신공덕동 아파트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03,760,500원)	14,000,000원 (2001.1.19)	불복 (가해자)
00-3-25 00-3-48 (42)	박OO외 970명 (2000.7.14)	OO산업개발(주) OO공영(주) OOOO공사	의정부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600,000,000원)	317,260,000원 (2001.2.16)	불복 (가해자)
00-3-38 (43)	허OO외 724명 (2000.8.28)	OOO건설(주)	강동구 둔촌2동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666,856,000원)	53,150,000원 (2001.3.8)	승복
00-3-44 00-3-52 (44)	변OO외 1명 (2000.9.28)	OO광역시 OO구	부산 강서구 연료단지 진입 교량 공사장소음.진동으로 인한 가물치 피해 (206,709,250원)	기각 (2001.2.20)	불복 (피해자)
00-3-40 (45)	(주)OO건설 (2000.8.31)	박OO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젖소 피해 (86,178,963원)	17,480,000원 (2001.4.20)	승복
00-3-47 (46)	김OO외 1명 (2000.10.6)	OO기업(주) 외 2개사	고령-성산간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115,938,121원)	2,470,000원 (2001.4.26)	승복
00-3-49 (47)	이OO외 95명 (2000.10.12)	OO광역시 OO개발(주) OO건설(주)	인천 남구 문학산터널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779,500,000원)	106,750,000원 (2001.4.20)	불복 (가해자)
00-3-59 (48)	류OO외 9명 (2000.11.27)	OO산업(주)	마포구 성산동 재건축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40,000,000원)	5,850,000원 (2001.4.20)	승복
00-3-60 (49)	송OO 외 69명 (2000.11.27)	OO산업개발(주) OOOO공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210,000,000원)	18,450,000원 (2001.4.20)	승복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0-3-55 (50)	김OO외 76명 (2000.10.25)	(주)OOOO토건	안양시 임곡지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50,000,000원)	99,650,000원 (2001.5.18)	불복 (가해자)
00-3-58 (51)	남OO (2000.11.23)	OOOO	논산시 항공학교 헬기 소음으로 인한사슴 및 정신적 피해 (763,000,000원)	24,130,000원 (2001.5.18)	불복 (피해자)
01-3-3 (52)	이OO외 323명 (2001.1.30)	(주)OO주택	인천 연수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816,800,000원)	149,950,000원 (2001.5.18)	불복 (가해자)
00-3-54 (53)	조OO (2000.10.24)	OOOO공사 OO개발(주)	영광군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420,153,000원)	5,135,000원 (2001.6.8)	승복
01-3-5 01-3-14 (54)	OO건설(주) (2001.2.15)	양OO 오OO	전주-구이간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고시원 피해 (230,000,000원)	2,996,000원 (2001.6.22)	승복
00-3-57 (55)	김OO (2000.11.8)	(주)OO건설 OOOOOOOO 공단	김천시 고속철도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계 피해 (238,600,000원)	62,100,000원 (2001.7.6)	불복 (가해자)
01-3-4 (56)	김OO외 159명 (2001.2.15)	OOOO건설 (주)	서대문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28,000,000원)	95,030,000원 (2001.7.6)	불복 (가해자)
01-3-12 (57)	김OO (2001.3.30)	OO지방국토 관리청 OOOO(주)	옥천-성전간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92,334,832원)	58,432,000원 (2001.7.6)	승복
01-3-13 (58)	김OO외 350명 (2001.4.2)	OOOO건설(주)	강남구 빌라 재건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210,000,000원)	122,300,000원 (2001.7.6)	불복 (가해자)
01-3-25 (59)	고OO외 1명 (2001.5.30)	OO기업(주) OO건설(주)	동대문구 빌딩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10,000,000원)	2,930,000원 (2001.7.6)	불복 (피해자)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0-3-53 (60)	이OO외 19명 (2000.10.20)	OOOO시멘트 (주)	강릉시 시멘트공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348,749,500원)	기각 (2001.7.20)	승복
01-3-15 (61)	박OO외 366명 (2004.4.16)	OOOO계건축 연립조합 OO건설(주)	강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256,900,000원)	161,350,000원 (2001.7.20)	불복 (가해자)
01-3-18 (62)	박OO 외 1,128명 (2001.4.23)	OO건설(주)	울산시 남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3,221,948,000원)	364,965,000원 (2001.7.20)	승복
01-3-40 (63)	홍OO (2001.7.18)	OOOO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양돈 및 정신적 피해 (49,000,000원)	15,490,000원 (2001.7.20)	불복 (피해자)
01-3-17 (64)	홍OO외 65명 (2001.4.23)	OO건설(주)	동대문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33,000,000원)	51,500,000원 (2001.8.24)	승복
01-3-20 (65)	(주)OO (2001.5.8)	백OO	운암-구이간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양계 피해 (117,218,800원)	29,263,710원 (2001.8.24)	승복
01-3-31 (66)	이OO외 6명 (2001.6.12)	OOO장 OO건설(주)	대전시 고속철도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95,000,000원)	2,800,000원 (2001.8.24)	불복 (피해자)
01-3-21 (67)	오OO외 11명 (2001.5.10)	OO구청 (주)OO종합건설 (주)OO종합건설	성북구 월계동 교량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87,500,000원)	8,450,000원 (2004.8.10)	승복
01-3-9 01-3-23 (68)	박OO외 3명 (2001.3.13)	OO공영(주) OO개발(주)	성북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13,600,000원)	1,280,000원 (2001.12.7)	승복
01-3-24 (69)	김OO외 5명 (2001.5.25)	(주)OO냉장 (주)OOOOOO	안성시 공장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124,451,000원)	29,410,000원 (2001.9.7)	승복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1-3-33 (70)	박OO외 3명 (2001.6.23)	OOOOOO건설 공단 OO물산(주) OO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영동군 고속철도공사장 국도은행차량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27,000,000원)	1,150,000원 (2001.9.7)	승복
01-3-27 (71)	(주)OO (2001.6.1)	성OO	여수시 여수공항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돈 피해 (2,354,810,960원)	23,746,000원 (2001.9.28)	승복
01-3-28 (72)	장OO (2001.6.5)	OO지방국토 관리청 OO건설(주) OO토건(주)	문경시 도로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양돈 피해 (157,046,850원)	영구방음벽설 치 (2001.9.28)	승복
01-3-41 (73)	김OO외 1명 (2001.7.20)	(주)OO OOOO공사	인천시 동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식당영업 및 정신적 피해 (40,000,000원)	1,650,000원 (2001.9.28)	불복 (가해자)
01-3-43 (74)	이OO외 21명 (2001.7.21)	주OO 유OO	관악구 빌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40,000,000원)	15,400,000원 (2001.9.28)	승복
01-3-75 (75)	윤OO외 65명 (2001.9.03)	OO건설(주)	울산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32,000,000원)	35,620,000원 (2001.9.28)	승복
01-3-38 (76)	김OO외 11명 (2001.7.5)	OO교회 OO종합건설(주)	서대문구 홍제동 교회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30,000,000원)	3,330,000원 (2001.10.12)	승복
01-3-59 (77)	유OO외 219명 (2001.8.22)	OO종합건설(주) OO연립 재건축조합	동작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440,000,000원)	47,575,000원 (2001.10.26)	불복 (가해자)
01-3-51 (78)	한OO외 24명 (2001.8.6)	OOOO공사 외 3개사	대전시 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387,600,000원)	12,410,000원 (2001.10.26)	승복
01-3-52 (79)	임OO외 7명 (2001.8.6)	OOOOOO건설 (주) 외 1개사	성북구 터널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00,000,000원)	15,250,000원 (2001.11.9)	승복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1-3-45 01-3-71 (80)	박OO외 1,536명 (2001.7.27)	(주)OO건설	의정부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856,615,000원)	359,500,000원 (2001.10.26)	불복 (가해자)
01-3-74 (81)	공OO외 23명 (2001.9.3)	OO건설(주)	서초구 빌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183,000,000원)	35,703,000원 (2001.10.26)	승복
01-3-48 (82)	김OO외 3명 (2001.7.28)	(주)OO금속공업	경주시 금속공장 철가루,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462,600,000원)	10,699,100원 (2001.11.9)	승복
01-3-58 (83)	김OO (2001.8.22)	OO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주)OOOO건설	진도군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타조 및 정신적 피해 (90,262,500원)	54,584,000원 (2001.11.9)	승복
01-3-30 (84)	이OO외 11명 (2001.6.12)	OO설업(주)	강화군 채석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124,300,000원)	5,976,500원 (2001.11.9)	승복
01-3-36 (85)	김OO외 2명 (2001.6.29)	OOO혼합사료 (주)	파주시 사료공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4,500,000원)	기각 (2001.11.9)	승복
01-3-54 (86)	한OO (2001.8.7)	OO수도사업소 OO건설	강서구 상수도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15,000,000원)	기각 (2001.11.9)	불복 (피해자)
01-3-76 (87)	OO중공업 (주) (2001.9.8)	반OO	천안-병천간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483,225,000원)	16,600,000원 (2001.11.23)	승복
01-3-85 (88)	(주)OO개발 (2001.9.17)	이OO 조OO	여주시 도로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80,685,500원)	3,162,000원 (2001.12.7)	승복
01-3-80 (89)	김OO (2001.9.10)	김OO	원주시 개사육장 소음.악취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피해 (90,000,000원)	3,000,000원 (2001.12.7)	승복
01-3-91 (90)	송OO외 4명 (2001.10.8)	OO물산(주)	대전시 서구 가장동 아파트 공사장 소음. 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7,590,000원)	3,450,000원 (2001.12.7)	불복 (가해자)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1-3-111 (91)	문OO외 11명 (2001.11.1)	OO건설(주)	울산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2,000,000원)	5,460,000원 (2001.12.7)	승복
01-3-55 (92)	한OO (2001.8.10)	OOOO국토 관리청 OO개발(주) 외 4개사	포천군 도로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양돈 피해 (226,000,000원)	7,133,000원 (2001.12.20)	불복 (피해자)
01-3-64 01-3-65 (93)	이OO외 2명 (2001.8.25)	장OO외 3명	강서구 다세대주택 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9,200,000원)	2,280,000원 (2001.12.20)	승복
01-3-60 (94)	정OO외 13명 (2001.8.22)	OO섬유	성동구 염색공장 소음.진동.악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8,000,000원)	3,850,000원 (2001.12.20)	승복
01-3-77 (95)	이OO외 148명 (2001.9.8)	OO건설(주)	용인시 아파트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312,440,000원)	27,225,000원 (2001.12.20)	불복 (가해자)
01-3-113 (96)	권OO외 13명 (2001.11.5)	OO건설(주)	안양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9,700,000원)	1,650,000원 (2001.12.20)	승복
01-3-8 (97)	심OO외 55명 (2001.3.12)	OO에너지(주)	김포시 활성탄공장 비산먼지등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130,960,000원)	9,996,000원 (2001.8.24)	승복
01-3-39 (98)	최OO외 194명 (2001.7.10)	OOOO믹스(주) OOO도	제천시 농약공장 악취.소음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813,430,000원)	97,500,000원 (2001.10.26)	불복 (가해자)
01-3-67 (99)	김OO (2001.8.28)	(주)OO산업	경산시 폐기물소각장 대기 오염으로 인한 과수 피해 (15,000,000원)	7,244,000원 (2001.12.7)	승복
00-3-43 (100)	OO진주 (2000.9.8)	OOOO공사	밀양시 진주양식장 낙동강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진주 피해 (1,797,120,000원)	기각 (2001.4.25)	승복
01-3-1 (101)	정OO (2001.1.9)	OO시	충주시 쓰레기 운반차량 침출수 악취로 인한 식당 및 정신적 피해 (22,800,000원)	기각 (2001.6.22)	승복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0-3-63 (102)	강OO외 20명 (2000.12.12)	OO시 OO금속(주) 외 4개사	안산시 반월공단 폐수 방류로 인한 비 피해 (444,504,869원)	75,870,000원 (2001.7.20)	승복
01-3-68 (103)	황OO외 25명 (2001.8.29)	OO(주)	경기 음식점 소음.악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15,200,000원)	5,150,000원 (2002.1.11)	승복
01-3-104 (104)	OOO외 3명 (2001.10.24)	(합)OO	충북 청원군 골재채취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45,300,000원)	20,235,000원 (2002.1.11)	승복
01-3-63 (105)	백OO (2001.8.25)	OO교육청장 OO건설(주) 외 2개사	서울시 성동구 학교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 (82,120,000원)	16,104,000원 (2002.1.11)	승복
01-3-90 (106)	김OO외 2명 (2001.9.29)	OOOO공사 OO건설(주)	경기 포천군 변전소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및 정신적 피해 (363,000,000원)	28,910,715원 (2002.1.11)	불복 (피해자)
01-3-106 (107)	송OO (2001.10.29)	(주)OO영덕건설	경북 영덕군 채석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20,000,000원)	1,489,000원 (2002.1.25)	승복
01-3-133 01-3-134 01-3-136 (108)	지OO외 2명 (2001.12.11)	OOO건설(주)	충북 괴산군 고속도로 터널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73,805,520원)	73,625,520원 (2002.1.25)	승복
02-3-103 (109)	OOOO개발 (주) (2001.10.20)	OOO외 1명	충북 충주시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30,000,000원)	9,000,000원 (2002.1.25)	승복
01-3-105 (110)	OOO외 5명 (2001.10.29)	OOO재개발조합 OO산업(주) OO건설(주)	서울시 마포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44,890,000원)	1,200,000원 (2002.1.25)	승복
01-3-112 (111)	OOO (2001.11.5)	OOOOOOO청 OOOO(주)	경기 포천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피해 (40,136,000원)	6,551,975원 (2002.1.25)	승복
01-3-98 (112)	박OO외 344명 (2001.10.12)	OO시 OOOO공사	경기 부천시 부평-신월간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492,000,000원)	166,450,000원 (2002.2.8)	불복 (피해자)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1-3-121 (113)	권OO외 2명 (2001.11.21)	OOOO공사 OO건설(주)	경북 영천시 대구-포항간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5,000,000원)	2,875,000원 (2002.2.8)	승복
01-3-118 (114)	김OO외 3명 (2001.11.14)	OO건설(주)	서울시 관악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27,500,000원)	5,014,720원 (2002.2.8)	불복 (가해자)
01-3-102 (115)	이OO외 1명 (2001.10.27)	OO건설(주)	강원 횡성군 횡성-추동간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225,000,000원)	3,490,000원 (2001.2.8)	승복
01-3-150 (116)	OOO외 491명 (2001.12.26)	OO종합개발(주)	경기 이천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724,340,000원)	209,300,000원 (2002.2.22)	불복 (가해자)
01-3-114 01-3-124 (117)	연OO외 68명 (2001.11.9)	OO건설(주)	대전시 대덕구 고속철도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63,500,000원)	17,050,000원 (2002.2.22)	승복
01-3-135 (118)	OOOO공사 (2001.12.13)	OOO외 1명	강원 원주시 고속도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242,800,000원)	기각 (2002.2.22)	승복
02-3-107 02-3-110 (119)	OOO외 2,224명 (2001.10.29)	OO(주) 외 2개사	경남 창원시 택지개발 및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339,850,000원)	136,950,000원 (2002.2.22)	승복
01-3-127 (120)	심OO외 130명 (2001.12.6)	(주)OO	서울시 도봉구 빌딩 건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91,700,000원)	14,950,000원 (2002.2.22)	승복
02-3-7 (121)	박OO외 47명 (2002.1.12)	OO건설(주)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44,800,000원)	12,000,000원 (2002.3.21)	불복 (가해자)
02-3-10 02-3-21 (122)	홍OO외 113명 (2002.1.12)	OO산업(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옥천간 철도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45,300,000원)	29,359,000원 (2002.4.12)	승복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1-3-139 (123)	이OO외 44명 (2001.12.13)	OO기업(주) 외 8개사	강원 강릉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89,910,000원)	9,778,000원 (2002.4.12)	승복
02-3-25 (124)	하OO외 3명 (2002.2.14)	A철강사령 외 1개사	서울시 영등포구 공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43,408,000원)	기각 (2002.4.12)	승복
02-3-26 (125)	OOO외 6명 (2002.2.14)	OOOO공사 OOOO개발(주)	강원 강릉시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987,351,691원)	32,958,925원 (2002.4.12)	승복
02-3-1 (126)	이OO외 59명 (2002.1.3)	OO공영(주) OO연립 재건축조합	경기 부천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86,000,000원)	38,650,000원 (2002.4.12)	불복 (가해자)
02-3-8 (127)	김OO외 19명 (2002.1.14)	OO석산 (주)OO	충남 서산시 석산개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443,630,000원)	기각 (2002.4.25)	승복
01-3-109 (128)	최OO외 936명 (2001.11.1)	OO광역시 O구 OO지방 해양수산청 57개 업체	인천시 향운아파트 도로소음.진동.매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5,654,000,000원)	534,050,000원 (2002.4.25)	불복 (가해자)
02-3-27 (129)	OOO (2002.2.20)	OO종합건설(주)	경북 구미시 하천개수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타조 및 정신적 피해 (45,300,000원)	16,836,000원 (2002.4.25)	승복
02-3-46 (130)	OOO외 1명 (2002.3.26)	OO주택(주)	경기 광주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5,000,000원)	기각 (2002.5.10)	승복
02-3-28 (131)	정OO외 3명 (2002.2.20)	OO하이웨이 (주) OO산업(주)	인천시 신공항고속도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361,000,000원)	3,594,000원 단속카메라 설치 (2002.5.10)	불복 (피해자)
02-3-41 (132)	김OO (2000.9.8)	OOOO공사 OO토건(주)	경기 포천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양계 및 정신적 피해 (476,160,000원)	12,342,000원 (2002.10.11)	승복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2-3-59 (133)	서OO외 43명 (2002.4.1)	OO여객자동차 (주) OO광역시 OO지방경찰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소음.진동.매연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50,000,000원)	13,640,000원 버스노선변경 (2002.5.24)	불복 (가해자)
02-3-47 (134)	김OO외 3명 (2002.3.26)	(주)OO건설산업	경북 영천시 고경-금호간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247,450,000원)	105,227,000원 (2002.5.23)	불복 (가해자)
02-3-22 (135)	이OO외 318명 (2002.2.7)	(주)OO건설	서울시 영등포구 주상복합건물 건축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255,200,000원)	97,950,000원 (2002.5.23)	불복 (가해자)
02-3-16 (136)	김OO외 36명 (2002.1.28)	(주)OO	전북 완주군 구이-운암간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557,920,000원)	46,489,750,000원 (2002.5.23)	불복 (가해자)
02-3-9 02-3-119 (137)	정OO외 6명 (2002.1.17)	OOOO국토 관리청 OO시 OOOO공사 외 4개사	경북 문경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334,640,200원)	40,749,000원 영구방음벽 설치 (2002.6.12)	승복
02-3-60 (138)	김OO외 444명 (2002.4.9)	OO건설(주) OO쇼핑(주)	경남 마산시 대형할인매장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285,570,000원)	149,970,000원 (2002.6.12)	불복 (가해자)
02-3-17 (139)	최OO외 2명 (2002.1.28)	(주)OO OO건설(주) OO지방 국토관리청	전북 완주군 구이-운암간 도로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이주보상 및 정신적 피해 (45,000,000원)	1,500,000원 (2002.6.14)	불복 (가해자)
02-3-62 (140)	조OO외 82명 (2002.4.9)	OO건설(주) 외 2개사	충북 괴산군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449,000,000원)	43,394,320원 (2002.6.27)	승복
02-3-65 02-3-92 (141)	이OO외 5명 (2002.4.15)	OOOO개발(주)	경기 이천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3,000,000원)	2,386,734원 (2002.6.27)	불복 (피해자)
02-3-68 (142)	이OO외 183명 (2002.4.12)	OO건설(주) OO산업개발(주)	서울시 관악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909,500,000원)	109,835,260원 (2002.7.12)	불복 (가해자)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2-3-81 02-3-82 (143)	OOO외 1명 (2002.4.29)	OO건설(주) 외 2개사	충북 괴산군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양봉 및 양계 피해 (132,160,600원)	기각 (2002.7.12)	승복
02-3-75 (144)	OO건설(주) (2002.4.29)	임OO외 1명	인천광역시 서구 굴포천 방수로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333,000,000원)	2,014,580원 (2002.7.12)	승복
02-3-61 (145)	박OO (2002.4.9)	OOOO	광주시 서구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40,000,000원)	7,431,200원 (2002.7.12)	불복 (가해자)
02-3-52 (146)	OOO외 11명 (2002.3.29)	OO건설(주)	인천시 부평구 원림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94,000,000원)	3,030,000원 (2002.7.12)	승복
02-3-97 (147)	곽OO외 4명 (2002.5.14)	OO물산(주)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25,000,000원)	2,200,000원 (2002.7.12)	불복 (가해자)
02-3-120 (148)	오OO (2002.5.27)	OO공업(주)	경기 안양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22,912,200원)	2,319,577원 (2002.7.12)	승복
02-3-78 (149)	함OO (2002.4.29)	OO시 OOOO공사 OOOO공사	경기 용인시 도로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및 정신적 피해 (2,000,000원)	340,000원 (2002.7.25)	불복 (가해자)
02-3-104 (150)	이OO (2002.5.20)	OO건설(주)	서울시 서초구 건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220,000,000원)	기각 (2002.7.25)	승복
02-3-93 (151)	소OO외 3명 (2002.5.14)	OO건설(주)	서울시 서대문구 건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30,000,000원)	6,453,420원 (2002.7.25)	불복 (가해자)
02-3-80 02-3-206 (152)	김OO외 32명 (2002.4.29)	전OO 김OO	서울시 은평구 다세대주택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49,669,940원)	30,954,000원 (2002.8.9)	불복 (가해자)
02-3-126 02-3-128 (153)	박OO외 1명 (2002.5.31)	OO지방 국토관리청 OO엔지니어링 (주)	울산시 울산-강동간 도로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양계 피해 (4,709,844,200원)	45,277,530원 (2002.8.23)	불복 (피해자)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2-3-117 (154)	김OO외 4명 (2002.5.27)	OO건설(주)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20,000,000원)	5,036,000원 (2002.8.23)	불복 (가해자)
02-3-95 (155)	장OO외 5명 (2002.5.14)	OO건설(주) OOOO공사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철거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8,500,000원)	4,380,000원 (2002.8.23)	불복 (가해자)
02-3-86 (156)	김OO외 2명 (2002.5.2)	OO건설(주)	울산광역시 남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3,000,000원)	780,000원 (2002.8.23)	승복
02-3-100 (157)	OOO외 111명 (2002.5.14)	(주)OOO	전북 군산시 소음.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1,234,477,087원)	16,114,000원 (2002.9.13)	승복
02-3-123 (158)	OOO (2002.5.27)	OO청 OO사업소 OOOO(주)	전북 군산시 군산-장항 철도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500,000,000원)	1,600,000원 (2002.9.13)	승복
02-3-90 (159)	최OO외 7명 (2002.5.8)	OO종합건설(주)	서울시 광진구 사옥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50,000,000원)	4,231,160원 (2002.9.13)	불복 (가해자)
02-3-135 (160)	김OO외 3명 (2002.6.10)	(주)OO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옥상 가압펌프 모터소음 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45,000,000원)	기각 (2002.9.13)	승복
02-3-102 (161)	OOO (2002.5.20)	OOOO발전(주)	충남 서천군 화력발전소 소각재 매립장 분진으로 인한 표고버섯 및 정신적 피해 (643,440,000원)	39,325,946원 (2002.10.25)	승복
02-3-114 (162)	OOO외 14명 (2002.5.20)	OO종합건설(주) 외 4개사	경기 부천시 나이트클럽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970,000,000원)	12,605,000원 (2002.9.27)	승복
02-3-138 (163)	안OO (2002.6.10)	OOOO	전남 장흥군 군부대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62,000,000원)	2,401,600원 (2002.9.27)	불복 (가해자)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2-3-160 (164)	이OO외 2명 (2002.6.25)	박OO 지OO	경기 남양주시 빌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34,394,000원)	기각 (2002.9.27)	승복
00-3-41 (165)	김OO (2000.9.8)	OOOO공사 OO토건(주)	경기 평택-음성간 고속도로공사장 소음.진동 으로 인한 양계 피해 (485,300,000원)	75,330,480원 (2002.10.11)	불복 (피해자)
02-3-139, 140 233, 234,268, 269,270 (166)	박OO외 2,186명 (2002.6.10)	OOOO공사 OO광역시 OO지방경찰청	울산광역시 남부순환도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0,984,000,000원)	720,500,000원 (2002.10.11)	불복 (가해자)
02-3-153 (167)	강OO외 3명 (2002.6.25)	이OO OOO건설(주)	서울시 강남구 건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5,000,000원)	3,294,000원 (2002.10.11)	승복
02-3-177 (168)	양OO외 6명 (2002.7.8)	OOOO	경기 포천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70,000,000원)	8,186,000원 (2002.10.11)	승복
02-3-107 (169)	OOO외 4명 (2002.5.20)	(주)OO OOOO공사	인천시 동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30,000,000원)	4,910,910원 (2002.10.11)	승복
02-3-170 02-3-237 (170)	노OO외 28명 (2002.7.8)	OO산업(주)	울산광역시 중구 대형 할인점 신축공사장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57,000,000원)	9,400,000원 (2002.10.25)	승복
02-3-161 (171)	김OO외 5명 (2002.6.25)	OOOO OO시	강원 영월군 소방헬기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56,000,000원)	기각 (2002.11.8)	승복
02-3-157 (172)	OOO외 158명 (2002.6.25)	OOOO(주)	서울시 동작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96,525,000원)	59,200,000원 (2002.11.8)	승복
02-3-167 02-3-331 (173)	OOO외 23명 (2002.6.27)	(주)OOOO산업 외 6개사	경북 영월-고령간 도로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05,675,000원)	21,326,000원 (2002.11.8)	승복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2-3-168 (174)	오OO외 235명 (2002.6.7)	(주)OO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파트공사장소음.진동 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615,000,000원)	113,210,000원 (2002.11.27)	불복 (가해자)
02-3-175 (175)	이OO외 113명 (2002.7.8)	(주)OOO개발	서울시 은평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385,000,000원)	49,050,000원 (2002.11.22)	불복 (가해자)
02-3-189 (176)	임OO외 1,112명 (2002.7.24)	OOOO공사 OO토건(주) OO시	경기 하남시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855,100,000원)	379,500,000원 (2002.12.13)	불복 (가해자)
02-3-215 02-3-371 (177)	이OO외 11명 (2002.7.29)	(주)OO산업건설	경기 부천시 소사구 빌라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3,500,000원)	7,920,000원 (2002.12.13)	승복
02-3-242 (178)	OO건설(주) (2002.8.28)	OOO외 7명	전북 부안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226,000,000원)	7,771,690원 (2002.1.13)	승복
02-3-213 (179)	김OO외 63명 (2002.7.29)	OOOO OO건설(주)	전남 나주시 철도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이주보상 요구 (1,092,100,000원)	36,361,000원 (2002.12.27)	불복 (가해자)
02-3-202 02-3-258 (180)	박OO외 116명 (2002.7.24)	OO건설(주)	서울시 성북구 아파트공 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080,613,600원)	90,044,000원 (2002.12.27)	불복 (피해자)
02-3-188 (181)	OOO외 16명 (2002.7.24)	(주)OOO공업 OO산업개발(주)	서울시 강서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64,790,000원)	10,340,000원 (2002.12.27)	승복
02-3-36 (182)	김OO (2002.5.2)	OO실업(주)	인천광역시 서구 주물공장 악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210,815,000원)	생활환경보전 조치 (2002.6.27)	승복
02-3-18 (183)	OOO외 1명 (2002.1.28)	OO산업(주)	경기 남양주시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49,763,000원)	1,000,000원 (2002.5.10)	승복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2-3-122 (184)	조OO외 4명 (2001.11.28)	OOOOO(주)	충남 아산시 공장 유해물질.소음.매연으로 인한 과수 및 정신적 피해 (235,700,000원)	29,286,878원 (2002.4.25)	승복
02-3-72 (185)	전OO외 3명 (2002.4.24)	OO아크릴 외 5개사	광주광역시 남구 광고사 약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94,200,000원)	2,640,000원 (2002.6.27)	승복
02-3-84 (186)	김OO (2002.5.2)	OO실업(주)	인천광역시 서구 공장 산업폐기물 소각 대기오염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210,815,000원)	생활환경보전 조치 (2002.6.27)	승복
02-3-63 (187)	조OO (2002.4.9)	(주)OO코리아	충남 보령시 도계장 수질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양계 피해 (348,809,000원)	77,323,873원 (2002.7.12)	불복 (가해자)
02-3-67 (188)	박OO외 1,601명 (2002.1.12)	OO제관(주) 외 5개사	경기 화성시 공장 매연.약취.소음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2,811,667,000원)	86,707,034원 (2002.7.12)	승복
02-3-185 (189)	OOO외 1명 (2002.7.12)	OOOO공사	서울시 성동구 정화조 약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75,500,000원)	약취방지대책 강구 (2002.12.13)	승복
02-3-178 (190)	김OO외 1명 (2002.6.17)	OOOO(주) 외 8개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 공단 매연.약취.유해가스 로 인한 양봉 피해 (27,700,000원)	기각 (2002.12.13)	승복
02-3-120 (191)	유OO (2000.10.25)	최OO 이OO	경기 남양주 주유소 기름 유출로 인한양식장 피해 (32,850,000원)	13,900,000원 (2002.5.23)	승복
02-3-37 (192)	OOO외 7명 (2002.3.7)	OO시	충남 논산시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영농 및 정신적 피해 (97,000,000원)	14,730,000원 (2002.6.12)	승복
02-3-54 (193)	김OO외 2명 (2002.3.29)	손OO외 2명	경북 칠곡군 목욕탕 하수 및 주차장 소음.먼지. 건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46,000,000원)	기각 (2002.6.27)	승복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2-3-13 (194)	이OO외 25명 (2002.1.24)	OO시	전남 순천시 쓰레기 매립지 침출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538,264,000원)	57,756,000원 (2002.6.27)	승복
02-3-199 (195)	허OO외 22명 (2002.7.24)	(주)OO건설	서울 동대문구 빌라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35,198,000원)	11,073,120원 (2003.1.10)	승복
02-3-191 (196)	OOO (2002.7.24)	OO건설(주)	서울 강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30,000,000원)	730,000원 (2003.1.24)	승복
02-3-209 (197)	허OO외 21명 (2002.7.29)	OO건설(주)	서울시 관악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45,000,000원)	11,700,000원 (2003.2.7)	불복 (가해자)
02-3-223 02-3-267 03-3-34 03-3-55 (198)	OOO외 555명 (2002.2.13)	OOO건설(주) OOO시	서울 성북구 지하터널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286,809,000원)	31,912,400원 (2003.2.21)	승복
02-3-295 (199)	정OO외 172명 (2002.9.24)	OOOO	서울 김포공항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346,000,000원)	78,359,300원 (2003.3.7)	불복 (가해자)
02-3-290 (200)	김OO외 1,230명 (2002.9.16)	OOOO시 OOOO공사	서울 노원구 지하철 곡선구간 철도소음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2,495,500,000원)	255,887,366원 (2003.3.7)	불복 (가해자)
02-3-285 (201)	김OO외 22명 (2002.9.16)	OO주택건설(주) OO구청	서울 성북구 연립신축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15,000,000원)	8,565,620원 (2003.3.7)	승복
02-3-294 (202)	OOO (2002.9.24)	OOO OOO공사 OOO(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재산 피해 및 방음시설 설치요구 (700,000,000원)	기각 (2003.3.7)	승복
02-3-272 (203)	양OO외 54명 (2002.9.7)	(주)OO주택	서울 구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155,000,000원)	24,061,970원 (2003.3.7)	불복 (가해자)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2-3-279 (204)	이OO외 6명 (2002.9.11)	(주)OO건설	서울 강남구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35,000,000원)	5,897,640원 (2003.3.21)	승복
02-3-260 (205)	OOO외 2명 (2002.9.2)	OO건설(주)	서울 관악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25,000,000원)	1,348,000원 (2003.3.21)	승복
02-3-281 (206)	한OO외 613명 (2002.9.11)	OO산업(주)	서울 도봉구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368,400,000원)	102,356,150원 (2003.4.11)	불복 (가해자)
02-3-360 (207)	OOO외 165명 92002.11.7)	OO건설(주)	서울 성북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775,500,000원)	5,582,400원 (2003.5.9)	승복
02-3-369 (208)	김OO외 39명 (2002.11.13)	OO건설(주)	서울 은평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음시설 및 정신적 피해 (604,400,000원)	16,271,392원 (2003.5.22)	불복 (피해자)
02-3-358 (209)	정OO외 9명 (2002.11.4)	(주)OO종합건설	서울 관악구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30,000,000원)	4,032,000원 (2003.6.13)	승복
02-3-374 (210)	이OO (2002.11.19)	OOOO공사	서울 광진구 변전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2,000,000원)	기각 (2003.7.11)	승복
02-3-401 (211)	서OO외 3명 (2002.12.9)	OO(주)	서울 중랑구 아파트 지하 기계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100,000,000원)	기각 (2003.8.8)	승복
03-3-3 (212)	(주)OO건설	최OO 외 13명	서울 용산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9,555,000원)	9,555,000원 (2003.9.26)	승복
03-3-26 (213)	박OO (2003.1.21)	십OO	서울 관악구 건물 신축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33,002,600원)	14,000,000원 (2003.10.10)	불복 (가해자)
03-3-59 (214)	OOO외 14명 (2003.2.25)	(주)OO	서울 성북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50,000,000원)	10,911,590원 (2003.11.14)	승복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3-3-69 (215)	김OO외 12명 (2003.2.25)	(주)OOO건설	서울 영등포구 빌라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29,000,000원)	2,166,480원 (2003.11.14)	승복
03-3-107 (216)	이OO외 2명 (2003.3.18)	OO시	서울 노원구 고속화도로 차량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35,000,000원)	기각 (2003.11.28)	승복
03-3-168 (217)	홍OO외 37명 (2003.4.21)	OO공사 외 3개사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24,600,000원)	661,980원 (2003.12.12)	승복
03-3-144 (218)	호텔OO (2003.4.7)	OO건설(주) 외 1개사	서울 강남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25,000,000원)	기각 (2003.12.23)	승복
03-3-93 (219)	OOO외 3명 (2003.3.6)	O건설(주)	서울 서초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385,000,000원)	3,458,940원 (2003.12.23)	승복
02-3-308 (220)	OOO (2002.10.2)	OO산업(주) 외 1개사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50,000,000원)	365,092원 (2003.3.21)	승복
02-3-363 02-3-380 (221)	손OO외 2,354명 (2002.11.19)	(주)OO개발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2,009,521,660원)	320,943,000원 (2003.6.13)	불복 (가해자)
02-3-428 03-3-128 03-3-250 (222)	김OO외 952명 92002.12.24)	(주)OO개발 (주)OOO OO청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347,100,000원)	104,442,390원 (2003.8.22)	승복
03-3-12 (223)	박OO외 679명 (2003.1.9)	OO건설(주) OOOO시	부산 해운대구 도시 고속도로 차량소음. 진동.먼지로 인한 방음시설 및 정신적피해 (3,400,000,000원)	111,764,290원 (2003.9.5)	불복 (가해자)
02-3-429 (224)	차OO외 933명 (2002.12.24)	OO건설(주) OOOO시 OO구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차량소음.먼지로 인한 방음시설 및 정신적 피해 (2,802,000,000원)	197,721,390원 (2003.9.5)	불복 (가해자)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2-3-418 (225)	김OO외 9명 (2002.12.17)	OO OO건설(주)	부산 남구 해군관사 및 복지시설 공사장소음. 진동 및 차량면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1,016,200,000원)	기각 (2003.9.26)	승복
02-3-386 (226)	문OO (2002.11.26)	유OO (주)OO	대구 동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음시설 및 정신적 피해 (5,000,000원)	기각 (2003.7.11)	승복
02-3-291 (227)	김OO외 676명 (2002.9.16)	OO교회 OO산업개발(주)	인천 남구 교회교육관 공사장 소음.진동.면지 인한 정신적 피해 (455,650,000원)	143,770,000원 (2003.2.21)	불복 (피해자)
02-3-361 03-2-214 (228)	OOO외 12명 (2002.11.7)	(주)OO개발	인천 부평구 건물 신축 공사장 소음.진동 .면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62,120,000원)	8,846,460원 (2003.5.22)	승복
03-3-2 (229)	OOO외 2명 (2003.1.7)	OOO	광주 광산구 주차장 소음. 진동으로인한 정신적 피해 (10,000,000원)	기각 (2003.7.25)	승복
03-3-84 (230)	정OO (2003.3.6)	모OO OOO청 OOOOOO(주)	대전 유선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55,000,000원)	3,030,852원 (2003.12.23)	승복
02-3-276 (231)	이OO외 3명 (2003.3.21)	OO건설(주)	울산 남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3,000,000원)	752,250원 (2003.3.21)	승복
02-3-248 (232)	이OO외 287명 (2002.8.30)	OO종합건설(주)	경기 남양주군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면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576,000,000원)	36,210,000원 (2003.1.24)	불복 (가해자)
02-3-230 (233)	전OO외 10명 (2002.8.20)	OO토건(주)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면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55,000,000원)	10,876,000원 (2003.2.7)	불복 (가해자)
02-3-257 (234)	박OO외 195명 (2002.8.31)	OO산업 OO재건축조합	경기 구리시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면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540,800,000원)	39,578,380원 (2003.3.21)	승복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2-3-293 (235)	김OO외 19명 (2002.9.24)	OO산업(주) (주)OOOO개발 외 4개사	경기 화성시 채석장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58,500,000원)	48,618,608원 (2003.3.21)	불복 (가해자)
02-3-313 (236)	오OO외 99명 (2002.10.10)	OOOO개발(주)	경기 광주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건물보수 및 정신적 피해 (997,892,000원)	155,663,921원 (2003.4.24)	불복 (가해자)
02-3-338 (237)	고OO외 507명 (2002.10.22)	OOOO공사 OOOO공사	경기 부천시 외곽순환도로 차량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방음시설 및 정신적 피해 (508,000,000원)	141,342,760원 (2003.5.9)	불복 (가해자)
02-3-311 (238)	OOO외 51명 (2003.10.10)	OO건설(주)	경기 성남시 건물 신축 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300,000,000원)	43,019,600원 (2003.5.22)	승복
02-3-397 (239)	OOO외 3명 (2002.12.4)	OO건설(주)	경기 구리시 오피스텔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15,000,000원)	2,688,040원 (2003.7.25)	승복
02-3-412 (240)	(사)OOOOO O연합회 (2002.12.12)	OO목장 최OO OO목장 김OO	경기 여주군 건물신축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가축및 정신적 피해 (66,249,598원)	66,249,598원 (2003.8.22)	승복
03-3-83 (241)	OOO외 215명 (2003.3.3)	OO건설(주)	경기 파주시 아파트단지내 정회시설 소음.진동.악취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371,000,000원)	기각 (2003.10.24)	승복
03-3-57 (242)	홍OO외 294명 (2003.2.18)	OOOO공사 OOOO공사 (주)OO OO시	경기 구리시 고속도로 차량소음.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방음시설 설치 요구 (297,000,000원)	13,911,610원 (2003.10.24)	불복 (가해자)
03-3-97 03-3-245 (243)	OOO (2003.3.12)	OOO	경기 성남시 교회 및 호프집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15,000,000원)	기각 (2003.12.23)	승복
02-3-241 (244)	박OO외 2명 (2002.8.28)	OO개발(주)	강원 영월군 석회석광산 소음.진동으로인한 이주비 및 정신적 피해 (60,000,000원)	기각 (2003.1.9)	승복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2-3-251 (245)	OO건설(주) (2002.8.30)	조OO외 2명	강원 영월군 터널공사장 소음.진동으로인한 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03,025,000원)	기각 (2003.2.7)	승복
03-3-30 (246)	OOO외 11명 (2003.127)	(주)OO골재	강원 동해시 골재채취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65,000,000원)	기각 (2003.10.10)	승복
03-3-48 (247)	강OO외 234명 (2003.2.11)	(주)OO성원 OOOO공사	강원 원주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130,000,000원)	53,991,490원 (2003.11.14)	불복 (가해자)
02-3-243 (248)	엄OO (2002.8.28)	OO산업사 OO군	충북 제천시 광산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류폐사,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100,000,000원)	6,075,000원 (2003.1.24)	불복 (가해자)
02-3-286 (249)	OOO (2002.9.16)	OO공사 OO건설(주)	충북 괴산군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이전 및 양계피해 (163,096,000원)	기각 (2003.2.7)	승복
02-3-376 (250)	OOO (2002.11.19)	OO산업(주)	충북 옥천군 고속철도터널 공사장 소음.진동으로인한 건물, 영업, 어류폐사 피해 (95,034,300원)	2,585,280원 (2003.6.13)	승복
03-3-99 (251)	유OO외 4명 (2002.8.10)	OO산업(주) (주)OO토건	충북 옥천군 도로터널 공사장 소음.진동으로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피해 (62,000,000원)	기각 (2003.12.12)	승복
02-3-420 (252)	(주)OO (2002.12.17)	OOO	충남 서천군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301,799,255원)	24,500,000원 (2003.8.8)	승복
03-3-23 (253)	양OO (2003.1.16)	OO건설(주) OO건설(주)	충남 공주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인한 가축, 건물, 정신적 피해 (38,000,000원)	2,206,600원 (2003.9.26)	승복
03-3-60 (254)	이OO (2003.2.25)	OOOO개발(주)	충남 서천군 고속도로 터널공사장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301,799,255원)	39,620,570원 (2003.11.28)	불복 (피해자)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2-3-318 (255)	OOOO청 (2002.10.10)	OOO외 2명	전북 고창군 도로공사장 수질.소음.진동으로 인한 양어장 피해 (0원)	용역결과에 따라 배상 (2003.2.7)	승복
02-3-349 (256)	최OO (2002.10.28)	(유)OO OOOO공사	전북 부안군 용수로 건설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80,888,820원)	14,373,983원 (2003.5.22)	불복 (가해자)
02-3-370 (257)	OOO외 11명 (2002.11.13)	OO공사 (주)OO	전북 군산시 농수로 터널발파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69,000,000원)	3,005,000원 (2003.5.22)	승복
03-3-66 (258)	김OO (2003.2.25)	황OO	전북 완주군 개사육장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5,000,000원)	기각 (2003.9.5)	승복
03-3-47 (259)	송OO외 9명 (2003.2.11)	OOO OO시	전북 군산시 벽돌공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205,000,000원)	4,060,920원 (2003.10.24)	승복
02-3-221 02-3-364 (260)	김OO외 2,011명 (2002.8.1)	OO종합건설(주)	전남 여수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2,017,000,000원)	320,360,000원 (2003.1.9)	불복 (가해자)
02-3-335 (261)	OOO (2002.10.22)	OO건설(주)	전남 순천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매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126,000,000원)	10,729,000원 (2003.4.11)	승복
02-3-355 (262)	OOO외 2명 (2002.11.4)	OO산업(주)	전남 여수시 하수처리시설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25,885,000원)	6,628,000원 (2003.6.13)	승복
03-3-27 03-3-289 (263)	김OO외 75명 (2003.1.21)	OO건설(주) OO시	전남 목포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400,110,000원)	64,602,000원 (2003.9.5)	불복 (가해자)
02-3-273 (264)	이OO (2002.9.7)	OOOO공사 OO건설(주) (주)OO개발	경북 칠곡군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돈피해 (76,250,000원)	52,975,000원 (2003.2.21)	불복 (가해자)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3-3-108 (265)	윤OO외 3명 (2003.3.18)	(주)OO OO도	경남 사천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계, 정신적 피해 및 이전요구 (284,335,000원)	22,173,236원 (2003.11.14)	불복 (피해자)
03-3-71 (266)	윤OO외 238명 (2003.2.25)	OO시	전북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처리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99,185,000원)	기각 (2003.11.14)	불복 (피해자)
02-3-217 02-3-327 02-3-328 (267)	이OO외 23명 (2002.8.1)	(주)OO환경 OO양행(주) OO시	경북 경주시 농공단지 악취.먼지등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228,568,000원)	34,179,224원 (2003.1.9)	승복
02-3-298 (268)	OOO (2002.10.1)	(주)OO석유	경남 함안군 주유소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작물 피해 (7,885,585원)	1,762,231원 (2003.4.25)	승복
02-3-262 (269)	OOO (2003.9.2)	OOO	경남 고흥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어류폐사 피해 (30,000,000원)	8,000,000원 (2003.1.24)	승복
03-3-152 (270)	박OO (2003.4.9)	(주)OO건설	경북 경주시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건물, 파수 및 정신적 피해 (112,200,000원)	10,394,226원 (2004.1.16)	승복
03-3-164 03-3-165 (271)	OOO (2003.4.14)	OO시 OOOO공사 OOOO공사 OO건설(주)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소음.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2,000,000원)	340,000원 (2004.4.9)	불복 (가해자)
03-3-167 03-3-184 (272)	최OO외 3명 (2003.4.21)	OO건설(주) OO개발(주)	경북 영천시 대구-포항간 도로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양봉, 건물 및 정신적 피해 (65,477,440원)	6,229,030원 (2004.1.30)	승복
03-3-171 (273)	OOO외 5명 (2003.4.21)	OO개발(주)	전남 함평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88,000,000원)	2,226,660원 (2004.1.16)	승복
03-3-172 (274)	OOO외 33명 (2003.4.21)	OO건설(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36,100,000원)	22,176,330원 (2004.2.27)	승복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3-3-180 (275)	이OO외 2명 (2003.4.23)	OOOOOO 관리청 OOOO개발(주)	경기 포천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564,756,000원)	9,779,250원 (2004.2.23)	불복 (피해자)
03-3-187 (276)	OOO외 126명 (2003.4.25)	OO종합건설(주)	경기 용인시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18,400,000원)	기각 (2004.4.23)	승복
03-3-191 (277)	정OO외 595명 (2003.5.6)	OO건설(주) OOOO시 OO구 OO청	서울 중랑구 경춘선 철도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445,300,000원)	28,680,785원 (2004.4.9)	불복 (가해자)
03-3-192 (278)	OOO외 338명 (2003.5.6)	(주)OO종합건설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203,400,000원)	40,802,040원 (2004.2.27)	승복
03-3-196 (279)	박OO (2003.5.12)	OO건설(주)	전북 완주군 하천개수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양돈피해 (49,830,000원)	21,336,660원 (2004.2.13)	불복 (가해자)
03-3-204 (280)	OOO (2003.5.12)	OO산업(주)	서울 성동구 아파트 채건축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피해 (604,150,000원)	19,197,420원 (2004.2.13)	승복
03-3-212 (281)	최OO외 34명 (2003.6.3)	OOOO건설(주) OOOO건설(주) OO시장(주)	서울 중랑구 주택신축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07,500,000원)	29,375,389원 (2004.3.12)	불복 (가해자)
03-3-213 (282)	김OO외 12명 (2003.5.15)	OO종합건설(주)	경북 영덕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 및 수질 오염으로 인한 양봉피해 (532,099,700원)	17,524,530원 (2004.2.13)	승복
03-3-221 228, 229, 272 (283)	OOO외 15명 (2003.5.26)	OO토건(주) OO시	전남 여수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95,000,000원)	기각 (2004.2.27)	승복
03-3-226 (284)	OOO외 4명 (2003.5.30)	OOOO(주) 건설부문	서울 성북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6,479,000원)	1,734,050원 (2004.3.12)	승복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3-3-235 (285)	OO재단 (2003.6.3)	OOOO공사	대구 서구 구마고속도로 차량소음.진동매연으로 인한 정신적 및 예상 피해 (51,950,990원)	51,950,990원 (2004.9.10)	불복 (피해자)
03-3-239 (286)	OOO외 5명 (2003.6.3)	OO시	서울 마포구 강변도로 차량소음.진동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11,000,000원)	2,220,000원 (2004.3.26)	승복
03-3-240 (287)	김OO외 355명 (2003.6.3)	(주)OO OOOO재건축 조합	서울 마포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51,400,000원)	46,900,280원 (2004.2.27)	불복 (가해자)
03-3-252 (288)	정OO (2003.3.16)	OO시 OO건설(주) 외 2개사	전남 여수시 도로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66,000,000원)	기각 (2004.5.28)	승복
03-3-255 (289)	정OO (2003.6.16)	OOOOOO 관리청	전남 영광군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40,000,000원)	기각 (2004.3.26)	불복 (피해자)
03-3-267 (290)	OOO외 1,018명 (2003.6.26)	OO건설(주)	경기 부천시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254,750,000원)	149,858,230원 (2004.3.26)	승복
03-3-269 (291)	OOO외 1명 (2003.5.20)	OO시 OO산업(주)	대전시 동구 지하철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 (80,000,000원)	6,878,080원 (2004.3.26)	승복
03-3-271 (292)	OOO (2003.6.26)	OO공사 OOOOO(주) 외 1개사	충남 예산군 대전-당진간 도로공사장소음.진동.먼지 로 인한 한우 피해 (103,000,000원)	20,582,190원 (2004.4.9)	승복
03-3-273 (293)	OOO외 336명 (2003.7.2)	OO건설(주)	경기 의정부시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 (321,000,000원)	46,679,710원 (2004.4.9)	승복
03-3-284 (294)	진OO외 1,091명 (2003.8.11)	OOOO공사	경기 파주시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3,394,594,100원)	122,324,380원 (2004.5.14)	불복 (가해자)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3-3-285 (295)	OOO외 137명 (2003.8.11)	OOO공사	서울 송파구 외곽순환도로 차량소음 및 건축폐기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389,000,000원)	기각 (2004.5.14)	승복
03-3-286 (296)	이OO (2003.8.11)	OOOOOO 관리청	전남 함평군 함평-영광간 도로공사장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143,000,000원)	기각 (2004.5.14)	불복 (피해자)
03-3-290 03-3-301 03-3-302 (297)	OOO외 109명 (2003.8.25)	(주)OOOO (주)OO종합건설	서울 동대문구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520,800,000원)	26,744,790원 (2004.4.9))	승복
03-3-291 (298)	OOO외 2명 (2003.8.25)	OOOO(주) 외 1개사	경북 경산시 대구-부산간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및 일조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0,000,000원)	기각 (2004.4.23)	승복
03-3-292 (299)	OOO외 179명 (2003.9.1)	OO건설(주) (유)OOO건설	부산 북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289,400,000원)	20,606,640원 (2004.5.14)	승복
03-3-297 (300)	OOO외 129명 (2003.9.4)	(주)OO주택 OO건설(주)	경남 양산시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250,000,000원)	41,373,780원 (2004.5.28)	승복
03-3-298 03-3-316 (301)	이OO외 1,334명 (2003.9.4)	(주)OO건설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008,900,000원)	92,826,910원 (2004.5.14)	불복 (가해자)
03-3-299 (302)	OOO외 959명 (2003.9.4)	OOO 외 2개 기관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960,000,000원)	3,029,060원 (2004.5.28)	승복
03-3-300 (303)	백OO외 798명 (2003.9.15)	OO시 OOOO공사 (주)OO	경기 의왕시 외곽순환도로 차량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방음시설 요구 (939,617,250원)	39,362,735원 (2004.4.23)	불복 (가해자)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3-3-311 (304)	김OO (2003.9.29)	(주)OO건설 OO개발(주)	경기 안성-양성간 도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280,344,000원)	11,564,800원 (2004.6.11)	승복
03-3-312 (305)	OOO외 1명 (2003.9.29)	OO지사 (유)OO건설	전북 완주군 구이-금산간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돈 및 정신적 피해 (410,000,000원)	27,453,110원 (2004.5.28)	승복
03-3-313 (306)	OOO외 634명 (2003.9.29)	OO건설(주)	서울 관악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253,320,000원)	기각 (2004.6.28)	승복
03-3-317 (307)	OOO외 165명 (2003.10.13)	OO메이저(주) OOENC(주) OO지역 주택조합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80,000,000원)	30,009,860원 (2004.5.14)	승복
03-3-319 (308)	이OO외 992명 (2003.10.16)	OOOO건설(주)	부산 기장군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917,000,000원)	112,029,930원 (2004.6.11)	불복 (가해자)
03-3-320 (309)	OO목장 김OO (2003.10.16)	OO지방국토 관리청 (주)OO중공업	경기 화성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재산, 정신적 및 이전요구 (1,674,439,000원)	41,086,892원 (2004.6.25)	승복
03-3-324 (310)	OOO외 68명 (2003.10.21)	OO지방국토 관리청 OO건설(주)	경남 진해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227,580,000원)	27,782,100원 (2004.7.9)	승복
03-3-325 04-3-10 04-3-50 (311)	OOO외 68명 (2003.10.21)	OO시 OO건설(주) OO건설(주)	서울 동작구 도로 터널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132,000,000원)	45,820,000원 (2004.7.9)	승복
03-3-331 (312)	이OO외 50명 (2003.11.11)	OO종합건설(주)	경기 파주시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05,000,000원)	14,533,470원 (2004.8.13)	승복
03-3-332 (313)	김OO (2003.11.11)	OO시	경기 안양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10,000,000원)	기각 (2004.7.23)	불복 (피해자)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2-3-334 (314)	(주)OO건설 (2003.11.18)	OOO외 2명	경남 합천군 초계-적중간 도로공사장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돈피해 (1,445,410,000원)	7,081,180원 (2004.6.25)	승복
03-3-342 (315)	박O외 57명 (2003.12.15)	(자)OO주택	서울 도봉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58,000,000원)	9,227,600원 (2004.8.13)	승복
04-3-16 (316)	OOO외 981명 (2004.2.5)	OO건설(주)	남양주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379,000,000원)	15,305,780원 (2004.9.23)	승복
04-3-17 (317)	OOO외 11명 (2004.2.5)	OOO OO건설(주) OO토건(주)	서울 서대문구 공동 주택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및 정신적 피해 (160,000,000원)	5,163,360원 (2004.9.23)	승복
04-3-23 04-3-31 04-3-37 (318)	OOO외 8명 (2004.2.5)	OO토건(주) OO시	전남 여수시 도로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90,000,000원)	1,553,650원 (2004.9.10)	승복
04-3-24 (319)	OOO (2004.2.11)	OOOOOO(주) OO아파트 재개발조합	울산 북구 아파트 공사장 먼지로 인한농작물 피해 (224,700,000원)	기각 (2004.9.23)	승복
04-3-25, 82,83,84, 85,86,87, 88,89 (320)	OOO외 161명 (2004.2.17)	OOOOOO 입주자대표회의	부산 북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137,020,670원)	9,980,000원 (2004.7.23)	승복
04-3-33 (321)	OOO외 400명 (2004.2.25)1	OO공사	강원 원주시 고속도로 차량소음으로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770,240,000원)	소음방지대책 강구 (2004.11.12)	승복
04-3-35 (322)	OOO외 1명 (2004.3.4)	(주)OOOO OOOO(주)	경기 이천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284,260,000원)	51,691,100원 (2004.10.8)	승복
04-3-54 (323)	임OO (2004.5.7)	OOOOOO 관리청 OO공업(주)	전남 나주시 금천-왕곡간 도로공사장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젖소 및 정신적피해 (89,996,000원)	17,764,850원 (2004.10.22)	불복 (가해자)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4-3-58 (324)	OOO외 1,433명 (2004.5.14)	(주)OO OO재건축조합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430,000,000원)	117,886,450원 (2004.11.26)	승복
04-3-60 (325)	OOO외 1,714명 (2004.5.19)	OO시 OO공사 외 2개사	경기 성남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및 방음시설 요구 (3,137,000,000원)	기각 (2004.12.10)	승복
04-3-62 (326)	조OO (2004.5.25)	OO건설	경북 안동시 도로공사장 먼지로 인한 버섯 및 정신적 피해 (152,000,000원)	19,571,810원 (2004.10.22)	승복
04-3-65, 66, 81, 117 (327)	OOO외 1,257명 (2004.6.1)	OO OO(주)	서울 구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2,234,000,000원)	217,229,740원 (2004.11.12)	승복
04-3-69 (328)	이OO (2004.6.14)	OOOOOO공단	경기 화성시 고속철도공사 및 운행철도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돈비, 정신적 피해 (866,055,280원)	33,438,440원 (2004.12.23)	승복
04-3-74 04-3-111 (329)	OOO외 319명 (2004.6.30)	OOOO공사 OO개발(주) 외 4개사	경남 양산시 택지토취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872,640,000원)	기각 (2004.12.10)	승복
04-3-79 (330)	OOO외 1명 (2004.7.12)	OO군 OO종합건설(주)	경남 함안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육견 피해 (48,200,000원)	5,037,500원 (2004.12.23)	승복
04-3-118 (331)	OOO외 446명 (2007.8.27)	OO(주)	서울 노원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447,000,000원)	10,160,390원 (2004.12.10)	승복
03-3-125 (332)	OO전자 외 5개사 (2003.3.26)	OO설업(주) 외 5개사	경기 안산시 공장 폐수 처리장악취.유해가스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549,043,000원)	45,066,030원 (2004.9.10)	불복 (가해자)
03-3-293 (333)	여OO외 1명 (2003.9.1)	이OO	충북 보은군 양계장 소음.악취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164,188,000원)	기각 (2004.4.23)	불복 (피해자)



사건번호 (일련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신청내용 (신청액)	재정결정 (재정일)	승복 여부
04-3-15 (334)	OOO (2004.2.2)	OO군	전남 완도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매연.악취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91,866,050원)	5,596,740원 (2004.10.22)	승복
03-3-322 (335)	김OO외 27명 (2003.10.16)	OOOO공사	경남 진주시 고속도로 교량 일조권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316,173,000원)	5,034,298원 (2004.7.9)	불복 (가해자)
04-3-11 (336)	신OO외 17명 (2004.1.27)	OOOO공단	부산 강서구 지하철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304,300,000원)	61,663,800원 (2004.10.8)	불복 (피해자)
04-3-32 (337)	황OO (2004.2.23)	OOOO공사	경북 경산시 대구-포항간 도로교량 일조권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152,800,000원)	3,700,567원 (2004.8.13)	불복 (가해자)
04-3-59 (338)	OOO외 2명 (2004.5.18)	OOOOOOOOO (주)	경남 밀양시 고속도로 상판설치에 따른 일조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797,935,220원)	35,929,660원 (2004.11.26)	승복
03-3-173 (339)	이OO외 2명 (2003.4.21)	OOO도 OO종합건설(주)	전남 고흥군 득량만바다 정화작업시 발생한 해양오염으로 인한 양식장 및 정신적 피해 (1,174,500,000원)	492,737,792원 (2004.9.10)	불복 (가해자)
03-3-333 (340)	심OO (2003.11.11)	OO토건(주) OOOOOO 관리청	강원 원주시 도로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72,171,000원)	기각 (2004.8.13)	불복 (피해자)
04-3-36 (341)	송OO (2004.3.4)	OO시	전북 정읍시 하수처리장 오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38,680,000원)	14,987,578원 (2004.10.22)	승복
04-3-29 (342)	OOO (2004.2.19)	OO건설(주) OO시	경기 용인시 아파트 실내오염물질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10,000,000원)	3,027,930원 (2004.6.11)	승복

## 2.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

### 가.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 (1) 소음피해 배상기준

단위: 천원

피해기간	소음도(dB(A))					
	70-74	75-79	80-84	85-89	90-94	95이상
1개월이내	70	140	240	350	455	590
2개월이내	95	190	330	475	625	805
3개월이내	110	220	380	550	720	930
4개월이내	140	245	405	590	755	955
5개월이내	160	260	420	600	765	975
6개월이내	170	280	440	610	780	990
9개월이내	200	310	470	640	810	1,020
1년이내	230	340	500	670	840	1,050
1년 6개월이내	290	400	560	730	900	1,110
2년이내	350	460	620	790	960	1,170
2년 6개월이내	410	520	680	850	1,020	1,230
3년이내	470	580	740	910	1,080	1,290

1. 위 기준표는 1인당 피해 배상액임
2. 소음도는 실측치 또는 추정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최대소음도를 기준으로 함
3. 피해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실제 피해를 입은 기간임
4. 소음·진동, 먼지, 악취 등 2가지 이상의 피해원인이 복합된 경우에는 주된 피해원인의 배상기준에 10~50%를 가산함

<참고1> 공종별 건설기계의 작동원리에 따른 over-all 소음도

공사종류	기계명		작동 원리	O.A. 소음도(dB(A))				측정 대수	비고	
				7m이격		15m이격				
				범 위	평균	범 위	평균			
지반정지 공사	굴삭기		유압식	81/94	86	75/85	79	14	작업중	
	"		"	72/88	82	65/82	76	41	High Idle 時	
	불도우저		"	80/90	84	73/84	78	14	작업중	
	로우더		"	70/94	87	69/84	80	9	"	
	그레이더		"	78/90	83	69/82	77	8	"	
	다짐 기계	로올러		정압식	74/90	81	67/85	75	17	비 진동식
		"		원심식	76/86	82	69/81	74	15	진동식
람마, 콤팩터		충격식	78/80	79	-	-	2	휴대용		
범면다짐기		"	-	90	-	-	1	굴삭기에 장착		
기초공사	천공 기계	착암기		공압식	-	96	-	91	1	휴대용
		"		공압식	88/96	91	84/88	86	5	차량에 장착
		"		유압식	93/95	94	81/91	87	5	차량에 장착
		드릴마스터		유·공압*	88/93	90	84/87	85	4	사토지반 천공
		"		"	94/98	96	87/91	89	(3)	암반 천공
		어-스오거		전동식	75/81	78	70/77	74	2	사토지반 천공
		RCD**		전동식	-	88	-	-	1	암반 천공
	항타 기계	항타기		드림식	93/95	94	88/91	89	4	con-pile*** 打入
		"		디젤식	99/110	103	96/101	99	8	"
		"		"	106/108	107	100/103	102	3	천공후 H-빔 打入
		"		유압식	101/104	103	92/93	93	2	con-pile, 一般地
		"		"	89/92	91	83/85	84	2	con-pile, 軟弱地
		"		"	96/99	97	90/92	91	4	보조강관, 軟弱地
		항타항발기 드릴마스터		진동식 공압식	80/91 103/107	85 105	75/86 99/100	80 100	3 2	H-빔 抗拔 강관 打入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프랜트		-	-	82	-	80	1	프랜트 1조	
	콘크리트믹서		-	87/95	90	-	-	3	믹서에서 1m위치	
	콘크리트펌프카		유압식	80/88	84	72/81	78	3		
포장공사	아스팔트프랜트		-	79/92	85	76/86	80	6	프랜트 1조	
	아스팔트피니셔		-	76/83	80	71/77	74	4	작업중	
파괴 및 해체공사	브레이커		유압식	90/103	98	84/97	91	11	작업중	
	압쇄기		"	81/84	82	76/80	78	3	"	
기타	공기압축기		스크류식	80/92	84	70/85	76	5	디젤엔진	
	발동발전기		-	82/87	85	74/81	78	7		
	콘크리트 절단기		엔진식	91/95	93	85/86	86	2		
	쇄석기		쵸크라샤	-	90	-	83	1		
	지게차		유압식	-	81	-	73	1		

1. \* 유압모터+공기해머식, \*\* REVERSE CIRCULATION DRILL, \*\*\* concrete pile
2. ( )는 동일기계를 대상으로 작업조건에 따라 분류한 대수임

<참고2> 차종별 소음도

차종	측정거리(m)	차속(km/h)	소음도(dB(A))
화물	6.75	68	89.9
5톤	6.75	85	84.5
2.5톤	6.75	74	80.5
11톤	6.75	72	89.5
대형트럭	6.75	49	84.5
화물	10.25	78	84.5
투럭	10.25	94	92.1
탱크로리	10.25	94	86.5
8톤	10.25	77	84.8
8톤	10.25	87	88.6
11.5톤	10.25	64	81.8
대형트럭	10.25	71	83.2
덤프트럭	6.75	59	91.8
덤프트럭	6.75	71	86.0
덤프트럭	6.75	62	87.3
덤프트럭	6.75	73	91.5
덤프트럭	6.75	78	91.7
덤프트럭	6.75	88	90.7
덤프트럭	10.25	74	88.0
덤프트럭	10.25	85	94.4
덤프트럭	10.25	75	84.7
덤프트럭	10.25	87	91.4
덤프트럭	10.25	81	88.6
레미콘	6.75	62	86.7
레미콘	6.75	62	86.4
레미콘	6.75	72	90.7
레미콘	6.75	66	89.2
레미콘	10.25	68	89.5
레미콘	10.25	75	84.7
레미콘	13.75	89	90.6

1. 덤프트럭(15~24ton)이 59~88km/h로 주행할 때, 6.75m 떨어진 거리에서 평균 90.4dB(A)의 소음을 발생함으로 7m 떨어진 곳에서는 90dB(A)의 소음을 발생함.
2. 레미콘은 평균 67.5m에서 88.257dB(A)이므로 7m에서 89dB(A)의 소음을 발생함.

<참고3> 덤프트럭 가속주행소음

차량구분	속도 (km/h)	거리별 소음도(dB(A))		거리감쇠 (dB(A))	샘플수
		7.5m	15m		
중량(트럭)	30	83.1	77.9	5.2	5
”	50	81.7	75.6	6.1	13
”	70	81.8	76.4	5.4	9
”	90	81.1	75.7	5.4	4

<참고4> 덤프트럭 정상주행소음

차량구분	속도 (km/h)	거리별 소음도(dB(A))		거리감쇠 (dB(A))	샘플수
		7.5m	15m		
중량(트럭)	30	76.3	70.4	5.9	8
”	50	78.3	72.2	6.1	13
”	70	80.4	74.5	5.9	12
”	90	79.4	74.1	5.3	4

<참고5> 주요건설작업에 따른 진동레벨(연직방향, dB(V))

공사 종류	건설기계		건설기계로부터의 거리(m)						
			5	7	10	15	20	30	40
토 공 사	buldozer	9-21 t	64-85		63-77		63-78		53-73
		60, 40 t	64-74	63-73					
	truck shovel		56-77		53-69		43-63		
	유압 shovel		72-83		64-78		58-69		54-59
			69-73	66-72	64-66	58-62		43-58	
	scraper		88		77		67		58
	진동 roller			52-90		44-75		43-68	
	진동 compactor			46-54		40-44		43	
dump truck		42-69		41-68	67	34-63	62		
기 초 공 · 토 류 공 사	diesel pile hammer	~2 t		75-80		61-74		52-68	
		2-3 t		72-84		70-81		56-72	
		3-4 t		76-89		73-85		89-73	
		4 t~		70-91		63-72		61-72	
	drop hammer			63-89		54-80		65-83	
	유압 hammer	6.5 t		85-88		70-83		61-81	
		8-8.5 t		85-91		67-88		59-79	
	vibro hammer	~30 kW		71-77		61-71		51-58	
		30-40 kW				70-75		60-69	
		40 kW~		72-92		69-88		53-79	
	earth auger			50-61		44-57		40-47	
	earth drill	20 t급 기계식		59-67		54-60		50-52	
		30 t급 유압식		58-61		45-55		40-51	
	all casing 굴삭기	1300 mm crawler식		57-68		49-67		43-59	
		2000 mm crawler식		53-68		50-63		46-58	
reverse circulation drill	1500-4000 mm 발동발전기		61-68		51-64		41-54		
	3000-3500 mm 발동발전기		44-60		43-50		40-42		
preboring 공법			50-64		41-61		38-59		
중굴공법			43-62		41-59		37-55		
연약 지반 처리 공사	sand drain vibro 50-120 kW		75-91		62-87		65-78	57-71	
	sand compaction vibro 60 kW			70-81	84	65-75	83	65-74	69
	sand drain drop hammer 2 t		65-88		81		59-69		
	DJM 공법 2축				82		69		
	중추 낙하식 연결다짐				72-104	71-98	71-97	72-91	77-87
구조 물	대형 breaker	200-400 kg		66-77			62-70		
		600 kg		63-75		55-60	46-50		
파괴 공사	대형 유압 breaker				69-82		56-65	53-56	
	콘크리트 압쇄기 유압압축식			48-55		46-58		34-49	
	콘크리트 압쇄기 유압 jack식			41-46		38-42			
콘크리트 cutter 자주식 80 cm			42-48		40-44		40-41		

자료) 건설작업진동대책 マニュアル, 사단법인 일본건설기계화협회 刊, 1994.

(2) 도로 및 철도소음 피해 배상기준

단위: 천원

피해기간	소음도(dB(A))				
	65~69	70~74	75~79	80~84	85이상
1개월이내	140	240	350	455	590
2개월이내	190	330	475	625	805
3개월이내	220	380	550	720	930
4개월이내	245	405	590	755	955
5개월이내	260	420	600	765	975
6개월이내	280	440	610	780	990
9개월이내	310	470	640	810	1,020
1년이내	340	500	670	840	1,050
1년6개월이내	400	560	730	900	1,110
2년이내	460	620	790	960	1,170
2년6개월이내	520	680	850	1,020	1,230
3년이내	580	740	910	1,080	1,290

1. 위 기준표는 1인당 피해 배상액임
2. 소음도는 실측치 또는 추정치를 적용하며 야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함
3. 피해기간은 실제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기간임

(3) 먼지 피해 배상기준

단위: 천 원

피해기간	먼지농도( $\mu\text{g}/\text{m}^3$ )					
	150~180 (0-20%)	181~210 (21-40%)	211~240 (41-60%)	241~270 (61-80%)	271~300 (81-100%)	300이상 (100%이상)
1개월이내	70	140	240	350	455	590
2개월이내	95	190	330	475	625	805
3개월이내	110	220	380	550	720	930
4개월이내	140	245	405	590	755	955
5개월이내	160	260	420	600	765	975
6개월이내	170	280	440	610	780	990
9개월이내	200	310	470	640	810	1,020
1년이내	230	340	500	670	840	1,050
1년6개월이내	290	400	560	730	900	1,110
2년이내	350	460	620	790	960	1,170
2년6개월이내	410	520	680	850	1,020	1,230
3년이내	470	580	740	910	1,080	1,290

1. 위 기준표는 1인당 피해 배상액임
2. 먼지농도는 미세먼지(PM10)의 24시간 환경기준  $150\mu\text{g}/\text{m}^3$ 을 적용함
3. 피해기간은 실제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기간임



**(4) 진동 피해 배상기준**

1) 진동 피해 인정기준

구분	연속진동		충격진동	
	진동레벨 (dB(V))	진동속도 (mm/s)	진동레벨 (dB(V))	진동속도 (mm/s)
낮	73	1.3	86	5.6
밤	67	0.6	-	-

1. 주거지역 적용기준임

2. 낮은 06:00-22:00까지, 밤은 22:00-06:00까지를 말함.

2) 피해배상액 산정방식

$$\text{진동피해액} = \text{진동초과 노출총량} \{(\text{대상진동도}-\text{기준진동도})\text{dB(A)}\} \times \text{피해기간(월)} \times \text{배상단가(3,300원)}$$

(5)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배상기준

(가) 층간소음 피해 인정기준

소음구분	피해인정기준	소음측정방법	피신청인	
바닥충격음	경량충격음	58dB초과	한국산업규격 (KS F 2810-1)	건축주 또는 건축주와 위층거주자
	중량충격음	50dB초과	한국산업규격 (KS F 2810-2)	건축주 또는 건축주와 위층거주자
	뛰는소리, 걷는소리 등	주간55dB(A)초과 야간45dB(A)초과	피해장소에서 소음계로 5분간 측정한 등가소음도	위층거주자
공기전달음	급·배수음	주간55dB(A)초과 야간45dB(A)초과	피해장소에서 소음계로 5분간 측정한 등가소음도	건축주 또는 건축주와 위층거주자
	벽체, 바닥음	실간음압레벨차 (D-40미만)	한국산업규격 (KS F 2809)	건축주
	악기, 기구, 대화소음 등	주간45dB(A)초과 야간40dB(A)초과	피해장소에서 소음계로 5분간 측정한 등가소음도	건축주 또는 건축주와 위층거주자 (옆집거주자)

1. 소음측정은 1회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위층거주자들의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 더 측정할 수 있음.
2. 대상소음도는 측정소음도에 압소음도를 보정하여 구함.

<참고6> 압소음 보정표

측정소음도와 압소음도의 차	3	4	5	6	7	8	9
보정치 (dB(A))	-3	-2				-1	

<참고7> 국내·외 실내소음기준

구분	국가	소음기준(dB(A))	비고
외국	호주	주간 40, 야간 30	
	미국	주간 35, 야간 30	
	WHO	주간 35, 야간 30	
국내	법원판례	주간 55, 야간 45	화장실 배수소음
	재정사례	야간 45	

(나) 차음보수비 산정 및 배상책임

소음구분		배상기준		배상책임
		차음보수비	정신적피해	
바닥 충격음	경량충격음	자료에 의거 산출한 금액	-	건축주
	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 차음보수비의 30%	-	건축주
	뛰는소리, 걷는소리 등	-	배상기준 참조	위층거주자
공기 전달음	급·배수음	자료에 의거 산출한 금액	-	건축주
	벽체, 바닥음	자료에 의거 산출한 금액	-	건축주
	악기, 기구 대화소음 등	자료에 의거 산출한 금액	배상기준 참조	건축주, 위층 또는 옆집거주자

1. 차음보수비에는 기존시설 철거비, 차음시설비, 도배비를 포함.
2. 중량충격음만 배상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수비인 m<sup>2</sup>당 13,607원을 차음보수비로 배상함

(다) 바닥충격음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

단위: 천원

피해기간	소음도(dB(A))			
	55-59 (45-49)	60-64 (50-54)	65-69 (55-59)	70이상 (60이상)
1개월이내	70	140	240	350
2개월이내	95	190	330	475
3개월이내	110	220	380	550
4개월이내	140	245	405	590
5개월이내	160	260	420	600
6개월이내	170	280	440	610
9개월이내	200	310	470	640
1년이내	230	340	500	670
1년6월개이내	290	400	560	730
2년이내	350	460	620	790
2년6개월이내	410	520	680	850
3년이내	470	580	740	910
3년초과	530	640	800	970

1. ( )는 야간(22:00~06:00)소음도임

(라) 공기전달음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

단위: 천원

피해기간	소음도(dB(A))			
	45-49 (40-44)	50-54 (45-49)	55-59 (50-54)	60이상 (55이상)
1개월이내	70	140	240	350
2개월이내	95	190	330	475
3개월이내	110	220	380	550
4개월이내	140	245	405	590
5개월이내	160	260	420	600
6개월이내	170	280	440	610
9개월이내	200	310	470	640
1년이내	230	340	500	670
1년6개월이내	290	400	560	730
2년이내	350	460	620	790
2년6개월이내	410	520	680	850
3년이내	470	580	740	910
3년초과	530	640	800	970

1. ( )는 야간(22:00~06:00)소음도임

나. 재산적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1)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배상기준

(가) 근거자료 :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나) 유량감소,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발생시 피해기여기간(공사기간 등)이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기간을 30일로 하고, 30일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1~30일 범위 내에서 정하여, 피해기간을 피해기여기간+후유장애기간으로 함

(다) 피해금액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아래 식으로 산정함

피해구분		피해금액 산정식
젖소	유량감소	평균유대(기납유실적 평균치)×유량감소량×(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
	성장지연	육성우가격×육성우두수×성장지연율×(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유·사산	초유떼기송아지가격×피해두수
	모체도태	(시세 또는 기준가-처분가 또는 처분기준가)×피해두수
	폐사	시세 또는 기준가×폐사두수
한우	유·사산	젖떼기가격×피해두수
	번식효율저하	젖떼기가격×가임성우두수×번식효율저하율×(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성장지연	육성우가격×육성우두수×성장지연율×(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폐사	기준가격×폐사두수
돼지	유·사산	유·사산두수×자돈가
	자돈압사·폐사	압사·폐사두수×자돈가
	산자수감소	산자수감소분×자돈가
	번식효율저하	모돈수×10두×번식효율감소율×자돈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성장지연	모돈수×10두×성장지연율×육성돈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모돈폐사	폐사두수×모돈가

피해구분		피해금액 산정식
닭	산란율저하	정상산란수×산란저하율×(중)난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이상란율증가	정상산란수×이상란율증가율×(중)난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수정란율저하	정상산란수×수정율저하율×중란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폐사	폐사두수×중추가(중계,육계)
	성장지연	사육두수×성장지연율×중추가(중계,육계)×(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개	유·사산	유·사산두수×자견가
	자견폐사	자견폐사두수×자견가
	번식효율저하	모견수×번식저하율×평균산자수×자견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성장지연	사육두수×성장지연율×자견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산자수감소	모견수×평균산자수×산자감소율×자견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사슴	유·사산	유·사산두수×자목가
	수태율저하	모목수×수태저하율×자목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성장지연	육성목수×성장지연율×육성목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녹용생산성저하	웅목수×녹용생산성저하율×녹용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폐사	폐사두수×시가 또는 기준가
곰	유·사산	유·사산수×자돈가
	수태율저하	모웅수×수태율저하율×자웅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성장지연	육성웅수×성장지연율×육성웅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폐사	폐사두수×시가
	산자수감소	모웅수×산자수감소율×자웅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염소	쌍자율감소	암염소수×1.5(평균산자수)×쌍자율감소율×어린염소가격×(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수태율저하	암염소수×1.5(평균산자수)×수태율저하율×어린염소가격×(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성장지연	육성염소수×성장지연율×육성염소가격×(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폐사	폐사두수×시가

1. 이 외의 가축은 유사축종을 기준으로 산정함

(라) 축종별 피해 발생율

아래 표의 축종별 피해 발생율은 피해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나  
예상 피해량을 예측하여야 할 경우에만 적용함

- 폐사, 유·사산, 압사, 부상 등의 피해유형에는 최고소음도( $L_{max}$ )를, 생산성저하, 성장지연, 산자수감소 등과 같은 피해유형에는 등가소음도( $L_{eq}$ )를 적용함
- 가축피해에서 소음의 임계수준을 통상 70dB(A)로 보나 사육환경, 시설불량, 개체의 허약상태 등의 예외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50~60dB(A)의 수준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 축종별 피해 발생율

피해구분		소음도(dB(A))				비고
		50-60	60-70	70-80	80-90	
젖소	유생산성 저하	5-10%	10-20%	20-30%	30%이상	
	성장지연	0- 5%	5-10%	10-20%	20%이상	
	유·사산		5-10%	10-20%	20%이상	
	번식효율 저하		5-10%	10-20%	20%이상	
	폐사		5-10%	5-10%	10-20%	
한우	유·사산		0- 5%	5-10%	10-20%	
	번식효율 저하		5-10%	10-20%	20%이상	
	성장지연		5-10%	10-20%	20%이상	
	폐사		0- 5%	5-10%	10-20%	
돼지	유·사산	0- 5%	5-10%	10-20%	20%이상	
	자돈압사·폐사	0- 5%	5-10%	10-20%	20%이상	
	산자수 감소	0- 5%	5-10%	10-20%	20%이상	
	번식효율 저하		5-10%	10-20%	20%이상	
	성장지연		5-10%	10-20%	20%이상	
	모돈폐사			5-10%	10-20%	



피해구분		소음도(dB(A))				비고
		50-60	60-70	70-80	80-90	
닭	산란율 저하	5-10%	5-10%	10-20%	20%이상	기러기, 꿩 등 야생조류는 닭보다 피해율이 높음
	이상란율 증가	0- 5%	5-10%	10-20%	20%이상	
	수정란율 저하	0- 5%	5-10%	10-20%	20%이상	
	폐사		5-10%	10-20%	20%이상	
	성장지연		5-10%	10-20%	20%이상	
개	유·사산		0- 5%	5-10%	10-20%	인과요인이 번식계절에 가해질 경우임
	자견폐사		0- 5%	5-10%	10-20%	
	번식효율저하		0- 5%	5-10%	10-20%	
	성장지연		5-10%	10-20%	20%이상	
	산자수 감소		0- 5%	5-10%	10-20%	
사슴	유·사산		0- 5%	10-20%	20%이상	인과요인이 번식계절에 가해질 경우임
	수태율 저하		0- 5%	5-10%	10-20%	
	성장지연		5-10%	10-20%	20%이상	
	녹용생산성 저하		0- 5%	10-20%	20%이상	
	폐사		0- 5%	5-10%	10-20%	
곰	유·사산		5-10%	10-20%	20%이상	인과요인이 번식계절에 가해질 경우임
	수태율 저하		0- 5%	5-10%	10-20%	
	성장지연		5-10%	10-20%	20%이상	
	폐사			5-10%	10-20%	
	산자수 감소			0- 5%	5-10%	
염소	쌍자율 감소		0- 5%	5-10%	10-20%	인과요인이 번식계절에 가해질 경우임
	수태율 저하		0- 5%	5-10%	10-20%	
	성장지연		0- 5%	5-10%	10-20%	
	폐사			5-10%	10-20%	

**(2)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배상기준**

(가) 근거자료 :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

(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그룹 II의 경우)

건축물 분 류	건축물 형식	주파수별 기준 진동속도 (cm/sec)		
		10Hz이하	10Hz-50Hz	50Hz-100Hz
A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의 고층 건축물, 아파트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의 건축물 (동적 하중에 대하여 설계된 건축물)	2.0	2.0-4.0	4.0-5.0
B	철근콘크리트, 철골조로서 상기 A항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동적 하중에 대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물)	1.5	1.5-2.0	2.0-3.0
C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건축물(저층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식의 건축물, 단층의 주거용 목조 건축물	0.5	0.5-1.5	1.5-2.0
D	진동에 예민한 건축물, 취약건축물, 특별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문화재 등)	0.3	0.3-0.8	0.8-1.0

1. 100Hz 이상의 진동에서는 100Hz에 준한 값을 기준값으로 함.
2. 측정점은 최저층의 외측 벽체 또는 바닥슬래브를 기준으로 하고, 측정값은 직교하는 3축 방향의 성분들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함.

(다) 진동원, 진동경로 및 건축물의 상태에 따른 구분

구분	그룹I	그룹II
건축물 상태	피해부위를 지니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 보수·보강되거나 증축된 건축물	무손상 건축물 구조적 변경사항 없음
재료와 건축물의 구조	조적조, 콘크리트조, 석조로서 잘 구축되지 않은 건축물, 기초의 부실, 타이보의 부족, 바닥 처짐, 큰 개구부 또는 불규칙 개구부를 갖는 벽체	잘 지어진 조적조 또는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타이보를 지닌 벽체와 일체로 연결된 강한 바닥슬래브
지반과 기초의 종류	낮은 강성의 지반(느슨한 모래, 매립층), 불연속기초	강성이 큰 토양(단단한 토양) 시공이 양호한 기초
진동의 작용시간	장시간 또는 영구적인 진동	단시간의 진동
가중치	0.7	1.0

(라) 피해 배상액 산정

1) 보수·보강의 경우

○ 보수·보강 공사비가 정해지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 또는 안전진단, 견적 등을 통하여 보수·보강공사비가 확정되거나 공사가 이미 시행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피해배상액 산정방법이며, 대상건물주가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검증이 요구됨

$$\text{피해배상액} = \text{보수·보강공사비} \times \text{진동기여도 (식1)}$$

○ 신축비용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식1)로 피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축비용에 손상정도와 진동기여도를 곱하여(식 2)와 같이 피해배상액을 산정함

피해배상액 = 단위면적당 건축가×연면적×손상정도×진동기여도 (식2)

여기서 “단위면적당 건축가×연면적”은 신축비용을 의미하며, 건물 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를 참조하여 산출함

손상정도는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아래 표를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확정

피해부위가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부위에 대해서만 손상정도 및 신축단가를 국한시켜 적용하며, 최종 산출된 보수·보강비는 (식3) 및 (식4)에 의한 대상건축물의 잔존가를 초과할 수 없음

단계	조 치 내 용	손상정도(%)
1	건축물 전반에 걸친 보강	40~60
2	일부 부위에 대한 보강	20~40
3	건축물 전반에 걸친 보수	10~20
4	일부 부위에 대한 보수	5~10
5	단순 보수	5 이하

※ 노후화 정도, 주요부재의 기울기, 균열 폭 등 결함 발생정도 및 범위를 감안하여 각 단계를 정함

예)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 발생된 균열의 폭을 기준으로 할 경우

1단계: 1.0mm이상, 2단계: 0.5-1.0mm, 3단계: 0.3-0.5mm, 4단계: 0.2-0.3mm, 5단계: 0.2mm이하

## 2)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 보수·보강을 해도 재사용이 어려워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그 잔존가치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해를 받기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 등을 고려한 대상건축물의 잔존가액과 진동기여도를 곱한 금액에, 이주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을 합산하여 피해배상액을 산정함

- 건축물의 잔존가가 확정되는 경우

감정기관을 통하여 건축물의 잔존가를 평가할 수 있고, 감정비용은 피해를 유발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text{피해배상액} = \text{감정가} \times \text{진동기여도} + \text{철거비 등 (식3)}$$

- 신축비용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상기 안의 채택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축공사비에 피해정도와 진동기여도를 곱하여 (식4)와 같이 피해 배상액을 산정함

$$\text{피해배상액} = \text{단위면적당 건축가} \times \text{연면적} \times (1 - \text{노후도에 따른 감가율}) \times \text{진동기여도} + \text{철거비 등 (식4)}$$

여기서 “단위면적당 건축가×연면적×(1-노후도에 따른 감가율)”은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한 건축물의 잔존가를 의미하며, 노후도에 따른 감가율은 건축물의 내용년수(한국감정원, 부록 참조)와 건축 후 경과년수의 비율로써 결정함

다. 악취피해 배상액 산정 사례

단위: 천원

구분	배상시기	오염원 및 오염물질	피해기간	1인당 배상금액 (1개월기준)	비고
○○공장	'02.7.12	공관제조 건조, 도장, 인쇄시설 VOC	10개월	200 (20)	
○○광고사	'02.6.27	광고물 제작 재료 및 용제	36개월	720 (20)	
○○공장	'02.5.23	알미늄 나염 유기용제	36개월	540 (15)	배발
○○하수 처리장	'00.3.17	처리장 악취	19개월	300 (15.8)	공공 시설